

국 내 복 귀 기 업 지 원 종 합 가 이 드

01 장

국내복귀기업 지원제도



1-1. 국내복귀기업 정의	6
1-2. 국내복귀기업 유형	9
1-3. 국내복귀기업 지원제도	11
1-4.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 절차 및 신청 기한	13
1-5. 지원 기관	15

02 장

국내복귀기업 세부 지원사항



2-1. 입지·설비 보조금 지원	18
2-2.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22
2-3. 관세감면	24
2-4. 인력 지원	27
1) 고용보조금 지원	27
2) 해외인력 비자지원(E-7, E-9)	32
2-5. 보증 지원	36
2-6. 구조조정 컨설팅 지원	37



부록



부록 1 국내복귀기업 GUIDE FAQ	44
부록 2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고시	47
부록 3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 신청서류 및 작성예시	68
3-1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신청서	69
3-2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해외사업장 청산, 양도 완료신고서	78
3-3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해외사업장 축소 완료신고서	80
3-4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국내사업장 신설, 증설 완료신고서	92
3-5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해외사업장의 청산, 양도 또는 축소 관련 계획서	95
3-6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국내사업장의 신설, 증설 관련 계획서	99
3-7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	104
3-8 고시 별지 제1호 서식 자본재 등 도입물품 명세 검토확인신청서(확인서)	105
3-9 고시 별지 제2호 서식 신규 투자확인신청서(확인서)	106
부록 4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107
부록 5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신청서류 및 별지서식	134
5-1 별지 제1호 서식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신청서	135
5-2 별지 제2호 서식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사업 타당성 평가서	137
5-3 별지 제3호 서식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정산 신청서	138
5-4 별지 제4호 서식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정산 결과서	139

The background of the cover features a stylized world map in the upper half, rendered with a hatched pattern. Below the map, a cityscape with several skyscrapers is visible, also in a hatched style. The entire design is set against a warm, yellow-to-orange gradient background with curved, overlapping shapes.

2016 국내복귀기업 지원 종합가이드

kotra



01 장

국내복귀기업 지원제도

1-1. 국내복귀기업 정의	6
1-2. 국내복귀기업 유형	9
1-3. 국내복귀기업 지원제도	11
1-4.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 절차 및 신청 기한	13
1-5. 지원 기관	15



1. 국내복귀기업 지원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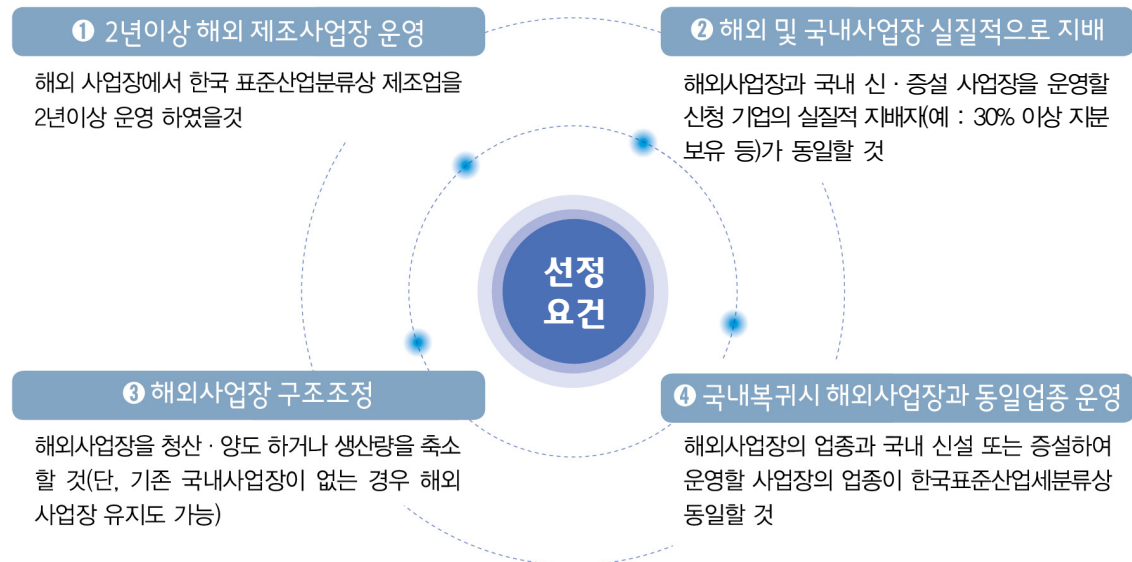
1-1. 국내복귀기업 정의

가. 정의

● 국내복귀란?

해외진출기업이 해외사업장을 청산·양도 또는 축소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해외진출기업은 해외사업장을 유지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외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장을 국내에 신설·증설하는 것을 말한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하위법령에 규정)

나. 선정 요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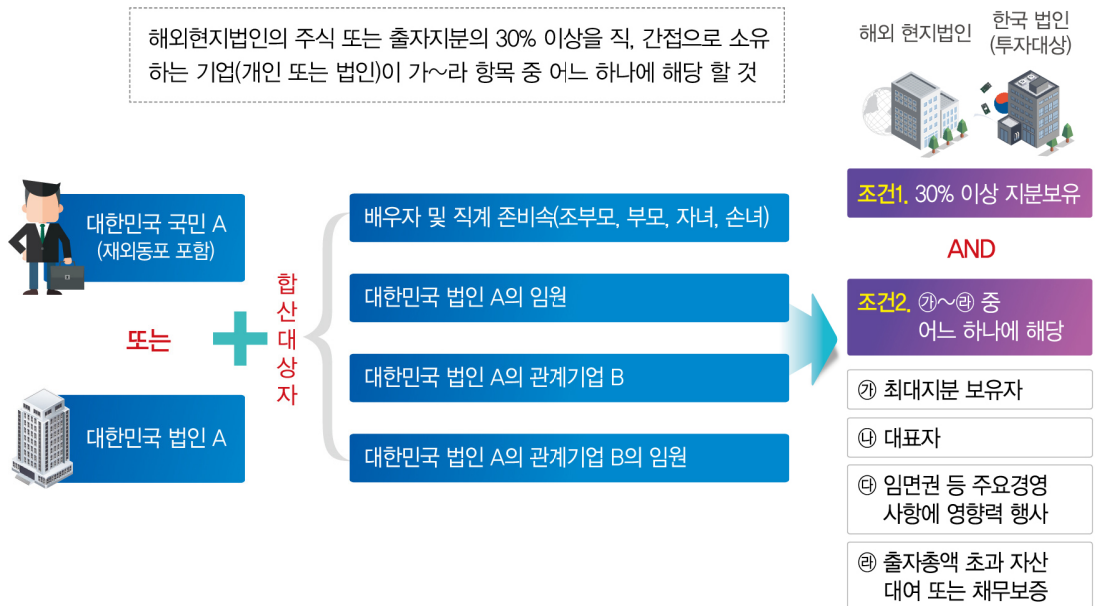
단,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 혜택을 (조세·임대료 감면 등) 받은 기업이 아닐 것

그림1-1 ① 2년 이상 해외 제조사업장 운영, ④ 국내복귀 시 해외사업장과 동일업종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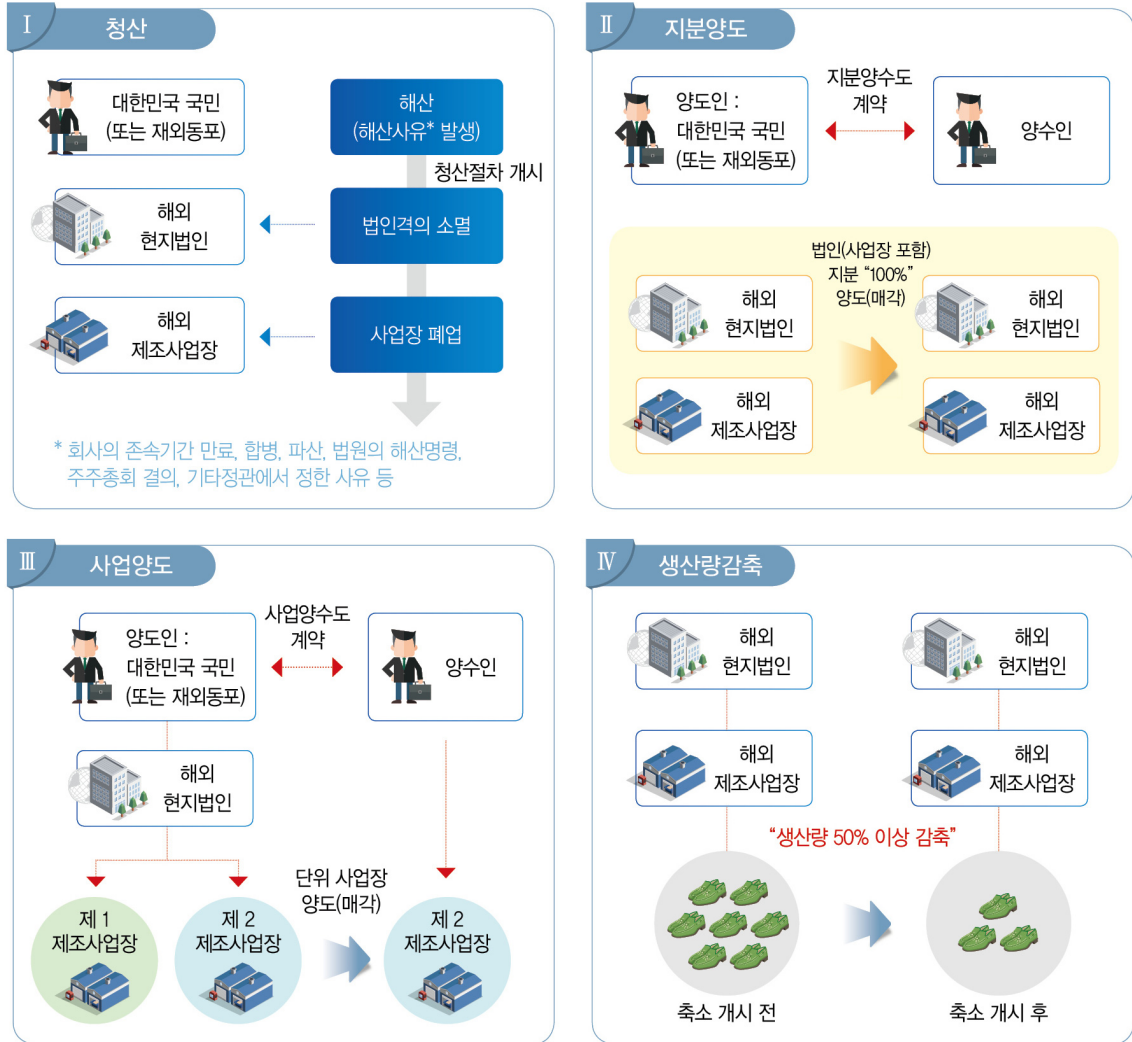
제조사업장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시설(물품의 가공, 조립, 수리 시설을 포함한다)이나 시험행산시설을 갖추고 생산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함

그림1-2 ② 해외 및 국내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



재외동포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재외국민) 또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던 자 (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외국국적동포)를 의미함

그림1-3 ③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1-2. 국내복귀기업 유형

● 국내복귀기업은 기존 국내사업장의 유무와 해외사업장의 철수방식에 따라 총 네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가. 기존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유형 1 청산 또는 양도

- 기존 국내사업장이 없는 기업이 해외사업장을 양도 또는 청산하고 국내에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

유형 2 사업장 유지 또는 생산량 축소

- 기존 국내사업장이 없는 기업이 해외사업장을 유지하고 국내에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
- 기존 국내사업장이 없는 기업이 해외사업장의 생산량을 축소하고 국내에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

나. 기존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

유형 3 청산 또는 양도

- 기존 국내사업장이 있는 기업이 해외사업장을 양도 또는 청산하고 국내에 사업장을 신·증설하는 경우

유형 4 생산량 축소

- 기존 국내사업장이 있는 기업이 해외사업장의 생산량을 축소하고 국내에 사업장을 신·증설하는 경우

[표 1-1] 국내복귀기업 유형

국내	복귀유형	
	해외사업장	국내사업장
기존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유형 1 청산 또는 양도	신설
	유형 2 사업장 유지 또는 생산량 축소	신설
기존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	유형 3 청산 또는 양도	신·증설
	유형 4 생산량 축소	신·증설

※ 기존 국내사업장

- 해외사업장과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 세분류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국내 제조사업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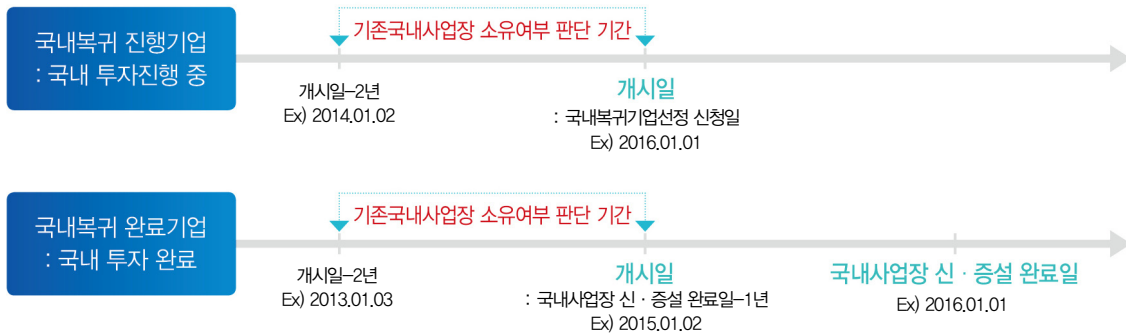
[표 1-2] 기존 국내사업장의 예시

	해외사업장	기존 국내사업장
생산물	기타신발제조 ex) 운동화, 스노우보드, 부츠	기타신발제조 ex) 운동화, 스노우보드, 부츠
한국표준산업분류	15219	15219

그림1-4 기존 국내사업장 소유여부 판단시점

기존 국내사업장 소유여부 판단 기준

국내사업장 신·증설 개시일로부터 과거 2년 이내에 기존국내사업장의 매각, 폐기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기존 국내사업장이 있는 국내복귀기업으로 본다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고시 제4조



한국표준산업분류 세 분류상 동일업종

검토서류 : 재무제표, 세무신고서(법인세, 부가세 등), 세무민원서류(사업자등록증명원, 폐업사실증명원, 기타사실증명원, 공장등록증 등)

산업부에서 발급되는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 발급 후 해당 지원제도를 받기 위해서는 관련 기관에 각각 별도 지원신청 필요

1-3. 국내복귀기업 지원제도

가. 국내복귀기업 지원제도

- 해외사업장 철수에서부터 국내투자제에 이르기까지 각각의 사업 운영 단계에 걸쳐 국내복귀기업을 지원

그림1-5 국내복귀기업 지원제도



나. 국내복귀 완료기한

■ 국내사업장 신·증설 기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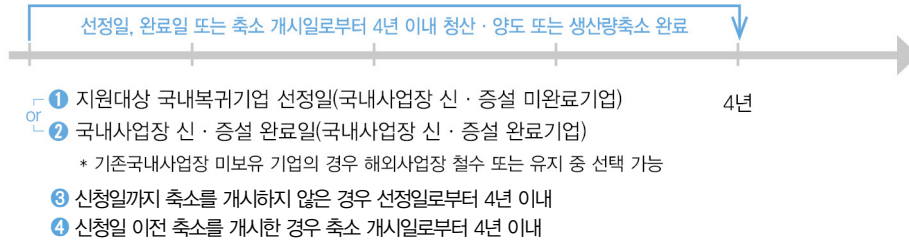
-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국내사업장 신·증설 완료가 이뤄져야함
- 단,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보조금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에서 명시한 투자완료 기한으로 신설 기한을 정할 수 있음

■ 해외사업장 청산·양도 기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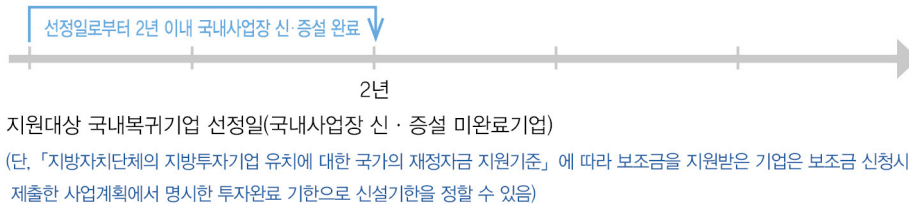
- 해외사업장의 청산·양도 기한
 - 국내사업장 신·증설 미완료 기업의 경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일로부터 4년 이내
 - 국내사업장 신·증설 완료 기업의 경우 신·증설 완료일로부터 4년 이내
- 해외사업장의 축소 기한
 - 신청일 까지 축소를 개시 하지 않은 기업의 경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일로부터 4년 이내
 - 신청일 이전에 축소를 개시한 기업의 경우 축소 개시일로부터 4년 이내

그림1-6 국내복귀 완료기한

① 해외사업장 철수 기한(청산, 양도 또는 축소)



② 국내 사업장 신·증설 완료 기한



다. 국내복귀기업 유형별 지원사항

[표 1-3] 국내복귀기업 유형별 지원사항

기업 유형	복귀 지역	기존 국내 사업장	복귀유형		구조조정 컨설팅 보조금	관세 감면	보조금		인력지원			법인세 · 소득세 감면
			해외 사업장	국내 사업장			입지	설비	고용 보조금	E-7	E-9	
중 소 기업	비 수도권	미보유	청산 또는 양도	신설	○	○	○	○	○	○	○	○
			유지 또는 생산량 축소	신설	○	○	○	○	○	○	○	○
		보유	청산 또는 양도	신·증설	○	○	○	○	○	○	○	○**
			생산량 축소	신·증설	○	×	×	×	○	○	○	×
	수도권	미보유	청산 또는 양도	신설	○	×	×	×	○	○	○	×
			유지 또는 생산량 축소	신설	○	×	×	×	○	○	○	×
		보유	청산 또는 양도	신·증설	○	×	×	×	○	○	○	×
			생산량 축소	신·증설	○	×	×	×	○	○	○	×
중 건 기업	비 수도권	미보유	청산 또는 양도	신설	○	×	○*	○	○	○	○	○
			유지 또는 생산량 축소	신설	○	×	○*	○	○	○	○	×
		보유	청산 또는 양도	신·증설	○	×	○*	○	○	○	○	○**
			생산량 축소	신·증설	○	×	×	×	○	○	○	×
	수도권	미보유	청산 또는 양도	신설	○	×	×	×	○	○	○	×
			유지 또는 생산량 축소	신설	○	×	×	×	○	○	○	×
		보유	청산 또는 양도	신·증설	○	×	×	×	○	○	○	×
			생산량 축소	신·증설	○	×	×	×	○	○	○	×

* 중건기업의 신·증설 사업장이 수도권 인접지역인 경우 입지보조금 지원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기존국내사업장 유·무와 다를 수 있음

1-4.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 절차 및 신청 기한

-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제도는 국내복귀기업 지원법에 따라 국내로 복귀했음을 인증하는 제도로써 각 지원제도의 요건 및 절차는 신청 전 별도확인 필요

가. 선정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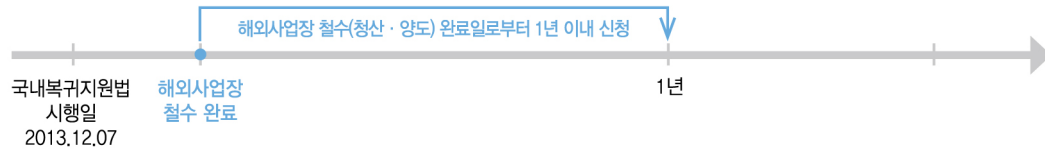
[표 1-4]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 절차

단계	주요 내용	수행주체	비고
「선정신청」			
신청·접수	○ 신청서류제출 (신청기업 → KOTRA)	신청기업	* 국내기업이 신청
	○ 신청 서류 접수	KOTRA	* 접수처 : 국내복귀기업 지원센터
심사	○ 서류심사 - 국내복귀기업 선정 자격요건 적합여부 - 서류 누락여부, 적합서류 여부	KOTRA	
	○ 현장심사 - 해외법인 실제 조사, 생산현황, 청산·축소 현황 등		
	○ 자문단 검토 - 선정심사 내용에 대한 자문단 검토		
심사보고	○ 선정심사 보고서 및 증빙서류 제출 (KOTRA → 산업통상자원부)	KOTRA	*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선정여부 결정	○ 선정심사 보고서 검토	산업통상 자원부	*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 선정여부 결정 및 신청기업 결과통보		
선정확인서 발급	○ 선정기업에 대한 확인서 발급 (산업통상자원부 → 선정기업)	산업통상 자원부	
「선정이후 지원혜택 신청」			
지원신청	(선정기업 → 소관부처)		
지원결정	(소관부처 → 선정기업)		
「선정이후 사후관리」			
사후관리	○ 국내복귀계획 변경사항 통지	신청기업	* 접수처 : KOTRA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
	○ 국내복귀 이행결과 신고서류 제출		
사후관리 후속조치	○ KOTRA 사후관리 확인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산업통상 자원부	
	○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취소(사유해당 시)		

나. 신청 기한

그림1-7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 신청기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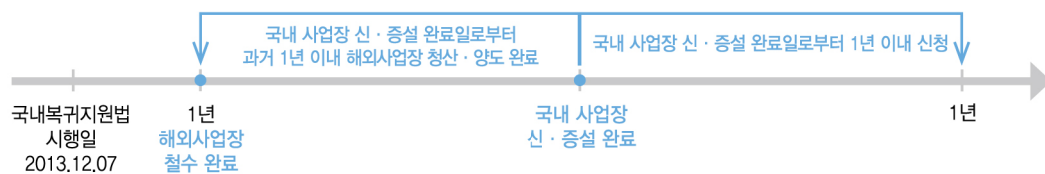
① 국내 사업장 신·증설 미완료, 해외사업장 철수(청산·양도) 완료의 경우



② 국내 사업장 신·증설 완료의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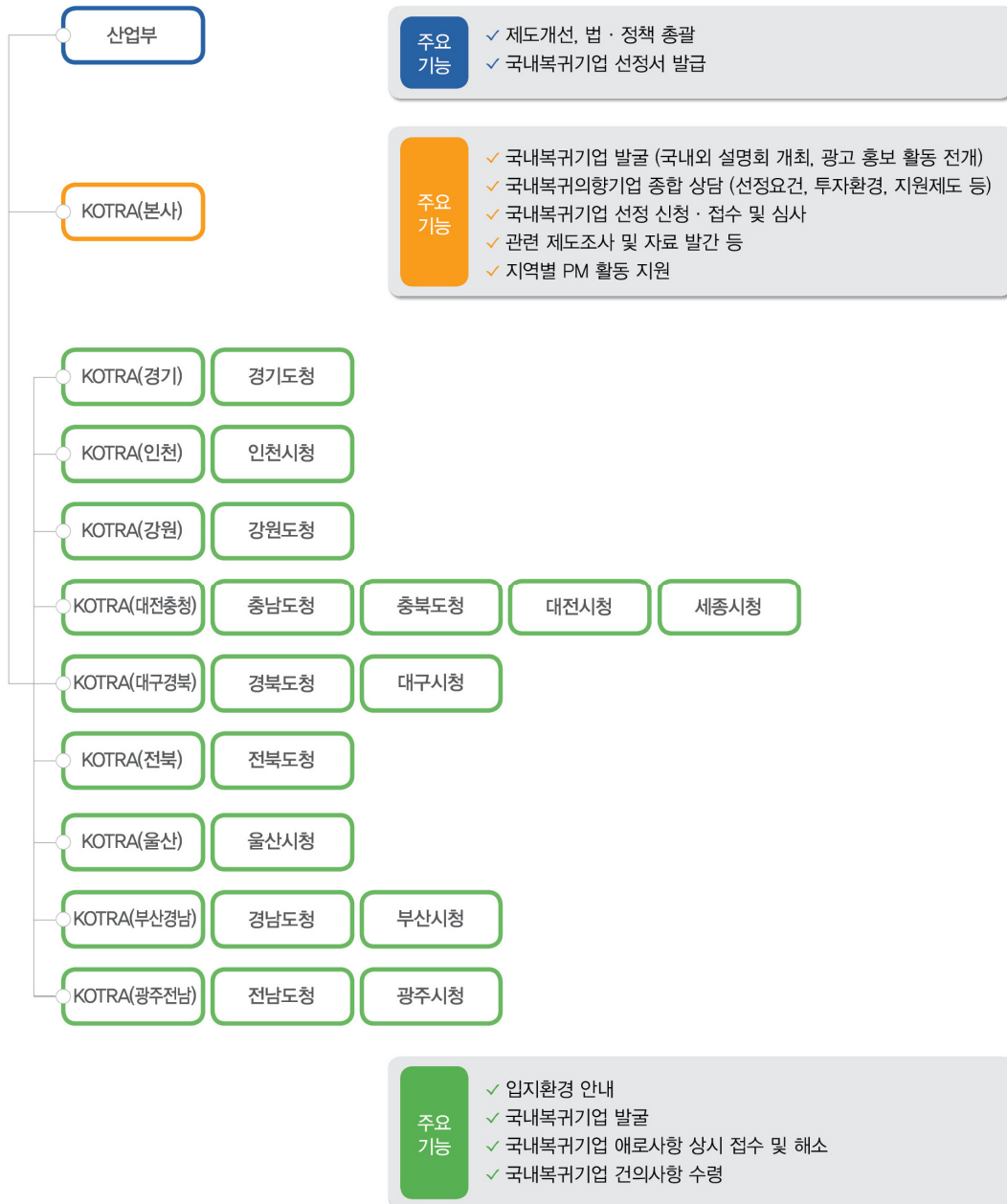


③ 국내 사업장 신·증설 완료, 해외사업장 철수(청산·양도) 완료의 경우



1-5. 지원 기관

가. 국내복귀지원 조직별 주요 기능



나. KOTRA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

● 목적

KOTRA 본사의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 및 ‘해외 국내복귀데스크(현지무역관)’를 통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를 위한 ONE-STOP 종합 서비스 제공



■ 국내

KOTRA 해외투자지원단 (서울 서초구 현릉로 13)

- ☎ • 82-02-3460-7362 • sc.kim@kotra.or.kr
- 82-02-3460-7364 • emily@kotra.or.kr

■ 해외

중 국	베이징	86-10-6410-6162	86-10-6505-2310
	상하이	86-21-5108-8771	86-21-6219-6015
	칭다오	86-532-8388-7931	86-532-8388-7935
	광저우	86-20-2208-1605	86-20-2208-1636
	선 양	86-24-3137-0770	86-24-3137-0773
	다 렌	86-411-8253-0051	86-411-8253-0050
베트남	호치민	84-8-3822-3944	84-8-3822-3941
	하노이	84-4-3946-0511	84-4-3946-0519
일 본	오사카	81-6-6262-3831	81-6-6262-4607
미 국	로스앤젤레스	1-323-954-9500	1-323-954-1707
	뉴 욕	1-646-918-5855	1-212-888-4930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62-21-574-1522	62-21-572-2187

02 장

국내복귀기업 세부 지원 사항

2-1. 입지·설비 보조금 지원	18
2-2.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22
2-3. 관세감면	24
2-4. 인력 지원	27
1) 고용보조금 지원	27
2) 해외인력 비자지원(E-7, E-9)	32
2-5. 보증 지원	36
2-6. 구조조정 컨설팅 지원	37



2. 국내복귀기업 세부 지원 사항

2-1. 입지·설비 보조금 지원

가. 지원 목적

- 입지확보 및 설비투자 등에 관한 국내복귀기업의 초기 투자비용 부담 완화

나. 지원 대상

- 지원대상 국내복귀 선정기업 중 지방투자보조금 고시 요건에서 규정하는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지방 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11조)
- 지방자치단체가 투자를 유치한 기업일 것
- 철수 전 해외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이 30인 이상일 것
 - * 단, 국내복귀 신·증설 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경제협력권산업, 주력산업, 지식 서비스산업 또는 지역집중유치 업종이거나 신·증설 지역이 성장촉진지역·특수상황지역인 경우 상시고용인원 10인 이하 가능 (p.121~127, 별표 1 참조)
 - * 상시고용인원은 해외현지 소지용 관공서 발급 서류(예 : 사회보험납부증명서)를 통한 객관적 증빙이 가능한 인원일 것
- 국내 투자사업장의 신규 고용인원(상시)이 30인 이상일 것
- 입지·설비 보조금 지원 타당성 평가 점수가 60점 이상일 것 (p.130, 별표7 참조)

* 해외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 산정 시점

- 해외사업장 청산·양도 시, 청산·양도 시작 직전 1년 기준
- 해외사업장 유지 시, 신청시점 최근 1년 기준

다. 지원 내용 및 지원 한도

- 입지 보조금은 투자금액의 최대 42%(한도 5억 이내)

- 설비 투자 보조금은 투자금액의 최대 31% 지원가능
* 기업규모와 복귀지역에 따라 지원비율 차등 적용
- 입지, 설비 보조금 합산 최대 60억 원까지 지원
- 단, 다음의 경우 70억 원까지 지원 가능
 - ① 지원우대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이 토지 등을 분양·매입 또는 임대한 날부터 4년 이내에 800억원 이상 투자하면서 협력기업과 동반 투자하는 경우
 - ② 일반지역 및 수도권 인접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이 토지 등을 분양·매입 또는 임대한 날부터 4년 이내에 1,000억 원 이상 투자하면서 협력기업과 동반 투자하는 경우

[표 2-1] 입지·설비 보조금 세부내용

지역 구분	보조금 유형	지원비율		국가 보조비율
		중견기업	중소기업	
일반지역	입지	토지매입가액의 10%이내	토지매입가액의 30%이내	보조금의최대 100분의65
	설비 투자	설비투자금액의 11%이내	설비투자금액의 14%이내	
수도권인접 지역	입지	—	토지매입가액의 9%이내	보조금의최대 100분의45
	설비 투자	설비투자금액의 8%이내	설비투자금액의 11%이내	
지원우대 지역	입지	토지매입가액의 20%이내	토지매입가액의 40%이내	보조금의최대 100분의75
	설비 투자	설비투자금액의 19%이내	설비투자금액의 24%이내	

* 지원우대 지역 :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 제주특별자치도,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기업도시 개발구역, 세종특별자치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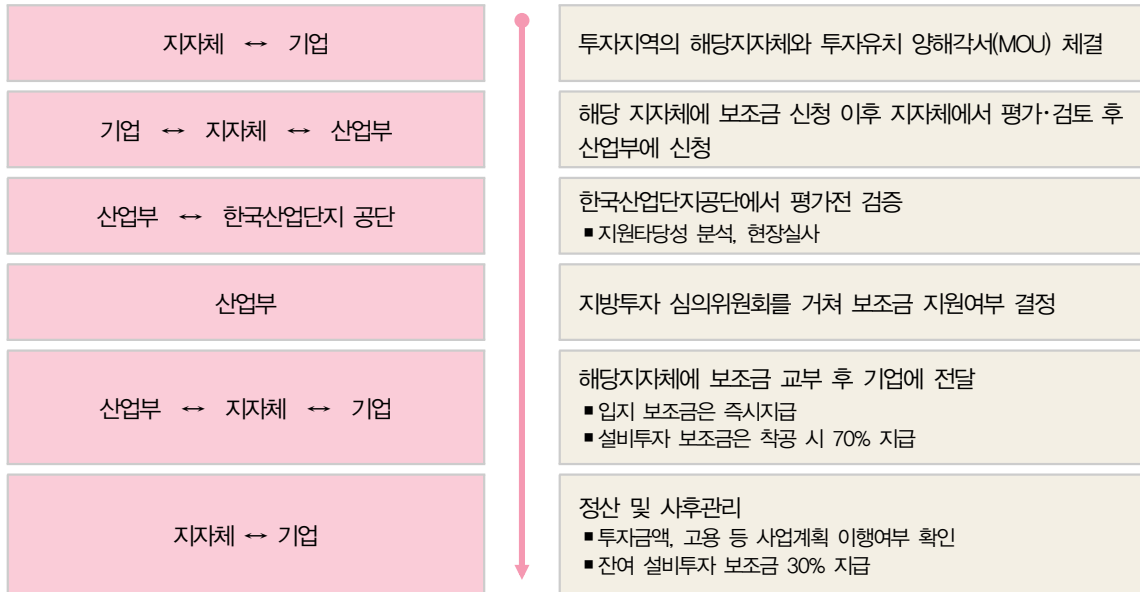
* 수도권 인접 지역 : 수도권과 인접한 광역시·도의 시·군 (아래 [표 2-2] 참조)

* 일반지역 : 수도권, 수도권 인접지역 및 지원우대지역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

[표 2-2] 수도권 인접지역의 범위

지역	수도권 인접지역
강원(1)	원주시(기업도시, 혁신도시 제외)
충북(4)	충주시, 음성군, 청주시, 진천군
충남(3)	아산시, 천안시, 당진시

라. 지원 절차



* 지방투자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장 :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정책관 / 위원 : 5인 이내의 관련 전문가)

* 보조금은 해당 지자체가 투자기업의 지역경제 기여도, 투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유치한 우수기업에 한해 선별 지원되며, 연도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하므로 지방투자를 검토하고 있는 기업은 사전에 해당 지자체와 반드시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부록3·4 참조)

마. 보조금 신청

■ 보조금 신청기간은 다음과 같음

- 설비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는 투자협약체결일부터 착공신고 후 3개월 이내
- 입지보조금을 포함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입지계약체결일부터 1년 이내

* 단, 착공신고 후 3개월이 먼저 도래하는 경우에는 입지계약체결일부터 착공신고일 3개월 이내이며, 입지보조금만 별도로 신청할 수 없음

- 폐건물 매입의 경우 투자협약체결일부터 매매계약체결 후 6개월 이내

■ 투자 완료일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최초 착공신고일로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지원제도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지원제도를 받기 전 관련법규에 대한 변경여부 및 상세사항에 대해 해당기관에 사전확인 필요

제출서류

보조금 신청 시 제출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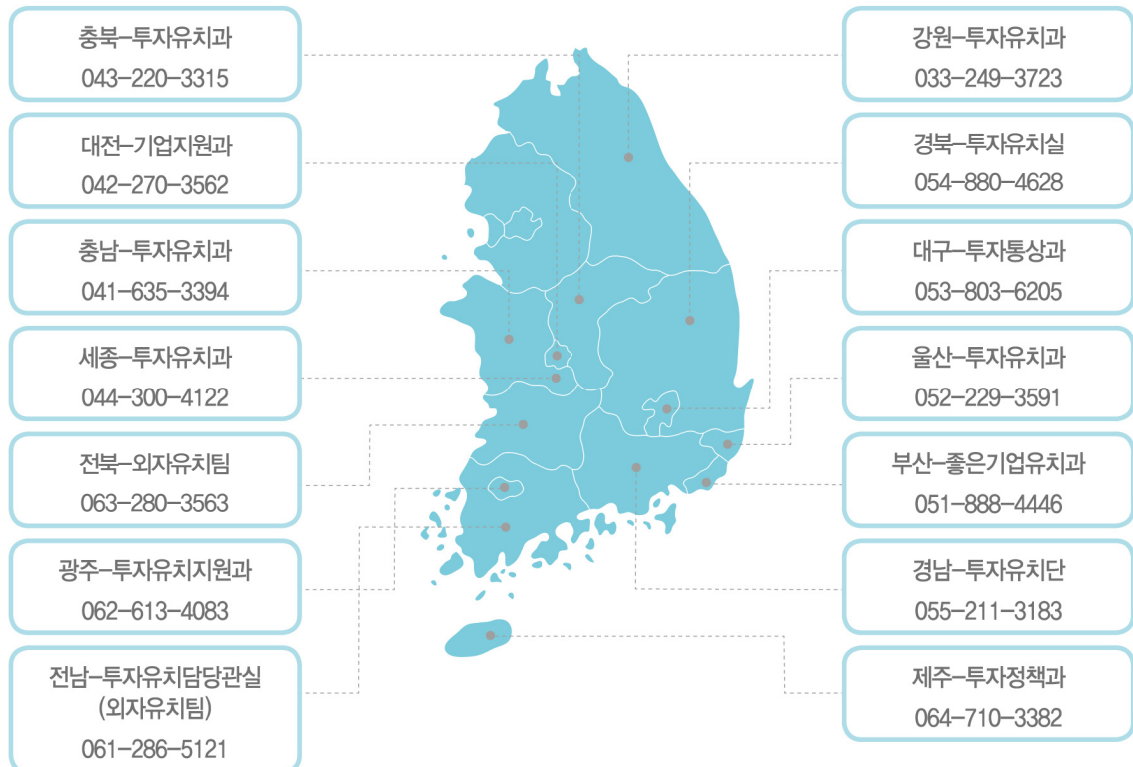
- 별지 제①호서식에 의한 보조금 신청서
- 별지 제②호서식에 의한 타당성 평가서

투자완료 시 제출서류

- 별지 제③호서식에 의한 타당성 평가서
- ※ 자세한 정보는 부록5 참조

☎ 관련문의처

해당지자체



2-2.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가. 지원 목적

- 국내복귀기업의 초기 원활한 사업정착을 위해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혜택 부여

나. 지원 대상

- 국내복귀기업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4 및 동법 시행령 제104조의21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까지 국내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 비수도권으로 복귀하는 국내복귀기업
- 기존 국내사업장이 있고 해외사업장을 부분축소(생산량 감축)하는 기업의 경우 법인·소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

다. 지원 내용

- 복귀 유형에 따라 최대 7년간 50~100%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표 2-3] 법인세·소득세 감면 내용

국내	복귀유형		지원내용
	해외사업장	국내사업장	
기존 국내사업장 없는 경우	유형 1 청산 또는 양도	신설	최초 5년간 100% 감면 이후 2년간 50% 감면
	유형 2 사업장 유지* 또는 생산량 축소	신설	최초 3년간 100% 감면 이후 2년간 50% 감면
기존 국내사업장 있는 경우	유형 3 청산 또는 양도	신설	최초 5년간 100% 감면 이후 2년간 50% 감면

* 해외사업장 유지의 경우, 국내사업장 미보유 기업이면서 중소기업일 것

- ※ 신설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세액감면 시점 산정
- 신·중설 유형에 따라 기존 국내사업장에 대한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관계기관과 사전확인 필요

라. 지원 절차

-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와 함께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계산서를 작성)

마. 신청시기·신청장소

- 신청시기 : 최초 소득 발생한 과세연도의 익년에 세액감면 신청
- 신청장소 : 신청기업 소재지 관할 세무서

지원제도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지원제도를 받기 전 관련법규에 대한 변경여부 및 상세상황에 대해 해당기관에 사전확인 필요

제출서류

-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
-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계산서(참고1 참조, p.23)
- 국외에서 2년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시: 사업자등록증, 세금납부명세 등)
- 국외사업장을 양도하였거나 폐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관련문의처

국세청 법인세과 법인4계
• 02-397-1822~4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126
관할 세무서 법인세과·소득세과
상세전화번호 홈페이지 참조 : www.nts.go.kr

참고 1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계산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의20서식] 〈개정 2013.2.23〉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계산서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⑤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전화번호:)	
이전 전 해외 사업장	⑥ 이전·복귀 전 사업장의 소재지	
	⑦ 이전·복귀 전 사업장의 업종·업태	
	⑧ 이전 전 사업장의 양도·폐쇄·철거일	
	⑨ 이전·복귀 전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	
	⑩ 이전·복귀 전 사업장의 사업 개시일	
이전 후 국내 사업장	⑪ 이전·복귀 후 사업장의 소재지	
	⑫ 이전·복귀 후 사업장의 업종·업태	
	⑬ 이전·복귀 후 사업장의 사업 개시일	
감면세액 계산내용	사 업 연 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⑭ 감면대상 소득: 이전·복귀 후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	
	⑮ 감면비율 100% (50%) ⑯ 감면세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1제5항에 따라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계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1. 국외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장을 운영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시: 사업자등록증, 세금납부명세 등) 2. 국외 사업장을 양도하였거나 폐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국외 사업장을 부분 축소 또는 유지하면서 국내로 복귀하는 중소기업 및 국내에서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4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으로서 국외 사업장을 양도·폐쇄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수수료 없음	

210mm× 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2-3. 관세감면

가. 지원 목적

- 지원대상 국내복귀선정기업의 신규 또는 중고 설비 수입 시 발생하는 관세에 대한 감면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초기 국내 설비투자 부담 완화

나. 지원 대상

- 지원대상 국내복귀선정기업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4 및 동법 시행령 제104조의21에서 정하는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 비수도권으로 복귀하는 지원대상 국내복귀선정기업
 - 중소기업
 -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 후 2018년 12월 31일까지 혜택부여 (신규 및 중고 자본재 모두 포함)
 - 기존 국내사업장이 있고 해외사업장을 생산량 감축(부분축소) 또는 유지하는 기업의 경우 관세감면 지원에서 제외

다. 지원 내용

- 복귀 유형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까지 최대 50~100%(한도 : 2억 원) 관세 감면

[표 2-4] 관세감면 지원내용

국내	복귀유형		감면금액 한도	관세 감면율
	해외사업장	국내사업장		
기존국내사업장 없는 경우	유형 1 청산 또는 양도	신·증설	2억	100%
	유형 2 사업장 유지 또는 생산량 축소	신·증설	1억	50%
기존국내사업장 있는 경우	유형 3 청산 또는 양도	신·증설	2억	100%

라. 지원 절차



지원제도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지원제도를 받기 전 관련법규에 대한 변경여부 및 상세상황에 대해 해당기관에 사전확인 필요

제출서류

- 국내복귀기업 선정 확인서 사본 1부(부록3, 별지 제7호서식 참조)
- 자본재 등 도입 물품 명세 확인신청서 1부 (참고1 참조, p.25)
- 관세 감면 신청서 (참고2 참조, p.26)
- 기타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

관련문의처

- | | |
|--|---|
| KOTRA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
• 02-3460-7362
• 02-3460-7364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 044-215-4412 | 관세청 통관기획과(감면담당)
• 042-481-7903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 1577-8577 |
|--|---|

참고 1 자본재 등 도입 물품 명세 확인서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4.9.29)

자본재 등 도입물품명세 검토·확인신청서(확인서)

※ 바탕색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회사명(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상 5단위)			생산품명			
자본재 등 도입물품명세	HSK분류번호	품명	수량	규격	제작자	금액(USD)	용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5조의2(국내복귀기업에 대한 관세감면 기준 등)와「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고시」 제11조제2항(사실관계의 확인)에 따라 자본재 등 도입물품명세 검토·확인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고시」 제11조제2항(사실관계의 확인)에 따라 위의 신청을 확인 합니다. 년 월 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직인							
첨부서류	1.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 사본 2. 도입 자본재 확인 증빙서류(송장, 국내사업장의 신설증설 관련 국내복귀계획서 사본 등)					수수료 없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신청인	→	접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검토·확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검토·확인서 발급 산업통상자원부 (해외투자과)	→ 수령 신청인

210mm×297mm[백상지 80g/㎡]

참고 2

관세감면(분납)/용도세율적용 신청서 (관세감면 신청서)

관세감면(분납)/용도세율적용 신청서

(처리기간 : 즉시)

① 수입신고번호 :	② 신고일자 :
③ 신 청 인 : (상호) (주소) (통관고유번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④ 사업의 종류 :	

신 청 내 용	
란 ⑤ 신청구분 : [] (A ; 관세면제, B : 관세감면, C : 분할납부, D : 용도세율적용) ⑥ 감면분납부호 : [] ⑦ H.S부호 : _____ ⑧ 품 명 : _____ ⑨ 규 격 : _____ ⑩ 모 델 명 : _____ ⑪ 제조일련번호 : _____ ⑫ 수 량 : _____ ⑬ 신고가격 : _____ ⑭ 감면액 : _____ ⑮ 사용(설치)장소 : _____ (주소) (우편) (전화)	1. 용 도 : _____ 2. 사후관리세관 : _____ ◎ 재수출 조건부 감면신청의 경우 기재 - 3 수출예정세관 : _____ 4. 수출지(국가) : _____ 5. 수출예정시기 : _____ ※ 비 고 : _____

란 ⑤ 신청구분 : [] (A ; 관세면제, B : 관세감면, C : 분할납부, D : 용도세율적용) ⑥ 감면분납부호 : [] ⑦ H.S부호 : _____ ⑨ 규 격 : _____ ⑩ 모 델 명 : _____ ⑪ 제조일련번호 : _____ ⑫ 수 량 : _____ ⑬ 신고가격 : _____ ⑭ 감면액 : _____ ⑮ 사용(설치)장소 : _____ (주소) (우편) (전화)	1. 용 도 : _____ 2. 사후관리세관 : _____ ◎ 재수출 조건부 감면신청의 경우 기재 - 3 수출예정세관 : _____ 4. 수출지(국가) : _____ 5. 수출예정시기 : _____ ※ 비 고 : _____
--	--

※ 승인일자 :
※ 담 당 자 :

2-4. 인력 지원

1) 고용보조금 지원

- 국내복귀기업의 사업자가 직원을 신규로 고용하는 경우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

가. 지원 대상

- 지원대상 국내복귀 선정기업 중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 국내복귀기업 선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고용창출지원사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우선지원대상 기업의* 사업자
 - * 우선지원 대상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 제조업 500명 이하
 - 사업계획서 승인통보서를 받은 날이 속한 다음달부터 3개월이 경과(근로자 고용기간)된 이후 매 3개월 월평균 근로자수가 사업계획서 제출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간의 월평균 근로자수보다 1명 이상 초과하여야 함
 - * 증가근로자수 산정은 산정대상기간 속한 달의 마지막 날의 근로자수 기준
 - *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는 삭제하며, 증가근로자수가 1명 미만인 경우 근로자가 증가된 것으로 보지 않음

[표 2-5] 근로자 수 산정 예시 (사업계획서 승인통보를 받은 날이 '16. 3. 15.일인 경우)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6월	7월	8월	9월	이후 매 3개월
사업시행 전 월평균 근로자수			계획서 제출	3.15 승인통보서 받음	고용 준비기간	사업시행 후 월평균 근로자수 (1차 지원금)			(2~4차 지원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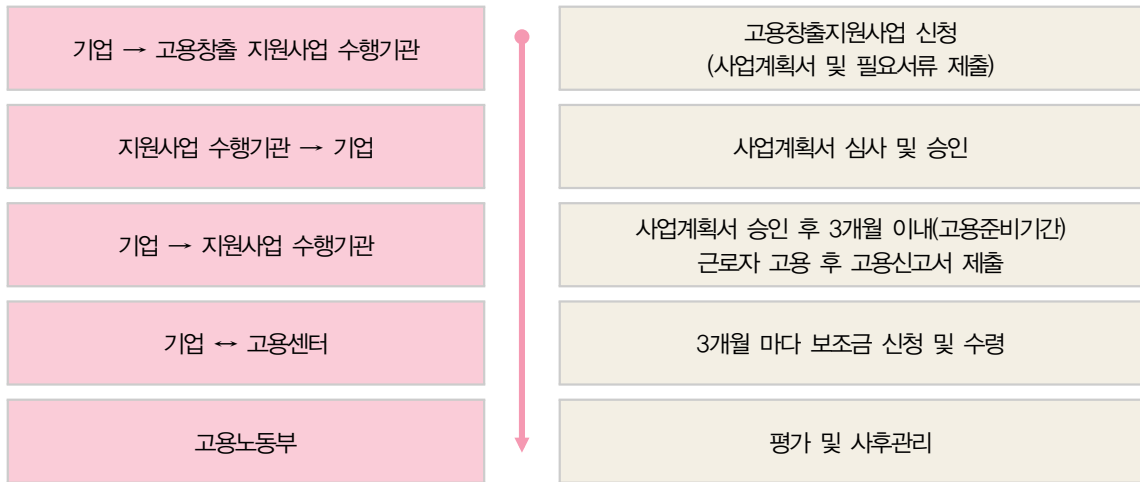
※ 지원금 적용 제외 근로자의 범위

-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55세이상 고령자 등 일부는 예외)
- 비상근 촉탁근로자
-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자(일용근로자)
-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
-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 최종 이직(고용 전 1년 이내 이직 포함) 당시 사업주 및 기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주
-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
- 당해 사업장의 업무수행이 아닌 사유로 지원대상 기간 중 통합하여 30일 이상 국외에 체류한 자 등
- 고용(원료)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2개월까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 시키지 아니 하여야 함

나. 지원 내용

- 새로 고용된 근로자 1명당, 최대 1,080만원 지원
 - 단, 사업주가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75% 한도로 지급
- 고용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지원인원 및 지원금액 결정
- 지원기간 1년

다. 지원 절차



- 사업계획서 제출 : 연중 상시 접수(매월 말)
- 사업계획서 심사 완료 : 매월 말 사업계획서 접수 마감 후 20일 이내
-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나, 실제로 고용창출지원사업을 도입한 경우에는 고용준비기간 마지막 날에 신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

지원제도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지원제도를 받기 전 관련법규에 대한 변경여부 및 상세상황에 대해 해당기관에 사전확인 필요

관련문의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과 1350

참고 1

고용창출지원사업 신청서

고용창출지원사업 신청서

고용창출지원사업 신청서					
기업 현황	고 용 보 험 사 업 장 관 리 번 호				
	사 업 장 명	업 종			
	소 재 지				
	대 표 자	담 당 자(직 책)			
	전 화 번 호	휴 대 폰 번 호			
	전 체 근 로 자 수	피 보 험 자 수			
고용창출 사업참여 유형	☐ 일자리함께하기		☐ 교대제 개편 ☐ 실근로시간 단축제 ☐ 일자리순환제		
	☐ 고용환경개선용자지원		☐ 기숙사 ☐ 구내식당 ☐ 목욕시설 ☐ 사내 교육시설 ☐ 체력단련시설 ☐ 통근차량 ☐ 화장실		
	☐ 지역·성장산업고용지원		☐ 성장유망산업 ☐ 국내복귀 기업 ☐ 지역특화산업		
	☐ 전문인력채용지원		☐ 경영·인사분야 ☐ 제품·개발 분야 ☐ 기술·기능 등 기타		
지원신청 내용	신규고용창출계획인원		명	인건비 지원대상자수	명
	인건비 신청금액		원	임금감소근로자 임금보전 (일자리함께하기 한함)	명 원
	설비투자비 또는 고용환경개선 투자금액 (일자리함께하기, 고용환경개선 지원에 한함)		원		
	투자비 지원금 신청금액	원	투자비 융자금 신청금액	원	
20 년도 고용창출지원사업 참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〇〇지방고용노동청(〇〇지청)장 귀하					
※ 구비서류 (10부 첨부) 1. 사업계획서 2.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3.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 4. 설비투자비 또는 고용환경개선사업 견적서 1부					

참고 2 고용창출지원사업 사업계획서

* 사업계획서 작성 예시 참조

1. 사업 유형

- (예시) 일자리함께하기 지원사업
- ※ 일자리함께하기 지원, 고용환경개선 지원, 시간제일자리 지원, 지역성장산업고용 지원, 전문인력채용 지원 중 택일

2. 사업체 현황

- 사업체 연혁
- 사업현황 : 업종, 사업내용, 주요생산품
- 재무상태 : 매출액규모, 자산현황
- 조직현황 : 조직체계, 유형별 근로자현황(비정규직 등)
- 인사노무제도 현황 : 근로관련제도(교대제 등), 능력개발제도
- 사업체 장기 비전

3. 고용창출지원사업 필요성 및 효과

- 사업 개요
- 사업의 필요성
- 세부 성과목표
- 사업 전후 구조 변화
- 사업의 장기적 비전

4. 사업 세부내용

- (예시) 실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구체적 도입방안, 근로자 증가규모, 컨설팅서비스 이용 계획 등

5. 고용 창출계획

- 근로자 고용 계획
- 근로자 유형, 근무분야
- 근로자 예상 임금 수준
- 근로자 모집 방법
- 지원사업 이외 고용창출계획

6. 설비투자, 고용환경 투자계획

- 설비투자 또는 고용환경개선 필요성지원사업 이외 고용창출계획
- 설비투자 품목 또는 고용환경 개선 대상 시설 현황 등

7. 임금감소근로자 임금보전 계획(일자리함께하기 한정)

- 근로시간단축에 따른 임금감소 근로자 현황
- 임금감소에 대한 노사부담 및 지원 방안 등

8. 자원 마련

- 추가 소요 자원 규모
- 자원 마련방법

9. 추진 일정

- (예시) 제도도입, 근로자채용 등

10. 기타

- 고용환경개선지원사업의 공동참여 여부 등
(공동참여사업주간 협약서 첨부)

사업계획서는 본 서식을 토대로 하되, 신청자가 사업내용에 따라 일부내용을 추가할 수 있음

2) 해외사업장 숙련공 비자지원 및 외국인 노동자 국내채용

- 국내복귀기업의 핵심 인적자원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외국인 생산관리자에 대한 E-7비자 (특정활동사증) 발급허용 및 E-9(비전문취업) 고용인원 한도 확대

2-1) 특정활동사증(E-7)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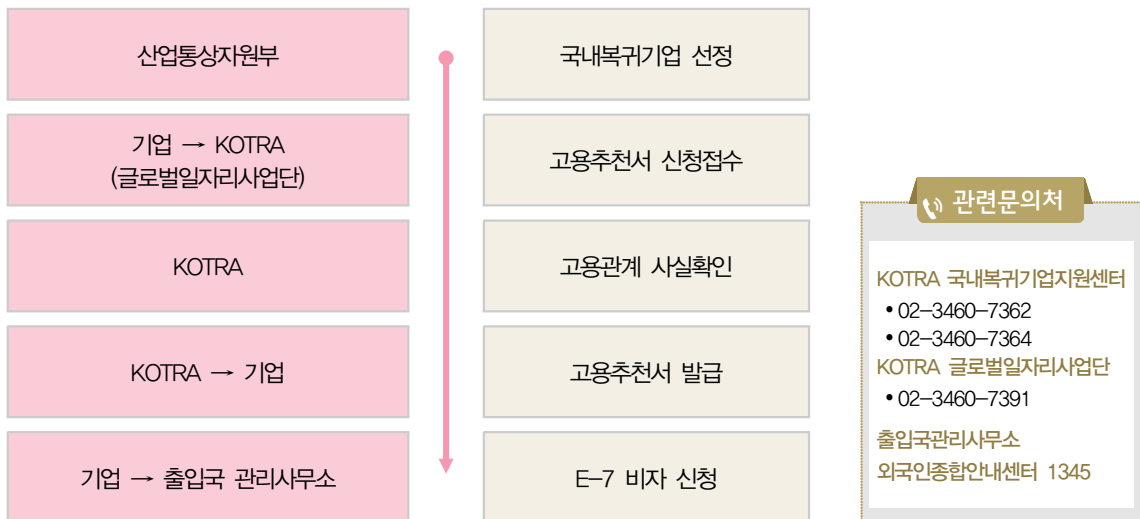
가. 지원 대상

- 지원대상 국내복귀선정기업의 외국인 생산관리자
 - 자격 요건
 - 국내 복귀 기업의 경우 해외현지 사업장에서 5년 이상 근무
 - 학위가 없는 경우 해당 직종 기술자격증을 보유하고 있거나, 해당분야 전문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수상경력, 관련 언론보도 또는 KOTRA 현지무역관 직원의 확인을 받은 경력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발급허용

나. 발급 한도

- 국내사업장 고용보험 가입 내국인 피보험자(3개월 평균) 수의 10% 범위 내에서 허용인원을 산정
- 해외 사업장의 국내이전 및 가동 준비를 위해 초청하는 필수인력에 대해서는 산증설되는 국내사업장의 고용규모 등을 감안하여 허용인원의 50% 범위 내에서 선입국 허용

다. 신청 절차



*고용추천서 신청 홈페이지 : www.contactkorea.go.kr (골드카드 발급신청)

2-2) 비전문취업(E-9) 지원

● 국내복귀기업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해 일반 국내 거주 외국인 근로자의 추가 고용 허가

가. 허용 대상

- 선정된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중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 상시근로자가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이 80억원 미만인 기업 또는 중소기업 확인기업
 - 5억원 이상의 신규투자(토지제외)를 완료한 기업
 - * '5억원 이상 신규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별지제2호서식 신규투자확인서(부록3 참조) 제출 필요

나. 허용 인원

- 과거 1년간 내국인 고용인원 만큼 외국인근로자 추가고용 허용

[표 2-6] 비전문취업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한도

내국인피보험자수	고용허용인원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한도
1인 이상 5인 이하	5인 이하	최대 20% 이내 추가 허용
6인 이상 10인 이하	7인 이하	
11인 이상 30인 이하	10인 이하	
31인 이상 50인 이하	12인 이하	
51인 이상 100인 이하	15인 이하	
101인 이상 150인 이하	20인 이하	
151인 이상 200인 이하	25인 이하	
201인 이상 300인 이하	30인 이하	
300인 이상	40인 이하	

※ 외국인 고용 사업장의 자격 요건

- 아래의 항목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외국인 고용 사업장 자격에 부합
 - 외국인 근로자 허용업종 및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가능한 사업장
 - 14일 이상 내국인 구인노력을 하였음에도 내국인근로자를 채용하지 못한 사업장
 - 내국인 구인신청을 한 날의 2개월 전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일 까지 고용조정 등으로 내국인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은 사업장
 - 구인신청일 5개월 전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일 까지 임금체불을 하지 않은 사업장
 - 고용제한 기간 중에 있지 않은 사업장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일 경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중인 사업장
 -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경우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사업장

다. 지원 절차



관련문의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과 1350
KOTRA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
• 02-3460-7362
• 02-3460-7364

참고 1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재발급 신청서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2.5.14>				EPS시스템(www.eps.go.kr)에 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 []재발급)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주된 사업장 (사업주)	1-①고용보험사업장 관리번호		1-②사업자등록번호		
	1-③사업장명		1-④대표자		
사업장	2-①고용보험사업장 관리번호		2-②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2-③사업장명		2-④대표자		
	2-⑤소재지 □□□-□□□		2-⑥ 연락처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팩스	
	2-⑦업종		E-mail		
	2-⑧사업내용				
2-⑨상시 근로자 수					
총 명 (내국인근로자: 명, 외국인근로자: 명)					
2-⑩가입보험					
[] 고용 [] 산재 [] 건강 [] 국민					
발급 요건	⑪내 국 인 구인노력	구인인원 명			
		구인직종 직종() 직무내용() *구체적으로 적을 것			
		구인기간 () 일 (~)			
		고용센터	면 접 일 시		
		알 선 자	면접대상자		
	면접이력	채용하지 않은 사유			
	⑫내 국 인 구인노력 외 발급요건 충족여부	[] 외국인근로자 도입업종에 해당 [] 내국인 구인신청일 2개월 전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일까지 내국인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않았음 [] 내국인 구인신청일 5개월 전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일까지 임금체불이 없음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 이미 고용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출국만기보험 등 보증보험 가입			
구인 사항	⑬모집 인원	명	⑭국 적	1) 2)	
	⑮학 력	최저: 최고:	⑰자격면허	1)	
	⑯전 공			2)	
	⑰연 령	만 세 ~ 세			
	⑱한국어능력	[] 상 [] 중 [] 하 [] 관계없음			
	⑲모집 외국인 구분	[] 신규입국자 [] 사업장 변경자 [] 재입국자([]정양선 []일반양선) [] 관계없음			
	㉑기타				
※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인의 경우 뒤쪽의 '근로조건' 을 적으십시오					

210mm×297mm(백상지 80g/m²)

2-5. 보증 지원

가. 신청 대상

-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나. 지원 내용

- 지원 자금 : 국내 사업장 설치 또는 운영에 소요되는 운전·시설자금
- 보증 한도 : 적용 매출액의 1/2~1/3
 - * 적용매출액은 신용보증기금의 기준에 따른 추정매출액 적용을 원칙으로 하며, 추정 불가능 시 최근 1년간 매출액 또는 당기 매출액을 적용
- 보증 비율 : 90% 부분보증비율 적용
- 보증료 : 0.2%p 차감 보증료를 적용

지원제도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지원제도를 받기 전 관련법규에 대한 변경여부 및 상세상황에 대해 해당기관에 사전확인 필요

☎ 관련문의처

한국신용보증기금
1588-6565

2-6. 구조조정 컨설팅 지원

가. 지원 목적

- 기업의 특성에 맞는 청산·매각·양도·축소 등 구조조정 모델제안 및 대행을 통해 기업의 효율적인 사업재편 지원

나. 신청 대상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복귀 기업으로 승인신청 또는 승인 완료된 기업
- 해청산 등 구조조정 절차를 진행중이거나 계획서를 제출하고 향후 이행예정인 중소·중견기업
 - 국내복귀 미선정기업도 지원가능
 - 신청하는 모 기업이 존재해야함
 - 일부 업종 제외(참고1, p.39)

다. 지원 내용

- KOTRA 등록 컨설팅회사를 통해 해외진출기업이 구조조정 컨설팅을 받을 경우, 컨설팅 이용금액의 50%~70% 지원(한도 : 중국 CNY 50,000, 베트남 USD 5,000/ 컨설팅회사에 지급)

[표 2-7] 구조조정 컨설팅 내용

① 구조조정모델 제안 (청산, 매각, 양도, 축소 포함)	② 청산 대행
• 각 구조조정모델에 대한 행정절차와 업무흐름 안내 • 구조조정별 비용 추정 및 최적화 모델 도출	• 최적의 청산전략 및 계획 수립 • 청산을 위한 실무, 행정 업무 대행 * 실무 대행(동사회 소집, 채권정리 공고, 신문보도, 청산위원회 등) * 행정대행(심의비준, 등기말소 등) • 청산법무, 노무 서비스 등
③ 축소 대행 (downsizing)	④ 매각 및 지분양도 대행
• 최적의 축소 전략 및 계획 수립 • 축소를 위한 실무, 행정 업무 대행 • 축소 법무, 세무, 노무 서비스 등	• 최적의 매각(또는 지분양도)전략 및 계획 수립 • 매각(또는 지분 양도)을 위한 실무, 행정 업무 대행 • 매각(또는 지분 양도) 법무, 세무, 노무 서비스 등

라. 지원 절차



제출서류

지원대상 국내복귀선정기업

- 구조조정 컨설팅 지원사업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참고2 참조, p.40)
- 국내복귀기업 선정서
- 컨설팅 계약에 관한 서류(계약서, 컨설팅 수행계획서 등)
- 기타 산업통상자원부가 정하는 서류

지원대상 국내복귀선정기업 외의 기업

- 구조조정컨설팅 지원사업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참고2 참조, p.40)
- 국내법인에 관한 서류(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세금계산서 등)
- 해외법인에 관한 서류(영업집조, 세무등기증, 재무제표 등)
- 컨설팅 계약에 관한 서류(계약서, 컨설팅 보고서 등)
- 기타 산업통상자원부가 정하는 서류

관련문의처

KOTRA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

- 02-3460-7362
- 02-3460-7364

중국 및 베트남 (현지무역관)

- 베이징 : 86-10-6410-6162
- 상하이 : 86-21-5108-8771
- 칭다오 : 86-532-8388-7931
- 광저우 : 86-20-2208-1604
- 선 양 : 86-24-3137-0770
- 호치민 : 84-8-3822-3944
- 하노이 : 84-4-3946-0511

참고 1 구조조정 컨설팅 지원사업 제외 업종

코드	해 당 업 종
33402중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33409중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451	자동차 판매업 중 소매업
46102중	주류, 담배중개업
46331	주류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47	소매업
55~56	숙박 및 음식점업(관광호텔업 제외)
5821중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
64~66	금융 및 보험업
68	부동산업
7152	비금융 지주회사
7153	경영컨설팅 및 공공관계 서비스업
711	법무관련 서비스업
712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8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851~854	교육서비스업
86	보건업
731	수의업
9112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9122	오락장 운영업
91113	경주장운영업
9124	갬블링 및 배팅업
9129	기타오락관련 서비스업
94	협회 및 단체
96	기타 개인서비스업(산업용세탁업(96911) 제외)
97~98	가구내 고용 및 자가서비스 생산활동
99	국제 및 외국기관

참고 2 구조조정컨설팅 신청서 (완료보고서도 동일)

[별지 제1호 서식]

KOTRA 해외진출 우리기업 구조조정컨설팅 지원사업 신청서(완료보고서)											
신청무역관		KOTRA _____ 무역관									
기본정보											
신청기업 (해외진출기업)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營業執照主册號)				대표자 전화번호				
	대표자명						e-mail				
	주소		본사 우()					전화번호			
			공장 우()					전화번호			
	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대분류/중분류)			업태		1) 2)			
	주생산물		1) 2) 3)								
	재무 현황	최근 결산년도	매출액 (원)	당기제품 제조원가 (원)	영업이익 (원)	당기 순이익 (원)	자산총계 (원)	부채총계 (원)	자본총계 (원)	유동비율 (%)	
		20									
	홈페이지						종업원수(명)		(상시근로자수)		
구조조정 목적											
신청모기업 (국내모기업)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명						대표자 전화번호				
	e-mail										
	주소		본사 우()					전화번호			
			공장 우()					전화번호			
	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대분류/중분류)			업태		1) 2)			
	주생산물		1) 2) 3)								
	재무 현황	최근 결산년도	매출액 (원)	당기제품 제조원가 (원)	영업이익 (원)	당기 순이익 (원)	자산총계 (원)	부채총계 (원)	자본총계 (원)	유동비율 (%)	
		20									
홈페이지						종업원수(명)		(상시근로자수)			
컨설팅회사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營業執照注册號)				전화번호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홈페이지						종업원수(명)		상근: 명 비상근: 명		
과제책임자 (컨설팅회사)	성명						직위				
	전화						e-mail				
	휴대전화						팩스				

컨설팅 내용					
컨설팅 주제	대행		컨설팅		
	청산/매각/지분양도/기타()		청산/매각/지분양도/기타()		
컨설팅 개요	(상기 선택한 주제를 바탕으로 세부사항을 요약하여 기입)				
컨설팅 기간	20 . . ~ 20 . . (개월)				
컨설팅 금액					
산출 금액		할인 금액		최종 금액	
정부지원 요청액	컨설팅 계약금액의 50%~70%(단, CNY 50,000/USD 5,000) (%)				
KOTRA 해외진출 우리기업 구조조정컨설팅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신청하며, 기재된 내용 및 첨부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일 경우, 신청취소 및 참여제한 등의 조치에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대표자(총괄책임자)의 메일링, SMS수신서비스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기업 : (직인) 신청기업 대표자 : (직인) 컨설팅회사 : (직인) 컨설팅회사 대표자 : (직인) KOTRA 사장 귀하					

The background of the cover features a stylized world map in the upper half, rendered with a hatched pattern. Below the map, several tall, modern skyscrapers are depicted in a perspective view, creating a sense of depth. The entire design is set against a blue and white color scheme with curved, abstract shapes.

2016 국내복귀기업 지원 종합가이드

kotra

부록

부록 1 국내복귀기업 GUIDE FAQ	44
부록 2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고시	47
부록 3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 신청서류 및 작성예시	68
3-1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신청서	69
3-2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해외사업장 청산, 양도 완료신고서	78
3-3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해외사업장 축소 완료신고서	80
3-4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국내사업장 신설, 증설 완료신고서	92
3-5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해외사업장의 청산, 양도 또는 축소 관련 계획서	95
3-6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국내사업장의 신설, 증설 관련 계획서	99
3-7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	104
3-8 고시 별지 제1호 서식 자본재 등 도입물품 명세 검토확인신청서(확인서)	105
3-9 고시 별지 제2호 서식 신규 투자확인신청서(확인서)	106
부록 4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107
부록 5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신청서류 및 별지서식	134
5-1 별지 제1호 서식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신청서	135
5-2 별지 제2호 서식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사업 타당성 평가서	137
5-3 별지 제3호 서식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정산 신청서	138
5-4 별지 제4호 서식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정산 결과서	139

부록1. 국내복귀기업 GUIDE FAQ

[Q1] 국내복귀기업(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 신청을 하려면 국내에 회사가 있어야 하나요?

[A] 국내복귀는 해외에서 운영하던 사업을 국내로 이전 또는 개시하는 것이므로 국내에 회사가 있어야 합니다. 국내 회사의 형태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모두 가능합니다. 사업준비 단계에서는 국내 회사를 설립하기 전일 수 있는데, 국내복귀기업으로의 신청은 국내에 회사가 설립이 된 후에 가능합니다.

[Q2] 해외진출기업(해외사업장)의 업종과 국내 사업장의 업종이 같아야 하나요?

[A]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해외사업장에서 제조한 동일한 제품을 국내사업장에서 제조해야 합니다. 동일한 업종인지의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 5자리 중 앞 4자리까지 일치 (세분류까지 동일) 하는지로 판단합니다.

[Q3] 기존 국내사업장이란 무엇인가요? 한국에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다면 기존국내사업장 인가요?

[A]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에서 정의하는 기존 국내사업장이란, 해외사업장에서 생산한 동일한 제품을 제조하는 국내사업장을 말하는 것으로 해외사업장의 생산 제품이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4자리)가 일치하는 것이 아니면, 동종업종의 기존 국내사업장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중국현지 사업장의 생산품이 기능성운동화(등산화, 축구화 등)이고 국내에 기능성 운동화를 생산하는 제조사업장을 보유 중 또는 최근 3년 이내에 폐지(매각, 양도 또는 폐업)한 경우, 이를 기존국내사업장 보유 기업으로 분류합니다.

[Q4] 실질적 지배자란 무엇인가요?

[A]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해외사업장의 실질적 지배자와 국내신증설 사업장의 실질적 지배자가 동일해야 합니다. 실질적지배자는 단독으로 또는 합산대상자와의 지분을 합산하여 출자총액의 30% 이상을 소유하여야 하며, 동시에 해당기업의 대표자 또는 최대출자자이거나, 해당기업의 출자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자산을 대여하거나, 채무를 보증하고 있는 경우 또는 대표자의 임면, 임원의 50% 이상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 경우를 말합니다.

[Q5] 실질적지배 중 합산대상자는 무엇을 뜻하나요?

- [A]** 지분을 합산할 수 있는 합산대상자는 신청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등), 신청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기업의 임원, 신청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다른 기업입니다. 해당 기업을 직접적으로 지배하는 경우 뿐만아니라, 지배기업이 손자기업의 주주인 자회사의 지분 등을 직접 소유하고 있는 간접지배의 경우도 실질적 지배로 보는 것입니다. 한편, 실질적 지배자 중 합산대상자간의 지분의 양수양도는 실질적 지배관계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Q6]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이 되기 위해서는 해외사업장을 반드시 청산양도해야 하나요?

- [A]** 기존국내사업장 보유 유무에 따라 해외사업장의 생산량을 축소하거나, 유지하는 경우도 국내복귀 기업으로 선정 가능합니다. 아래 표(표1)와 같이 기존국내사업장 보유기업의 경우에는 해외사업장을 유지할 수 없지만, 기존국내사업장 미보유기업의 경우, 해외사업장의 청산, 양도, 생산량 축소 뿐만아니라 유지도 가능합니다.

기존국내사업장	해외사업장 철수 유형	
보유	청산 또는 양도	생산량 50% 이상 축소
미보유	청산 또는 양도	유지 또는 생산량 50% 이상 축소

국내복귀기업선정 후, 인력지원, 비자발급, 고용보조금 지원은 해외사업장의 철수 유형과 관계없이 모두 지원이 가능하나, 관세감면, 입지설비보조금, 법인세소득세 감면은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기존국내사업장 보유기업의 경우 해외사업장을 완전 철수 해야 세제감면 혜택 및 입지설비투자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7]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국내사업장을 폐지하고 새로운 사업장으로 확장이전하는 경우, 국내사업장의 신설 혹은 증설의 기준에 부합하나요?

- [A]**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에서는 기존국내사업장을 확장이전 하는 경우 확장이전한 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이 기존 운영 사업장과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세분류가 동일하면, 국내사업장의 신증설요건을 만족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 확장이전의 경우에는, 확장이전 전의 사업장 대비 신규투자금액 및 신규 고용인원 수 등을 고려하여 단순 사업장의 이전이 아닌 실제 확장이전인지가 사후관리내용에 포함됩니다.

[Q8] 해외사업장은 유지하고 한국에 신규투자를 하고 싶습니다. 해외사업장을 유지하면서 국내복귀가 가능한가요?

[A] 기존국내사업장 미보유 기업의 경우 해외사업장을 유지하면서 국내 신증설사업장 투자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존국내사업장을 보유 하고 있는 기업은 해외사업장의 청산, 양도, 생산량 축소를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Q9] 이미 해외사업장을 청산하고 한국에 복귀하여 조업 중인데 국내복귀기업선정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이미 해외사업장을 청산하고, 국내사업장의 신증설을 완료한 기업의 경우 국내사업장 신증설 완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국내사업장의 신증설 완료일은 다음 각 호의 날 중 가장 늦은 날을 말합니다.

1. 신축 또는 증축한 공장 건축물이 ‘건축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날
2. 건축물의 일부 또는 전부가 용도변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서 또는 신고필증 발급일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제도시설설치 완료 신고를 한날
4. 국내복귀를 위해 가장 최근 제도시설 또는 시험생산시설의 구매계약을 체결한 날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법률’에 따른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 한한다.)

지원제도와 관련된 법령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원제도를 신청하시기 전 관련기관 담당자와 지원제도 적용여부에 대해 반드시 사전 확인 바랍니다.

부록2.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고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및 정착에 관한 효율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를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외진출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가. 대한민국 국민("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재외동포채류자격을 부여받은 재외동포를 포함한다) 또는 대한민국 법인에 따라 설립된 법인("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 기업을 포함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기업일 것 나. 기업 자신 또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다른 기업이 소유한 해외사업장을 통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을 하고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질적 지배기업)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기목에 따른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기업은 대한민국 국민("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재외동포채류자격을 부여받은 재외동포를 포함한다) 또는 대한민국 법인에 따라 설립된 법인("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 기업을 포함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기업일 것	제2조(발행주식 또는 출자액의 협산 대상자) ① 영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영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해당기업(이하 이 항에서 "해당기업"이라 한다)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2. 해당기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법인의 임원 3. 해당기업이 아닌 기업으로서 영 제2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 또는 법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기업 4. 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임원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있을 것 2. "사업장"이란 제1호나목의 제조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시설(물품의 가공·조립·수리 시설을 포함한다)이나 시험생산시설을 갖추고 생산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식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는 기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한다. 1. 대한민국 국민이 해당기업의 대표인 경우 2.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이 해당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지분 소유자인 경우. 이 경우 해당기업이 소재하는 국가의 법령 또는 방침에 따라 주식 또는 출자분 소유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제한된 부분을 제외하고 최대주주 또는 최대지분 소유 여부를 판단한다. 3.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이 해당기업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자산을 대여하거나 채무를 보증하고 있는 경우 4.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이 해당기업의 주요 주주(해당기업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하거나 임원의 임면 등 해당기업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를 말한다)와 계약에 의하여 대표이사를 임명하거나 임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선임하거나 선임할 수 있는 경우	② 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임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임원으로 한다.	제2조(시험생산시설의 범위) <삭 제> [전문개정]
3. "국내복귀"란 해외진출기업이 해외 사업장을 청산·양도 또는 축소(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해외진출기업은 해외사업장을 유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	제3조(사업장의 동일성 등) ① 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사업장을 국내에 신설·증설하는 것은 국내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1		제3조(해외사업장의 양도) 법 제2조 제3호의 해외사업장의 양도란 해외사업장의 전부를 타인에게 매각·처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하 같다)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외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장을 국내에 신설·증설하는 것을 말한다. 4. "국내복귀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기업을 말한다. 가. 국내복귀를 통하여 신설·증설된 사업장을 보유한 기업 나. 국내복귀를 진행 중인 기업으로서 해외사업장을 청산·양도 또는 축소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진행 중인 기업	호에 따른 공장의 신설을 하거나 같은 조 제22호에 따른 공장의 증설(공장부지면적의 증설은 제외)하되, 공장건축연면적의 증설은 포함한다) 및 기존의 공장을 매입·임대하고 해당 공장에 제조시설(시험생산시설을 포함한다)을 갖추는 것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내에 신설·증설된 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해외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동일한 세분류에 속하여야 한다. 제4조(국내복귀 진행기업) 법 제2조제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진행 중인 기업"이란 국내복귀를 하거나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1. 해외사업장의 청산·양도 또는 축소를 완료하였으나 국내 사업장의 신설 또는 증설을 완료하지 못한 기업 2. 국내 사업장의 신설 또는 증설을 완료하였으나 해외사업장의 청산·양도 또는 축소를 완료하지 못한 기업 3. 해외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장의 국내 신설·증설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를 진행 중인 기업		제4조(기본 국내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2조제3호 괄호안의 내용과 관련하여 기존 국내사업장(해외진출기업이 국내복귀 이전에 소유한 국내 사업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소유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은 국내사업장 신설·증설 개시일(국내복귀진행기업의 경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지원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국내사업장 신설·증설 개시일로부터 과거 2년 이내에 기존 국내사업장의 매각·폐기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기존 국내 사업장이 있는 해외진출기업으로 본다 ② 외국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 해외진출기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경우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소유한 국내사업장도 법 제2조 제3호의 기존 국내사업장으로 본다.

제5조(국내복귀기업 진행기업의 범위) 영 제4조 제3호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국내사업장의 신설·증설을 위한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와의 양해각서의 체결
2. 국내복귀를 위한 신청기업의 설립 등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및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해외진출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국내복귀기업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국내복귀기업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내복귀기업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2. 해외진출기업의 경영환경 여건 및 전망 3. 업종별 국내복귀 수요에 관한 사항 4.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활성화 방안 5. 국내복귀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내복귀기업의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을 요청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제6조(관계 기관과의 협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지원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제외한다) 2. 국내복귀기업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 3.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 4.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임지지원에 관한 사항 5. 제16조제3항에 따른 산업단지의 지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내복귀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5조(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 ① 법 제6조에 따라 관계 기관과의 협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법 제6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이 되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 해외진출기업 또는 국내복귀기업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제2항에 따른 심의·의결사항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3. 제11조제1항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제7조(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선정)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및 정착 지원을 위하여 국내복귀기업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지원을 받은 기업이 아닐 것 2. 해외사업장을 축소한 기업의 경우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외사업장의 축소가 이루어졌을 것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는 심의안건 관련 전문가와 기업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도록 할 수 있다. ⑨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임명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외국인투자촉진법 지원기업) 법 제7조 제1항 제1호의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 투자에 대한 지원을 받은 기업이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 9조에 의한 조세감면, 동법 제13조에 의한 임대료 감면, 동법 제14조의2에 의한 현금지원 등 재정적 지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소요되거나 수입의 감소를 수반하는 지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받은 해외진출 기업을 말한다. 제7조(생산량 감소의 기준) 해외사업장을 축소를 통해 국내복귀하려는 기업(국내사업장이 있는 기업에 한한다)은 해외사업장 축소원료일로부터 과거 1년간 생산한 생산량이 해외사업장
		제3조(해외사업장 축소의 기준) 법 제7조제1항 제2호에 따른 해외사업장 축소의 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3. 그 밖에 국내복귀기업 지원의 정책적 목적 달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선정 요건) 법 제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른 조세감면 등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 인투자에 대한 현금 또는 조세지원 등 재정적 지원을 받은 기업이 아닐 것 2. 국내복귀기업 지원제도의 정책목적 달성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제6조(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하는 기업의 제출 서류)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원 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을 신청하려는 기업(이하 "신청기업"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 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기업 장란 2. 해외진출기업 관련 현지에 등록된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지등록증에 해당하는 서류 및 장란(면역문 첨부) 3. 해외진출기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재외동포 채류 자격을 부여받은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해외사업장 증명서류(기업명 및 사업장명, 사업장 소재지, 설치일, 생산제품종류 등) 5. 해외진출기업의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지등록증, 장란에 해당하는 증명서류 6. 해외사업장의 주요 제조시설, 주요 시험생산시설, 관련서류(공정배치도, 평면도, 생산시설 설비	축소·개시일로부터 과거 1년간 생산한 생산량의 50% 이하인 경우 해외사업장의 축소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다만, 해외사업장 축소완료일(해외사업장 축소 개시일)로부터 과거 1년간 생산량의 파악이 어려울 경우에는 해외사업장의 축소완료일(해외사업장 축소 개시일)이 속한 년도의 생산량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되어 지원을 받으려는 기업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해외 및 국내 사업장 현황 2. 해외사업장의 청산·양도 또는 축소 및 국내사업장의 신설·증설 관련 국내 복귀계획서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제7조(국내복귀기업 선정결과 통보기 간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령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그 선정 결과를 신청기업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서류의 보완 등 통보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청기업이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선정결과를 통보할 때 그 사유를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신청기한 등) ① 영 제6조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한내에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 신청이 이루어져야 한다. 1. 신청전에 국내사업장의 신설·증설을 완료한 기업의 경우는 국내사업장 신설·증설 완료일로부터 1년 이내, 다만, 법 부칙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2012년 1월 1일부터 법 시행일 이전까지 기간에 국내사업장 신설·증설을 완료한 기업에 대해서는 고시 개정일로부터 1년 이내로 정한다. 2. 신청전에 해외사업장을 청산·양도한 기업의 경우는 청산·양도 완료일로부터 1년 이내(단, 국내사업장의 신증설이 완료되지 않은 기업에 한한다) 3. 해외사업장을 축소한 기업이 신청전에 해외사업장의 축소가 개시된 경우에는 해외사업장 축소 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 ② 영 제6조제2호에 따라 신청전에 해외사업장의 청산·양도완료된 기업이 신청전에 국내사업장의 신증설도 완료된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의 신증설 완료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에 해외사업장의 청산양도가 완료되어야 한다.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대강, 시설목록 및 명세서 등) 7. 해외진출기업의 해당 신고연도와 직전 2년간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 8. 해외진출기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 또는 법인(이하 "해외진출기업의 실질적지배자"라 한다)의 주민등록등본(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9. 해외진출기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10. 해외진출기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대한민국 법인의 임원명부, 법인등기부등본 11. 해외진출기업의 실질적지배자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기업의 지배구조 관련 주주명부 등 소유지분을 알 수 있는 서류 12. 해외진출기업의 실질적지배자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기업의 임원명부, 법인등기부등본 13. 해외진출기업의 임원명부 14. 해외진출기업의 대표에 대한 임면권을 해외진출기업의 실질적지배자에게 부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서 15. 해외진출기업 총 임원의 50% 이상의 임면권을 해외진출기업의 실질적지배자에게 부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서 16. 신청기업의 해당 신고연도 주식변동상황명세서 17. 신청기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18. 신청기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 또는 법인(이하 "신청기업의 실질적지	제9조(국내사업장 신설·증설 개시일 등) ① 이 고시에서 국내사업장 신설·증설 개시일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1. 신청일까지 국내사업장의 신설·증설을 미완료한 경우에는 신청일 2. 신청일 이전에 국내사업장의 신설·증설이 완료된 경우에는 완료일로부터 과거 1년이 되는 날 ② 이 고시에서 국내사업장 신증설의 완료일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 중 가장 늦은 날을 말한다. 1. 신축 또는 증축한 공장 건축물이 건축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날 2. 건축물의 일부 또는 전부가 영 제6조에 따른 용도변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서 또는 신고필증 발급일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제조시설설치 완료 신고를 한 날 4. 국내복귀를 위해 가장 최근 제조시설 또는 시험생산시설의 구매계약을 체결한 날('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조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 한한다) ③ 이 고시에서 해외사업장의 청산·양도 완료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해외사업장 청산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가. 해외법인의 청산종결등기일 나. 해외법인 해산인 또는 청산인의 해외진출국(해외진출기업이 기업활동을 하고 있는 외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소재하고 있는 법원에 청산 신고일 다. 해외법인 주주총회를 통한 해산결의일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배자"라 한다)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기업의 지배구조 관련 주주명단 등 소유지분을 알 수 있는 서류 19. 신창기업의 실질적지배자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기업의 임원명부 20. 신창기업의 임원명부 21. 신창기업의 대표에 대한 임면권을 신창기업의 실질적지배자에게 부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서 22. 신창기업 총 임원의 50% 이상의 임면권을 신창기업의 실질적지배자에게 부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서 23. 해외진출기업의 과거 3년간 재무제표와 부속명세서 24. 해외진출기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대한민국 법인의 과거 3년간 재무제표와 부속명세서 25. 해외진출기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대한민국 법인이 과거 3년간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명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창기업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1항에 따른 서류와 함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외사업장의 청산·양도가 완료된 기업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해외사업장 청산·양도 완료신고서 및 다음 각 목의 첨부서류 가. 해외사업장 소재국의 정부가 발급한 청산관련 서류(청산종결 등기 신고서·접수증, 청산인 신고서·접수증, 폐업 신고서·접수증 등) 나. 사업 양수·양도 계약서 등 증명서류 다. 사업 양수·양도 계약서에 따른 매매대가 수령 완료 관련 증명서류	배자"라 한다)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기업의 지배구조 관련 주주명단 등 소유지분을 알 수 있는 서류 19. 신창기업의 실질적지배자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기업의 임원명부 20. 신창기업의 임원명부 21. 신창기업의 대표에 대한 임면권을 신창기업의 실질적지배자에게 부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서 22. 신창기업 총 임원의 50% 이상의 임면권을 신창기업의 실질적지배자에게 부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서 23. 해외진출기업의 과거 3년간 재무제표와 부속명세서 24. 해외진출기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대한민국 법인의 과거 3년간 재무제표와 부속명세서 25. 해외진출기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대한민국 법인이 과거 3년간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명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창기업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1항에 따른 서류와 함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외사업장의 청산·양도가 완료된 기업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해외사업장 청산·양도 완료신고서 및 다음 각 목의 첨부서류 가. 해외사업장 소재국의 정부가 발급한 청산관련 서류(청산종결 등기 신고서·접수증, 청산인 신고서·접수증, 폐업 신고서·접수증 등) 나. 사업 양수·양도 계약서 등 증명서류 다. 사업 양수·양도 계약서에 따른 매매대가 수령 완료 관련 증명서류	라. 세무서 등 조세관련기관에 대한 폐업신고일 마. 기타 해외진출국 법체계상 기록에서 리묵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이라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날 2. 해외사업장 양도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가. 해외법인 사업 양수도 계약에 따른 양수인의 양도인에 대한 매매대가 지급 완료일 나. 해외법인 자본의 매각·처분등의 계약에 따라 양수인이 양도인에 대해 매매대가 지급을 완료한 날 다. 기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국내복귀기업 선정·취소 자문위원회의 지문 결과 해외진출국 법체계상 기록과 나묵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이라고 인정되는 날. 제10조(신창기업) 국내사업장을 신설·증설하여 운영할 국내 개인사업자, 또는 국내 법인이 신청할 수 있다. 제11조(자산관계의 확인) ①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법 제7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제출서류에 대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창기업, 해외투자기업 국내 사업장 등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법 제7조에 따른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의2에 따른 관세감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외국인근로자 도입계획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해 필요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별지 1호 서식에 따른 도입자본제, 별지 2호서식에 따른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내복귀가 진행 중인 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조건으로 하여 자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업은 제2항에 따른 국내복귀계획서에 조건의 이행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국내사업장의 신설·증설이 완료되지 아니한 기업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하는 기한 내에 국내사업장의 신설·증설을 완료할 것		라. 해외법인 지분매매계약서 등 증명서류 마. 해외법인 지분매매계약서에 따른 매각대가 수령완료 관련 증명서류 2. 해외사업장 축소가 완료된 기업의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해외사업장 축소완료신고서 및 해외사업장 축소개시 직전연도부터 완료연도까지의 재무제표와 부속명세서 3. 국내사업장의 신설·증설이 완료된 기업의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국내사업장 신설·증설 완료신고서 및 다음 각 목의 첨부서류 가. 국내 신설·증설 사업장의 주요 생산제품 명세서 나. 건축물 신축 공장건축면적 확대 및 용도변경 허가신청(신고)에 대하여 담당청이 발급한 허가서(신고확인증) 다. 신축·증축한 건물에 대하여 담당청이 발급한 사용승인서 라. 추가 설치한 생산시설 관련 서류(제조시설명세서 등) 마. 건축물의 신설·증설과 관련한 공장건축물 매입계약서 또는 임차계약서 바. 시설 설치와 관련한 생산시설 매입계약서 또는 임차계약서 4. 해외사업장의 창산·양도 또는 축소가 완료되지 아니한 기업의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해외사업장의 창산·양도 또는 축소 관련 국내복귀계획서 5. 국내사업장의 신설·증설이 완료되지 아니한 기업의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국내사업장의 신설·증설 관련 국내복귀계획서	신규투자금액 등의 검토·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접수서류의 검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진흥공사"라 함)는 별제7조제1항 및 영 제10조제8항에 따라 자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 신청 서류를 접수하는 경우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류의 사실여부 및 선정 타당성을 검토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0일 이내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국내사업장 신설 기한 등) ① 별 제7조제3항 제1호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하는 기한이란 선정일로부터 2년을 말한다. 다만, 「국가기밀보호법」의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은 기업은 보조금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에서 명시한 투자원료 기한으로 신설기한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연기간 만료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1. 신청기업의 귀책사유와 관계없이 국내사업장 신설·증설 관련 인허가권자의 사정으로 인해 인허가가 지연되는 경우 2. 천재지변으로 인해 국내사업장 신설·증설이 불가피하게 지연되는 경우 3. 사공사 등 사업장 신설·증설 관련 기업의 부도, 급작스런 창산 등으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2. 해외사업장의 창산·양도가 완료되지 아니한 기업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한 내에 해외사업장의 창산·양도를 완료할 것			는 경우 4. 사업장 신설·증설과 관련된 노동쟁의, 법률쟁송으로 인해 지연되는 경우 5.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3. 해외사업장의 축소가 완료되지 아니한 기업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한과 기준에 따라 해외사업장을 축소할 것 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내·외 사업장 운영에 필요한 인력, 시설, 자금 등 사업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고, 선정된 기업에 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대상 국내·외 사업장 선정확인서를 발급한다.		제5조(이행결과 신고서류 제출) 지원대상 국내·외 사업장 선정 시 제4조제2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국내·외 사업장 운영을 위한 서류를 제출한 기업은 법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한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해외사업장의 창산·양도 기한) 국내·외 사업장에 있는 기업의 경우 법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기한까지 해외사업장 창산·양도를 완료하여야 한다 1. 국내·외 사업장의 산증설이 미완료된 기업의 경우 선정일로부터 4년 2. 국내·외 사업장의 산증설이 완료된 기업의 경우 완료일로부터 4년
3. 해외사업장의 축소가 완료되지 아니한 기업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한과 기준에 따라 해외사업장을 축소할 것 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내·외 사업장 운영에 필요한 인력, 시설, 자금 등 사업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고, 선정된 기업에 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대상 국내·외 사업장 선정확인서를 발급한다.		제15조(해외사업장의 축소 기한 등) 기존 국내·외 사업장에 있는 기업의 경우 법 제7조제3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한내에 해외사업장 축소를 완료하여야 한다 1. 선정일까지 축소를 개시하지 않은 기업의 경우 선정일로부터 4년 이내 2. 선정일 이전에 축소를 개시한 기업의 경우 축소개시일로부터 4년 이내	제15조(해외사업장의 축소 기한 등) 기존 국내·외 사업장에 있는 기업의 경우 법 제7조제3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한내에 해외사업장 축소를 완료하여야 한다 1. 선정일까지 축소를 개시하지 않은 기업의 경우 선정일로부터 4년 이내 2. 선정일 이전에 축소를 개시한 기업의 경우 축소개시일로부터 4년 이내
제16조(이행결과 제출 시기) 시행규칙 제5조 각 호의 신고서는 다음 각 호의 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⑤ 제4항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 국내 복귀기업은 해외사업장의 청산·양도 또는 축소, 국내사업장의 신설·증설 관	제8조(변경통지의 대상) 법 제7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별지 제5호서식의 해외사업장의 청산·양도 또는 축소 관련 국내복귀계획서를 제출한 기업의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해외사업장의 청산·양도 또는 축소 관련 국내복귀계획 이행결과신고서 및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첨부서류 가. 해외사업장 청산·양도의 경우: 다음 세목의 첨부서류 1) 해외사업장 소재국 정부가 발급한 청산 관련 서류(청산종결등기 신고서·접수증, 청산인 신고서·접수증, 폐업 신고서·접수증 등) 2) 사업 양수·양도 계약서 등 증명서류 3) 사업 양수·양도 계약서에 따른 매대가 수령 완료 관련 증명서류 4) 해외법인 지분매매계약서 등 증명서류 5) 해외법인 지분매매계약서에 따른 매각대가 수령완료 관련 증명서류 나. 해외사업장 축소의 경우: 다음 세목의 첨부서류 1) 해외사업장 축소개시연도부터 원료연도까지의 재무제표와 부속명세서 2) 별지 제3호서식의 해외사업장 축소원료신고서 2. 별지 제6호서식의 국내사업장 신설·증설 관련 국내복귀계획서를 제출한 기업의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국내사업장 신설·증설 관련 국내복귀 이행결과신고서 및 다음 각 목의 첨부서류 가. 국내 신설·증설 사업장의 주요 생산제품내역 나. 건축물 신축, 공장건축면적 확대 및 용도변경 허가신청(신고)에 대하여 담당청이 발급한 허가서(신고확인증) 다. 신축·증축한 건물에 대하여 담당청이 발급한 사용승인서 라. 제조시설 명세서 등 생산시설내역	1. 시행규칙 제5조 제1호의 해외사업장 청산·양도 또는 축소의 경우 원료일로부터 30일 이내 2. 시행규칙 제5조 제2호의 국내사업장 신설·증설 완료의 경우 원료일로부터 30일 이내 3. 삭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런 국내복귀계획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제2조에 따른 해외진출기업 관련 실질적 지배 관계에 관한 사항 2. 국내복귀기업의 업종 및 주요 생산제품에 관한 사항	마. 기존 국내사업장을 폐지한 경우 매각계약서 등 기존 국내사업장 폐지 관련 서류 제6조(국내복귀기업 선정결과 통보기간의 연장) 영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결과 통보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통보기간을 6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1. 제출된 서류가 불충분하여 서류보완이 필요한 경우 2. 천재지변·전쟁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서류에 대한 내용 검증이 어려운 경우 3. 신청기업이 소유권의 귀속 등과 관련하여 소송중이어서 국내복귀기업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4. 신청기업 또는 해외사업장 소재국의 정부가 실태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협조하지 않는 경우 5.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을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선정된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변경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7조(변경통지의 대상) 영 제8조제3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사업장 신설·증설 완공 시점 2. 기존 국내사업장의 폐지 여부 및 폐지와 함께 국내사업장 신설·증설이 이루어진 경우 신설·증설 규모 3. 국내사업장의 신설·증설 규모 변동사항 4. 해외사업장 청산·양도 완료 시점 5. 해외사업장 축소 규모 변동사항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제8조(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의 취소)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원 대상 국내복귀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을 신청한 경우 2.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이 폐업하거나 국내복귀를 통하여 신설·증설한 사업장을 2년 이상 계속하여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3. 선정 시 제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4. 제7조제2항제2호의 국내복귀계획서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제7조제5항에 따른 변경통지의 결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선정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6. 그 밖에 제5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서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선정을 취소하거나 지원	제9조(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선정 취소 사유) 법 제8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해외사업장의 축소 개시시점 및 축소 완료시점 7. 그 밖에 국내복귀계획서와 관련된 변경 사항 제8조(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 발급)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해당 기업, 관계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9조(실태조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해외진출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통계자료를 수집·작성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선정 및 지원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해외사업장 및 국내사업장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통계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실태조사 및 통계자료의 수집·작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해당 기업의 영업비밀과 관련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사용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외사업장을 축소한 국내복귀기업이 해외사업장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동안 산업통상자원부로 정하는 축소된 생산량을 초과하여 생산하는 경우 2. 국내 사업장이 있는 국내복귀기업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동안 기존 국내 사업장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3.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 국내복귀계획서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5.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 투자에 대한 지원을 받게 된 경우	제17조(해외사업장 축소의 유지) 영 제9조제1호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하는 기간이란 해외사업장의 축소를 완료한 년도의 다음 년도로부터 기산하여 3년을 말한다. 제18조(기존 국내사업장의 유지) 영 제9조 제2호의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국내사업장의 신증설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을 말한다. (다만, 기존 국내사업장을 확장·전하는 경우에는 제외하며,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기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은 기업은 보조금 지원 자격과 관련하여 해당 규정의 기준에 따른다)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제10조(업무의 위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서류의 접수, 접수된 서류의 사실관계 확인 등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업무의 일부와 제9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업무의 위탁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라 한다)에 위탁한다. 1.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 신청 서류의 접수 및 접수된 서류의 사실관계 확인 2.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변경사항의 통지 3.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② 대한무역투자공사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탁업무의 처리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9조(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자문단) 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제1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법 제10조 및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위탁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하는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선정·취소와 관련한 제출서류의 사실 여부 2.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이 선정·취소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3. 국내복귀 진행기업의 선정조건 이행 여부 4. 국내복귀기업 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수집 및 분석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전문기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회계사, 변호사 등 국내복귀기업의 선정·취소 요건 심사 관계전문가 2. 국내복귀기업 지원정책 수립과 관련된 업종 관계전문가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11조(조세감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및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및 「관세법」이나 그 밖의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제12조(자금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에 대하여 고용창출 규모, 첨단업종 여부 및 입지지역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 및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사업장을 신설·증설하는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에 대하여 기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매입비용 및 설비투자금액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자금지원 대상 지역 등) ① 법 제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을 말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에 대하여 토지매입비용, 설비투자금액,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자금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13조(입지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를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에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제14조(인력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하여 제도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내복귀기업의 원활한 인력확보와 국내 고용창출 효과의 확대를 위하여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제15조(해외사업장의 청산 등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외진출기업의 원활한 국내복귀를 위하여 해외사업장의 청산·양도 또는 축소 등 국내복귀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동반복귀기업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동반하여 국내복귀를 하는 경우 국내고용창출 효과 및 지역경제 기여효과 등을 고려하여 공동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동종·유사 또는 연관 업종의 기업일 것			제19조(동반복귀의 기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기업에 대하여 법 제16조에 따른 동반복귀기업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법 제16조제1항제1호와 관련하여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복귀기업이「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동일한 중분류에 해당하는 경우 나. 한 기업이 다른 기업에 부품·소재 또는 용역 등을 공급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 다. 동일·유사한 원료·부품 소재 사용하거나, 동일 생산시설, 생산지원 시설 등을 사용하는 등의 이유로 인해 해당 기업들이 함께 임지하는 산업의 경우 라. 기타 유사성 및 연관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산업통상자원장관이 정하는 경우 2. 법 제16조제1항제2호와 관련하여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가. 사업장 부지의 경계선이 상호간에 접하거나 도로교통법에 따른 동일한 도로에 접하는 경우 (단, 사업장 시설물에 거리제한이 있는 경우 시설물 거리제한 경계선을 기준으로 사업장이 상호간에 접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2. 국내에 신설되거나 증설되는 사업장이 서로 인접하여 있을 것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동반복귀기업에 대한 원활한 산업단지 공급을 위하여 산업단지의 입주대상 업종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산업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단지관리기본계획에 이를 반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동내복귀기업의 원활한 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 지정권자에게 동내복귀기업을 위한 산업단지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동내복귀기업을 통한 산업집적지 구축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동내복귀기업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에 따른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에 포함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2조(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의 구성·운영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이하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라 한다)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임원 및 직원과 제2항에 따른 파견자로 구성된다. ②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임원 및 직원의 파견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업무 수행에 적합한 사람을 선발하여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에 파견하여야 하며, 파견기간 중 파견근무를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에 파견된 관계 기관의 임원 및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동일한 산업단지 또는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경우 다. 경제자유구역 등 각종 법령으로 정하는 동일한 특구·지구·구역 등에 입지하고 있으나, 공장 등 산업시설을 위한 전용 부지가 조성되지 않는 경우로써 양기업의 사업장 부지 경계선중 서로 가장 가까운 경계선간의 거리가 100미터 이내인 경우를 말한다.
제17조(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의 설치) ① 국내복귀기업과 관련된 상담·안내·홍보·조사·연구와 그 밖의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를 둔다. ②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은 국내복귀기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임원 및 직원을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에 파견근무하도록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의 구성·운영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의 구성·운영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이하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라 한다)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임원 및 직원과 제2항에 따른 파견자로 구성된다. ②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임원 및 직원의 파견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업무 수행에 적합한 사람을 선발하여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에 파견하여야 하며, 파견기간 중 파견근무를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에 파견된 관계 기관의 임원 및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제18조(별칙 적용 시 공무원 외제) 제10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9조(별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제2항에 따른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하여 부당하게 제11조에 따른 조세 감면이나 제12조에 따른 자금지원을 받은 자 2.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기업의 영업비밀과 관련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사용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사의 장이 지휘·감독한다. ④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원업무의 전년도 추진실적 및 해당 연도의 추진계획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이 정한다.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제2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과태료) ① 제9조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부과한다.	제13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태료는 1천만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 신청기한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국내복귀를 위하여 2012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6일까지의 기간에 국내사업장 신설·증설을 완료하여 선정 신청서를 제출한 기업에 대해서는 제8조제1호 단서조항의 신설규정에 따라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14조(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 간 제품의 동일성 인정범위가 적절하지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개선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록3.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 신청서류 및 작성예시

신청서류

【공통 제출서류】 : 별지 제 ①호 서식 및 관련 첨부서류

【복귀유형에 따른 제출서류】

연번	해외 사업장	유 형	제출서류
1	청산 · 양도	해외사업장 청산·양도 진행중 + 국내사업장 신·증설 진행중	별지 제⑤호 + 별지 제⑥호
2		해외사업장 청산·양도 완료 + 국내사업장 신·증설 진행중	별지 제②호 + 별지 제⑥호
3		해외사업장 청산·양도 진행중 + 국내사업장 신·증설 완료	별지 제⑤호 + 별지 제④호
4		해외사업장 청산·양도 완료 + 국내사업장 신·증설 완료	별지 제②호 + 별지 제④호
5	생산량 축소	해외사업장 생산량 축소 진행중 + 국내사업장 신·증설 진행중	별지 제⑤호 + 별지 제⑥호
6		해외사업장 생산량 축소 완료 + 국내사업장 신·증설 진행중	별지 제③호 + 별지 제⑤호
7		해외사업장 생산량 축소 진행중 + 국내사업장 신·증설 완료	별지 제⑤호 + 별지 제④호
8		해외사업장 생산량 축소 완료 + 국내사업장 신·증설 완료	별지 제③호 + 별지 제④호
9	유지	해외사업장 유지 + 국내사업장 신·증설 진행중	별지 제⑥호
10		해외사업장 유지 + 국내사업장 신·증설 완료	별지 제④호

※ 별지 제 ② · ③ · ④호 서식 제출 시 해당서식 관련 첨부서류도 함께 제출

신청서류 작성예시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신청서

※ 제9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국내 투자사업장(신설 또는 증설 사업장)을 운영할 기업(대한민국 법인 또는 국내 개인사업자)의 해당 정보를 기입합니다.			
신청 기업	기업명	(주)대한신발		법인등록번호	112XXX-XXXXXX
				사업자등록번호	123-XX-XXXXX
	업종/업태	제조업,도매업, 무역업/ 신발 및 신발부품, 섬유관련제품			
	주요제품	기능성 운동화, 등산화, 운동화 용품			
	대표자 성명	홍길동	생년월일	196X.XX.XX	
	소재지	부산시 강서구 XX로 xxx-xx		전화	051-1XX-4XXX
				팩스	051-1XX-4XXX
	홈페이지	xxxxxx.com		이메일	
신설·증설을 완료한 또는 완료할 예정인 국내사업장	사업장명	(주)대한신발			
	사업장주소 (예정지)	부산시 강서구 XX로 xxx-xx			
	신설·증설완료일 (예정일)	2015년 X월 X일			
국내 투자(예정) 사업장의 주소 및 예상 완료일을 기입합니다. ※ 부지 물색 중인 경우 ‘구체적 진행상황 기재’, 예를 들어, “세종시 첨단산업단지 2016년 5월 경 입주 예정”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정보(주요제품, 소재지, 법인등기 번호 등)를 기입합니다.					
해외 진출 기업	기업명	청도신발용품유한공사		법인등록번호	370XXXXXXXXXXXXX
				사업자등록번호	370XXXXXXXXXXXXX
	업종/업태	제조업/ 신발 및 신발부품			
	주요제품	기능성 운동화			
	대표자 성명	홍길동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6XXXXX-1XXXXXX	
	소재지	중국 청도시 XX지구 XX단지 XX로 35호		전화	86-XXXX-XXX-XXXX
				팩스	86-XXXX-XXX-XXXX
	홈페이지	xxxxx.com.cn		이메일	honggildong@xxxx.com
진출 국가에서 발급하는 사업자등록증에 준하는 서류상의 등록번호 기입합니다. (예 : 중국 세무등기증 상의 등록번호)					
해외진출기업 또는 신청기업의 실질적지배자	성명 (기업명)	홍길동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6XXXXX-1XXXXXX (112311-0123456/123-86-30123)	
	주소 (소재지)	부산시 강서구 XX로 xxx-xx		해외현지법인의 실질적 지배자 (예 : 최대주주)에 대한 인적사항을 기입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m²(재활용품)]

해외현지법인 철수 유형과
국내 복귀 유형에 따라
해당 유형에 체크합니다.

(9쪽 중 제2쪽)

	유형	해외사업장	기존 국내 사업장	지원내용
복귀 유형	[✓] 유형 1	청산·양도	보유 또는 미보유	법인세(5년 100% + 2년 50%), 관세(100%) 감면, 보조금 지원 등
	[] 유형 2	축소 또는 유지	미보유	법인세(3년 100% + 2년 50%), 관세(50%) 감면, 보조금 지원 등
	[] 유형 3	축소	보유	보조금 지원 등(법인세·관세 감면 제외)

복귀 현황	[] 국내사업장 신설·증설 완료 [✓] 국내사업장 신설·증설 미완료 [] 해외사업장 청산·양도 완료 [✓] 해외사업장 청산·양도 미완료 [] 해외사업장 생산량 축소 완료 [] 해외사업장 생산량 축소 미완료 [] 해외사업장 유지(향후 해외사업장 청산·양도·축소 계획 없음)			신청일 현재 시점의 복귀 현황에 체크합니다.
-------	---	--	--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사업장 현황	[✓] 국내사업장 보유	사업장명(상호) : (주)대한신발(본점) 사업장 업종/업태 : 제조업/신발 주소지 : 부산시 강서구 XX로 x	현재 국내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국내사업장 보유란에 체크하시고, 해당 사업장의 정보를 기입합니다. 국내 사업장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미보유에 체크합니다. ※ 국내보유 사업장이 복수인 경우, 아래 칸을 추가하여 기입합니다. ※ 국내 사업장은 해외사업장과 동일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사업장을 의미합니다.
	[] 국내 사업장 미보유		

2. 해외진출기업의 해외사업장 현황

개 요	해외진출기업의 현지사업장명	• 사업장명(상호): 청도신발용품유한공사 • 사업장 대표자명: 홍길동				해외현지법인의 주요 정보(소재지, 사업장 고용인원, 매출액, 주요 생산제품 등)를 기입
	사업장 소재지	• 국가 : 중국 • 주소 : 중국 청도시 XX지구 XX단지 XX로 35호	전화	86-XXXX-XXX-XXXX		
			팩스	86-XXXX-XXX-XXXX		
			홈페이지	xxxxxx.com.cn		
			이메일	honggildong@xxxx.com		
	• 사업장면적(㎡):5,000㎡					
	사업장 규모	• 고용인원(명):100명 • 년 평균 매출액: 25,000,000 USD ※ 해당 신고 직전 2년 평균 년 매출				해외사업장의 주요 생산제품의 한국표준산업 5자리 코드 또는 HS(수출관세코드) 코드를 기입
사업장 설치일	2000년 6월 30일					
주요 생산제품	기능성 운동화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또는 HS 코드		15219		

해외사업장의 주요 제조시설을 기입하고, 시험생산시설(테스트 제품 생산)이 있는 경우에는, 시험생산시설 부분에 도 내용을 기입합니다.(없을 시 공란)

외사업장 주요 시설	주요 제조시설	• 제조시설명: 재봉기, 재단기, 컨베이어, 검사기 • 제조품목명: 아웃도어용 운동화(등산화), 스케이트 보드화 • 생산량 규모(해당 신고연도의 직전 2년 연평균): 340만개
	주요 시험생산 시설	• 시험생산시설명: 시제품 생산용 검사기, 몰딩기 • 시험생산품목명: 스노우보드화 • 본 생산설비 구축계획: 청산 준비중으로 추가 구축계획 없음

3. 해외진출기업과 실질적지배자의 관계

해외진출기업	• 기업명: 청도대한기계유한공사 • 대표자 성명: 홍길동	해외현지법인의 기업명과 대표자 성명, 그리고 자본금 총액을 기입합니다.	자본금 총액	지분율
			50억	100%

가. 실질적지배자가
이상을 소유하는

해외진출기업의 실질적 지배자(한명 또는 다수)의 정보 기재합니다.

※ 실질적 지배자는 단독으로 또는 합산대상자(가족, 관계자, 임원 등)의 지분과 합산한 지분이 해외현지법인의 실질 소유자(예 : 최대주주)임을 의미합니다.
※ 실질적 지배자(개인 또는 법인)의 단독 지분으로 해외현지법인을 소유하지 못하는 경우에 합산대상자의 지분을 합산하게 됩니다.

지분율

해외진출기업의 실질적지배자(B)	• 성명(기업명): 홍길동 •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6XXXXX-1XXXXXX	12.5억	25%
----------------------	--	-------	-----

실질적지배자(B) 의 배우자	• 성명: 김영희 • 주민등록번호(내국인인 경우): 6XXXXX-XXXXXX • 주소: 서울 서초구 XX로 50 • 연락처: 010-1XXX-4XXX	실질적 지배자(홍길동)의 배우자(김영희)가 보유한 해외현지법인의 지분을 합산하는 경우 기입합니다.	7.5억	15%
실질적지배자(B) 의 직계존비속	• 성명: 홍명준 • 주민등록번호(내국인인 경우): 6XXXXX-XXXXXX • 주소: 서울 서초구 XX로 50 • 연락처: 010-9XXXX-XXXX	실질적 지배자(홍길동)의 직계존비속*이 보유한 해외현지법인의 지분을 합산하는 경우 기입합니다. * 직계존비속 : 본인(홍길동)의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홍명준), 아들, 딸, 손자, 손녀, 외손자, 외손녀	6.25억	12.5%
실질적지배자(B) 의 임원	• 성명: 김철수 • 주민등록번호(내국인인 경우): 6XXXXX-XXXXXX • 주소: 경기도 성남시 XX구 XX로 XX • 연락처: 010-5XXX-XXXX	실질적 지배자가 개인이 아닌 법인이며 그 법인의 임원이 보유한 해외현지법인의 지분을 합산하는 경우 기입합니다.	7.75억	15.5%
실질적지배자(B) 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기업(C)	지배 형태 • 기업명: (주)대한산업 • 사업자등록번호(국내기업인 경우): 1234567890 • 주소: 부산시 강서구 XX로 XX • 연락처: 051-3XX-XXXX	[✓] B가 배우자 등 지분합산대상자와 합산하여 30% 이상 지분소유 [] B가 C의 발행주식총수(출자총액)를 초과하는 자산대여 또는 채무보증 [] B가 C의 대표이사 임면권 또는 임원 총수의 50% 이상 임면권 보유 실질적 지배자(홍길동)가 직·간접으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관계기업이 보유한 해외현지법인의 지분을 합산하는 경우 기입합니다.	5억원	10.0%

실질적지배자(B) 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기업(D)의 임원	임원의 소속 기업(D)	- 기업명: (주)대한상시 - 사업자등록번호(국내기업인 경우): 180-8X-XXXXX - 주소: 부산시 강서구 XX로 xxx-xx - 연락처: 051-3XX-XXXX	9,25억	18.5%
	지배 형태	☒ B가 배우자 등 지분합산대상자가 합산하여 30% 이상 지분소유 ☐ B가 D의 발행주식총수(출자총액)를 초과하는 자산대여 또는 채무보증 ☐ B가 D의 대표이사 임면권 또는 임원 총수의 50% 이상 임면권 보유		
	- 성명: 김영민 - 주민등록번호(내국인 경우): 7XXXXX-1XXXXXX - 주소: 충청남도 천안시 XX로 1740-2 - 연락처: 010-6XXX-XXXX			
합계				
직전 2년간 지분변동 유무	[]유 [✓]무		직전 2년간 30% 미만 변동	해외현지법인의 최근 2년 간의 지분변동 유무에 따라 체크합니다.

나. 최대출자자 여부

실질적지배자 외 30% 이상 지분소유자	- 성명(기업명): 김철수 -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7XXXXX-1XXXXXX - 주소: 경기도 일산동구 XX로 50 - 연락처: 010-9XXX-8XXX - 출자비율(%): 30%	실질적지배자(홍길동) 외 30%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가 있을 경우 기입합니다.
-----------------------------	---	--

다. 대표자 여부

해외진출기업 대표자와 실제지배자(B)의 관계	☒ 대표자가 B 본인 ☐ 대표자가 B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 대표자가 B(기업의 경우)의 임원 ☐ 대표자가 B가 실제 소유하고 있는 기업의 임원		해외현지법인의 대표자와 실질적 지배자(홍길동)와 의 관계 중 해당되는 칸에 체크합니다.
	구체적 내용		

라. 해외진출기업의 실질적지배자와 해외진출기업 간의 자산대여·채무보증 관계

		자산대여· 채무보증 규모	출자 금액
[✓] 자산대여	- 대여 자산명: 장기차입금 - 대여 기간: 2013. 04. ~ 2015. 04.	20억	25억
[✓] 채무보증	- 채무보증 내용: 금융권 대출 보증 - 보증 기간: 2013. 04. ~ 2018. 04.	17억	

실질적지배자B(홍길동)가 해외현지법인의 자산을 대여 하였거나, 채무 보증을 한 경우 기재합니다.
※ 실질적 지배자 B의 지분이 해외현지법인의 실질적 지배자가 되는 요건에 미달될 시 기재합니다.

마. 실질적지배자가 해외진출기업의 대표 또는 총 임원의 50%를 임명한 내용

[] 임면 임원	• 성명:	김영수	해당 기업의 주요 주주와 계약에 의하여 대표이사를 임면하거나 임원의 100분의 50이상을 선임 또는 선임할 수 있는 선임권이 경우 기업합니다. ※ 실질적 지배자 B의 지분이 해외현지법인의 실질적 지배자가 되는 요건에 미달될 시 기재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6XXXXX-1XXXXXX	
	• 직위:	이사	
	• 재임기간(임기):	2015. 04. ~ 2016. 04.	
	• 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XX로 380	
	• 연락처:	010-6XXX-XXXX	

4. 신청기업(새로 설립된 법인의 경우)과 실질적지배자의 관계

신청기업	• 기업명: (주)대한신발	신청기업의 기업명과 대표자 성명 그리고 자본금 총액 기입합니다. ※ 신청기업은 투자사업장을 운영할 대한민국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를 의미 합니다.	자본금 총액	지분율 (%)
	• 대표자 성명: 홍길동		100억원	100%

가. 신청기업의
분을 소유한

신청기업의 실질적 지배자를 기입합니다.

※ 실질적 지배자는 단독으로 또는 합산대상자(가족, 관계자, 임원 등)와 합산한 지분이 신청기업의 실질 소유자임(예 : 최대주주)을 의미합니다.

※ 실질적 지배자(개인 또는 법인)의 단독 지분으로 신청기업을 소유하지 못하는 경우에 합산대상자의 지분을 합산하게 됩니다.

출자
(보유주식)
금액

지분율
(%)

신청기업의 실질적지배자(B)	• 성명(기업명): 홍길동 •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6XXXXX-1XXXXXX	28억원	28%
실질적지배자(B) 의 배우자	• 성명: 김영희 • 주민등록번호(내국인인 경우): 6XXXXX-1XXXXXX • 주소: 서울 서초구 XX로 • 연락처: 010-1XXX-4XXX	20억원	20%
실질적지배자(B) 의 직계존비속	• 성명: 홍명중 • 주민등록번호(내국인인 경우): 6XXXXX-1XXXXXX • 주소: 서울 서초구 XX로 • 연락처: 010-8XXX-XXXX	10억원	10%
실질적지배자(B) 의 임원	• 성명: 김영순 • 주민등록번호(내국인인 경우): 6XXXXX-1XXXXXX • 주소: 서울 송파구 XX로 • 연락처: 010-8XXX-XXXX	8억원	8%
실질적지배자(B) 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기업(E)	지배 형태 [✓] B가 배우자 등 지분합산 [] B가 E의 발행주식총수(출 [] B가 E의 대표이사 임면 • 기업명: (주)대한산업 • 사업자등록번호(국내기업인 경우): 180-8X-XXXXXX • 주소: 부산시 강서구 XX로 xxx-xx • 연락처: 051-3XX-XXXX	10억원	10%

(9쪽 중 제6쪽)

실질적지배자(B) 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기업(F)의 임원	임원의 소속 기업(F)	- 기업명: (주)대한상사 - 사업자등록번호(국내기업인 경우): - 주소: 부산시 강서구 XX로 xxx-xx - 연락처: 051-3XX-XXXX	실질적 지배자(개인 또는 법인)가 직·간접으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관계기업의 임원이 보유한 신청기업의 지분을 합산하는 경우 기입합니다.	
	지배 형태	☒ B가 배우자 등 지분합산대상자와 합산하여 30%이상 지분소유 ☐ B가 F의 발행주식총수(출자총액)를 초과하는 자산 대여 또는 채무 보증 ☐ B가 F의 대표이사 임면권 또는 임원 총수의 50% 이상 임면권 보유	20억	20%
	- 성명: 김영민 - 주민등록번호(내국인인 경우): 7XXXXX-1XXXXXX - 주소: 충청남도 천안시 XX로 1740-2 - 연락처: 010-6XXX-XXXX			

합계

직전 2년간 지분변동 유무	[]유 [✓]무	직전 2년 간의 지분변동 유무에 따라 체크합니다.	직전 2년간 30% 미만 변동	[]유 [✓]무
-------------------	-----------	--------------------------------	---------------------	-----------

나. 최대출자자 여부

실질적지배자 외 30% 이상 지분소유자	- 성명: 김영수 - 주민등록번호(내국인인 경우): 6XXXXX-1XXXXXX - 주소: 서울 XX구 XXXX로 15 - 연락처: 010-XXXX-XXXX - 출자비율(%): 30%	실질적 지배자 외 30% 이상 지분 보유자가 있는 경우 기입합니다.
-----------------------------	---	--

다. 대표자 여부

해외진출기업 대표자와 실질지배자(B)의 관계	☒ 대표자가 B 본인 ☐ 대표자가 B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 대표자가 B(기업)의 경우의 임원 ☐ 대표자가 B가 실제 소유하고 있는 기업의 임원	'가' 에 기입한 실질적 지배자와 대표자와의 관계를 선택합니다.
	구체적 내용	

라. 신청기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자와 해외진출기업간 자산대여·채무보증 관계

		자산대여· 채무보증 규모	출자 금액
[✓] 자산대여	- 대여 자산명: 장기차입금 - 대여 기간: 2015. 04. ~ 2017. 04. (세부내용은 별도 제출)	20억원	30억
[✓] 채무보증	- 채무 보증내용 : 금융권 대출 보증 - 보증 기간 : 2015. 04. ~ 2020. 04. (세부내용은 별도 제출)	10억원	

실질적지배자B(홍길동)가 신청기업의 자산을 대여하였거나, 채무 보증을 한 경우 기재합니다.
※ 실질적 지배자 B의 지분이 해외현지법인의 실질적 지배자가 되는 요건에 미달될 시 기재합니다.

(9쪽 중 제7쪽)

마. 신청기업의 실질적지배자가 해외진출기업의 대표 또는 총 임원의 50% 이상을 임명한 내용

[✓] 임면 임원	• 성명:	김영순	실질적 지배자 '홍길동'이 해당 기업의 주요 주주와 계약에 의하여 대표이사를 임면하거나 임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선임 또는 선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입합니다. ※ 실질적 지배자 B의 지분이 해외현지법인의 실질적 지배자가 되는 요건에 미달될 시 기재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6XXXXX-2XXXXXX	
	• 직위:	이사	
	• 재임기간(임기):	2015. 04. ~ 2016. 04.	
	• 주소:	경기도 성남시 XX로 842	
	• 연락처:	010-9XXX-XXXX	

5. 해외진출기업의 국내사업장 현황

KOTRA에 신청서를 보내주시는 날짜를 기입합니다.

국내사업장 신설·증설 개시일 관련	• 선정 신청일(국내사업장 신설·증설 미완료기업의 경우): 2015년 X월 XX일 • 국내사업장 신설·증설 완료일(국내사업장 신설·증설 완료기업의 경우): 2014년 X월 XX일	신청일 기준 국내사업장 신·증설을 완료한 경우, 준공 완료한 날짜를 기재합니다.
국내사업장 신설·증설 및 폐지 여부	[] 국내사업장 신설·증설 완료 [✓] 선정 신청일부터 과거 2년간 기존 국내사업장 신설·증설 완료 [] 국내사업장 신설·증설 완료일부터 과거 3년간 폐지	최근 3년 이내 해외사업장과 동일한 업종의 국내 제조사업장을 매각 또는 폐업, 확장 이전한 경우 또는 국내사업장의 신·증설을 완료한 경우 해당되는 칸을 선택합니다.
기존 국내사업장 현황	• 사업장명(상호): (주)대한신발(본점) • 사업장 업종/업태: 제조업/신발 및 신발 부품 제조업 • 사업장 대표자: 홍길동 • 사업장 주소: 부산시 강서구 XX로 xxx • 사업장을 폐지한 경우 폐지일: 2014.0X.XX	기존 제조 사업장(해외사업장과 동일 업종)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2쪽의 내용과 동일한 기존사업장의 내용을 기입합니다. ※ 최근 3년 이내 해외사업장과 동일 업종의 국내 제조사업장을 폐지(매각, 폐업, 이전 등)한 경우 폐지일도 기재 합니다.
실질적지배자의 연결재무제표상 매출액(총수입금액)	• 연결재무제표상의 매출액(총수입금액): 750억(13, 14년 2개년 평균)	모기업 연결재무제표상의 총 매출액 기입합니다. (최근 2개년 결산 기준)
해외진출기업의 유형자산	• 총 보유 유가증권 규모: 60.5억원 • 국내 기업관련 유가증권 규모: 48억원 • 10% 이상 지분을 소유한 국내 기업 명단: (주)대한신발, (주)대한산업, (주)대한상사	해외현지법인의 실질적 지배자(합산대상자 포함)가 10%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피투자회사의 내역을 모두 기재합니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을 신청합니다.

모든 서류(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완료한 날짜를 기입합니다.
추 후 KOTRA에서 안내 예정이므로 공란으로 두기바람.

신청인

2015년 X월 XX일

(주)대한신발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신청기업의 법인명(또는 개인사업자명) 기입 및
법인인감(또는 개인사업자 인감) 날인합니다.

첨부서류

신청인 (신고인) 제출서류	신청기업의 개요 관련 1. 신청기업 정관 2. 해외진출기업 관련 현지에 등록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에 해당하는 서류 및 정관(번역문 첨부) 3. 해외진출기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재외동포 체류 자격을 부여받은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해외진출기업의 해외사업장 현황 관련 4. 해외사업장 증명서류(기업명 및 사업장명, 사업장 소재지, 설치일, 생산제품종류 등) 5. 해외진출기업의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정관에 해당하는 증명서류 6. 해외사업장의 주요 제조시설, 주요 시험생산시설 관련서류(공장배치도, 평면도, 생산시설 설비대장, 시설목록 및 명세서 등)	
	해외진출기업과 기업의 실제소유자의 관계 관련 7. 해외진출기업의 해당 신고연도와 직전 2년간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 8. 해외진출기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 또는 법인(이하 “해외진출기업의 실질적지배자” 라 한다)의 주민등록등본(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9. 해외진출기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10. 해외진출기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대한민국 법인의 임원명부, 법인등기부등본 11. 해외진출기업의 실질적지배자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기업의 지배구조 관련 주주명부 등 소유지분을 알 수 있는 서류 12. 해외진출기업의 실질적지배자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기업의 임원명부, 법인등기부등본 13. 해외진출기업의 임원명부 14. 해외진출기업의 대표에 대한 임면권을 해외진출기업의 실질적지배자에게 부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서 15. 해외진출기업 총 임원의 50% 이상의 임면권을 해외진출기업의 실질적지배자에게 부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서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신청기업과 해외진출기업의 실질적지배자와 관계 관련 16. 신청기업의 해당 신고연도 주식변동상황명세서 17. 신청기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18. 신청기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 또는 법인(이하 “신청기업의 실질적지배자” 라 한다)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기업의 지배구조 관련 주주명단 등 소유지분을 알 수 있는 서류 19. 신청기업의 실질적지배자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기업의 임원명부 20. 신청기업의 임원명부 21. 신청기업의 대표에 대한 임면권을 신청기업의 실질적지배자에게 부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서 22. 신청기업 총 임원의 50% 이상의 임면권을 신청기업의 실질적지배자에게 부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사업장 현황 관련 23. 해외진출기업의 과거 3년간 재무제표와 부속명세서 24. 해외진출기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대한민국 법인의 과거 3년간 재무제표와 부속명세서 25. 해외진출기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대한민국 법인이 과거 3년간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명세	
	신청기업의 개요 관련 1. 신청기업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사업자등록증, 정관 2. 신청기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내국인인 경우 주민등록등본(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해외진출기업과 실질적지배자의 관계 관련 3. 해외진출기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의 주민등록등본(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4. 해외진출기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 친인척의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사업장 현황 관련 5. 해외진출기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대한민국 법인의 과거 3년간 법인세, 세무조정계산서 6. 해외진출기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대한민국 법인의 과거 3년간 법인세 관련 서류(종합소득 과세표준신고서, 법인세 세무조정계산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주)대한신발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신청기업의 법인명(또는 개인사업자명) 기입 및 법인인감(또는 개인사업자 인감) 날인합니다.

1. []칸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합니다.
2. '1. 개요'와 관련하여 대표자 성명의 경우 대표자와 실질소유자가 동일할 경우 '대표자와 동일'이라고 적습니다.
3. '1. 개요'와 관련하여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의 경우 대표자와 실질소유자가 동일할 경우 '대표자와 동일'이라고 적습니다.
4. '2. 해외진출기업의 해외사업장 현황'과 관련하여 다수의 해외사업장이 있는 경우 청산·양도 및 축소의 대상이 된 해외사업장 관련 사항을 적습니다.
5. '2. 해외진출기업의 해외사업장 현황'과 관련하여 자본금 규모는 달러로 환산하여 적습니다.
6. '2. 해외진출기업의 해외사업장 현황'과 관련하여 해외사업장을 청산한 경우에는 청산한 해외사업장에 관한 사항을 적습니다.
7. '2. 해외진출기업의 해외사업장 현황'과 관련하여 사업장 주요시설의 작성의 경우 청산·양도 시에는 가장 생산규모가 큰 생산시설을, 축소의 경우에는 축소의 대상이 된 생산시설을 적습니다.
8. '3. 해외진출기업과 실질적지배자의 관계'와 관련하여 해외진출기업 대표자와 실질적지배자(B)의 관계 중 구체적 내용 작성란에는 []에 체크한 내용에 따라 대표자와 실질적지배자(B) 간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기술합니다.
9. '4. 신청기업(새로 설립된 법인의 경우)과 해외진출기업의 실질적 지배 관계 여부'와 관련하여, 해외진출기업 대표자와 실제 소유자(B)와 관계 중 구체적 내용 작성란에는 []에 체크한 내용에 따라 대표자와 B 간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기술합니다.
10. '5.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사업장 현황'과 관련하여, 기존 국내사업장 현황란은 폐지한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 폐지한 국내사업장에 관한 사항을 작성합니다.
11. '3. 해외진출기업과 실질적지배자의 관계' 및 '4. 신청기업과 실질적지배자의 관계' 작성 시 실질적지배자의 직계존비속, 임원, 실질적지배자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기업, 실질적지배자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기업의 임원이 다수인 경우에는 해당란의 아래에 동일한 형식의 기재란을 추가하여 작성합니다.
12. '3. 해외진출기업과 실질적지배자와 관계' 및 '4. 신청기업과 실질적지배자와 관계'에서 실질적지배자(B)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기업 (C),(D),(E),(F)는 다수의 서로 다른 기업이거나 전부 또는 일부가 동일한 기업일 수 있으며, 동일한 기업에 대해서는 동일한 내용을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정	→	선정확인서 발급
신청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국내복귀기업 신청 전 청산 및 양도 완료한 기업만 본 별지 양식을 작성합니다.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법을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해외사업장 청산·양도 완료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 청산의 경우	• 청산대상 사업장명(상호): 청도신발용품유한공사 • 현지 청산 신고기관: 청도 공상관리행정국(소재국 법원)				
	청산신고기관 전화	86-XXX-XXXX-XXXX	청산신고기관 팩스	86-XXX-XXXX-XXXX	
[✓] 양도 (매각)의 경우	• 양도(매각)대상 사업장명(상호): 청도신발용품유한공사 • 양도(매각)가액: USD 450만 • 양수자(매수자): 왕진위				
	양수자(매수자) 전화	86-XXX-XXXX-XXXX	양수자(매수자) 팩스	86-XXX-XXXX-XXXX	
청산·양도 완료일	선정 신청일				(접수기관이 기재)
	국내사업장 신설·증설 완료일				(접수기관이 기재)
	[✓] 청산의 경우	청산종결 등기일			2015.XX.XX
		청산인의 최종신고일			2015.XX.XX
		조세관련 기관에 대한 폐업신고일			2015.XX.XX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청산완료일			2015.XX.XX
[✓] 양도/지분매 각의 경우	사업양수·양도 계약에 따른 매매대가 잔금수령일			2015.XX.XX	
	해외지분 매각·처분 대가 잔금수령일			2015.XX.XX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양도완료일			2015.XX.XX	

청산 완료한 경우 체크하시고 해당 내용을 기입합니다.

양도 완료한 경우 체크하시고 해당 내용을 기입합니다.

해외현지법인의 법인등기를 최종 말소한날(청산종결 등기일) 또는 사업장의 폐업신고일 등 관련 날짜를 기입합니다.

지분 매각 또는 사업장 매각의 경우, 매각 대금 최종 수령일자를 기재합니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해외사업장 청산·양도를 완료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모든 서류(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완료한 날짜를 기입합니다.
추 후 KOTRA에서 안내 예정이므로 공란으로 두기바람.

2015년 XX월 XX일

신청기업의 법인명(또는 개인사업자명) 기입 및 법인인감
(또는 개인사업자 인감) 날인합니다.

(주)대한신발(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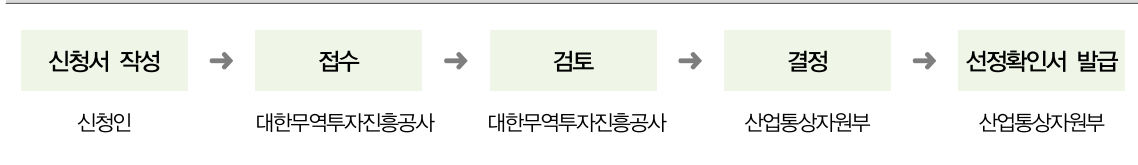
(뒤쪽)

첨부서류		
신청인(신고인) 제출서류	1. 해외사업장 소재국의 정부가 발급한 청산관련 서류(청산종결 등기 신고서·접수증, 청산인 신고서·접수증, 폐업 신고서·접수증 등) 2. 사업 양수·양도 계약서 등 증명서류 3. 사업 양수·양도 계약서에 따른 매매대가 수령완료 관련 증명서류 4. 해외법인 지분매매계약서 등 증명서류 5. 해외법인 지분매매계약서에 따른 매각대가 수령완료 관련 증명서류	수수료 없음

작성방법

1. []칸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합니다.
2. 해외사업장 청산·양도 완료 신고서는 해외사업장을 청산하거나 양도한 기업만 작성합니다.
3. 청산·양도 완료일 관련사항은 기존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 해당사항에 대해서만 작성합니다.
4. 선정 신청일과 국내 사업장 신설·증설 완료일은 접수기관이 작성합니다.

처리절차



해외사업장의 축소를 완료한 기업은 본 별지 서식을 작성합니다.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해외사업장 축소완료신고서

※ 제12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12쪽 중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	-----	------	-----

개 요

신청일시	2015 년 XX 월 XX 일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일	2015 년 XX월 XX 일

해외사업장 축소완료 신고서 제출 전 국내복귀 선정을 받은 기업의 경우, 국내복귀 선정일을 기입합니다. 아직 선정을 받지 않은 기업의 경우, 신청일에만 날짜를 기재합니다.

축소 대상 해외사업장	사업장명	청도신발용품 유한공사 제 2공장
	소재지	중국 청도시 XX지구 XX단지 XX로 35호

생산량 감축을 완료한 사업장명을 기입합니다.
회사가 복수의 사업장(제조사업장)을 보유한 경우 생산량을 감축한 1곳의 사업장의 정보만 기재합니다.

1. 생산량 축소

축소개시 직전 사업연도	제 1 기	2010. 1. 1. ~ 2010. 12. 31.
	생 산 량	23,628
축소개시 사업연도	제 2 기	2011. 1. 1. ~
	생 산 량	20,879
축소이후 사업연도	제 3 기	2012. 1. 1. ~
	생 산 량	16,687
축소이후 사업연도	제 4 기	2013. 1. 1. ~
	생 산 량	13,327
축소완료 사업연도	제 5 기	2014. 1. 1. ~ 2014. 12. 31.
	생 산 량	10,397,566,417
생산량 감소액(축소개시전-축소완료)	13,231,307,597	
생산량 감소비율(감소액/축소개시전 생산량×100)	56.00%	

생산량 축소 직전 연도(1기)부터 생산량축소를 완료한 연도까지 5개년 간의 당기 생산량을 기재합니다. 만약 3년 안에 생산량 감축을 50%이상 하였다면, 3개년만 기재합니다.
※ 생산량은 제조원가명세서상의 당기제품 제조원가금액을 기재합니다.
※ 단위는 재무제표에 표시된 사업장 소재국가의 통화로 기재합니다.

2. 연간 매출액

구분	제 1 기 (2010. 1. 1. ~ 2010. 12. 31.)	제 2 기 (2011. 1. 1. ~ 2011. 12. 31.)	제 3 기 (2012. 1. 1. ~ 2012. 12. 31.)	제 4 기 (2013. 1. 1. ~ 2013. 12. 31.)	제 5 기 (2014. 1. 1. ~ 2014. 12. 31.)
제품 판매액	28,669,990,611	22,935,992,489	18,348,793,991	14,679,0	
부산물 판매액	-	-	-	-	
임가공 매출액	-	-	-	-	
기타 매출액	1,433,499,531	1,032,119,662	1,009,183,670	689,914,004	544,000,000
소계	30,103,490,142	23,968,112,151	19,357,977,661	15,368,949,847	11,812,036,132

생산량 축소를 진행한 사업장의 제품, 부산물, 상품 등의 품목별 매출액을 기재합니다.
※ 단위는 재무제표에 표시된 사업장 소재국가의 통화로 기재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3. 연평균 종사자수

구분		제 1기 (2010. 1. 1. ~ 2010. 12.31.)	제 2기 (2011. 1. 1. ~ 2011. 12.31.)	제 3기 (2012. 1. 1. ~ 2012. 12. 31.)	제 4기 (2013. 1. 1. ~ 2013. 12. 31.)	제 45기 (2014. 1. 1. ~ 2014. 12. 31.)
제조원가	상용근로자	368	294	257	생산량 감축을 진행한 제조사업장의 제품 생산 공정에 근무하는 직원 수를 기재합니다. ※ 단위는 인원(명) 수로 기재합니다.	
	임시 및 일용근로자	126	101	90		
	기타 종사자	70	56	45		
소계		564	451	392	314	245
판매 및 일반관리비	상용근로자	15	12	10	8	7
	임시 및 일용근로자	1	1	1	생산량 감축을 진행한 제조사업장의 관리 및 판매 업무에 근무하는 직원 수(명)를 기재합니다. (예: 사무직원)	
	기타 종사자	3	2	-		
소계		19	15	11	9	7
합계		583	466	403	323	252

4. 연간 급여

구분		제 1기 (2010. 1. 1. ~ 2010. 12.31.)	제 2기 (2011. 1. 1. ~ 2011. 12.31.)	제 3기 (2012. 1. 1. ~ 2012. 12. 31.)	제 4기 (2013. 1. 1. ~ 2013. 12. 31.)	제 45기 (2014. 1. 1. ~ 2014. 12. 31.)
제조 원가	상용근로자	2,207,589,277	1,766,071,421	1,412,857,137	1,130,285,709	883,035,710
	임시 및 일용근로자	630,739,793	504,591,834	403,673,467	위의 기재한 생산량 감축을 진행한 사업장에 근무하는 공장직원과 판매 및 일반관리직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지급한 연간 급여액을 각각 기재합니다. ※ 단위는 재무제표에 표시된 사업장 소재국가의 통화로 기재합니다.	
	기타종사자	315,369,897	252,295,917	201,836,733		
소계		2,838,329,071	2,270,663,257	1,816,530,607		
판매 및 일반관리비	상용근로자	242,548,121	194,038,496	155,230,797	124,184,638	107,799,165
	임시 및 일용근로자	13,474,896	10,779,916	17,247,866	13,798,293	-
	기타 종사자	13,474,896	10,779,916	-	-	-
소계		3,094,352,088	2,475,481,669	1,989,009,270	1,591,207,418	1,243,130,837
합계		328,844,793	263,075,833	201,836,733	161,469,387	126,147,958
연간 조업월수		(12)개월				

5. 유형자산					
제 1 기 사업연도(2010. 1. 1. ~ 2010. 12. 31.)					
구분	연초잔액 (전기미상각잔액)	연간증가액 (취득및대체액포함)	연간감소액 (처분,손실및대체액포함)		
토지	1,002,959,659	-	-	-	1,002,959,659
건물	2,563,119,128	-	-	-128,155,956	2,434,963,172
건축물	390,039,867	-	-39,003,987	-70,207,176	280,828,704
기계장치	780,079,734	-	-39,003,987	-103,750,605	637,325,142
차량운반구	167,159,943	-	-16,715,994	-30,088,790	120,355,159
공구와기구	111,439,962	-	-11,143,996	-20,059,193	80,236,773
비품	445,759,848	-	-44,575,985	-80,236,773	320,947,090
기타유형자산	111,439,962	-	-11,143,996	-20,059,193	80,236,773
건설중인자산	-	-	-	-	-
합계	5,571,998,103	0	-161,587,945	-452,557,686	4,957,852,472

생산량 감축을 진행한 사업장의 토지, 건물 및 설치되어 있는 유형자산들의 연초잔액, 연말잔액, 취득액, 처분 손실액 등의 연간 장부금액의 변동내역을 기재합니다.
※ 축소직전 연도부터 완료연도까지 차례로 기재 합니다.
※ 단위는 재무제표에 표시된 사업장 소재 국가의 통화로 기재합니다.

제 2 기 사업연도(2011. 1. 1. ~ 2011. 12. 31.)

구분	연초잔액 (전기미상각잔액)	연간증가액 (취득및대체액포함)	연간감소액 (처분,손실및대체액포함)	연간감가상각비 (당기상각누계액설정액)	연말잔액 (당기미상각잔액)
토지	1,002,959,659	-	-	-	1,002,959,659
건물	2,434,963,172	-	-243,496,317	-109,573,343	2,081,893,512
건축물	280,828,704	-	-28,082,870	-50,549,167	202,196,667
기계장치	637,325,142	-	-63,732,514	-80,302,968	493,289,660
차량운반구	120,355,159	-	-12,035,516	-21,663,929	86,655,714
공구와기구	80,236,773	-	-8,023,677	-14,442,619	57,770,477
비품	320,947,090	-	-32,094,709	-57,770,476	231,081,905
기타유형자산	80,236,773	-	-8,023,677	-14,442,619	57,770,477
건설중인자산	-	-	0	-	-
합계	4,957,852,472	0	-395,489,280	-348,745,121	4,213,618,071

(12쪽 중 제4쪽)

제 3 기 사업연도(2012. 1. 1. ~ 2012. 12. 31.)

구분	연초잔액 (전기미상각잔액)	연간증가액 (취득및대체액포함)	연간감소액 (처분,손실및대체액포함)	연간감가상각비 (당기상각누계액설정액)	연말잔액 (당기미상각잔액)
토지	1,002,959,659	-	-	-	1,002,959,659
건물	2,081,893,512	-	-416,378,702	-83,275,740	1,582,239,070
구축물	202,196,667	-	-40,439,333	-32,351,467	129,405,867
기계장치	493,289,660	-	-98,657,932	-55,248,442	339,383,286
차량운반구	86,655,714	-	-17,331,143	-13,864,914	55,459,657
공구와기구	57,770,477	-	-11,554,095	-9,243,276	36,973,106
비품	231,081,905	-	-46,216,381	-36,973,105	147,892,419
기타유형자산	57,770,477	-	-11,554,095	-9,243,276	36,973,106
건설중인자산	-	-	-	-	-
합계	4,213,618,071	0	-642,131,681	-240,200,220	3,331,286,170

제 4 기 사업연도(2013. 1. 1. ~ 2013. 12. 31.)

구분	연초잔액 (전기미상각잔액)	연간증가액 (취득및대체액포함)	연간감소액 (처분,손실및대체액포함)	연간감가상각비 (당기상각누계액설정액)	연말잔액 (당기미상각잔액)
토지	1,002,959,659	-	-	-	1,002,959,659
건물	1,582,239,070	-	-316,447,814	-63,289,562	1,202,501,694
구축물	129,405,867	-	-38,821,760	-18,116,821	72,467,286
기계장치	339,383,286	-	-101,814,986	-33,259,562	204,308,738
차량운반구	55,459,657	-	-16,637,897	-7,764,352	31,057,408
공구와기구	36,973,106	-	-11,091,931	-5,176,234	20,704,941
비품	147,892,419	-	-44,367,726	-20,704,938	82,819,755
기타유형자산	36,973,106	-	-11,091,931	-5,176,234	20,704,941
건설중인자산	-	-	-	-	-
합계	4,213,618,071	0	-540,274,045	-153,487,703	2,637,524,422

제 4 기 사업연도(2014. 1. 1. ~ 2014. 12. 31.)

구분	연초잔액 (전기미상각잔액)	연간증가액 (취득및대체액포함)	연간감소액 (처분,손실및대체액포함)	연간감가상각비 (당기상각누계액설정액)	연말잔액 (당기미상각잔액)
토지	1,002,959,659	-	-	-	1,002,959,659
건물	1,202,501,694	-	-240,500,338	-48,100,068	913,901,288
구축물	72,467,286	-	-21,740,186	-10,145,420	40,581,680
기계장치	204,308,738	-	-61,292,622	-20,022,256	122,993,860
차량운반구	31,057,408	-	-9,317,222	-4,348,037	17,392,149
공구와기구	20,704,941	-	-6,211,482	-2,898,691	11,594,768
비품	82,819,755	-	-24,845,926	-11,594,766	46,379,063
기타유형자산	20,704,941	-	-6,211,482	-2,898,691	11,594,768
건설중인자산	-	-	-	-	0
합계	2,637,524,422	0	-370,119,258	-100,007,929	2,167,397,235

6. 연간 제품별 출하액 및 재고액

제 1 기 사업연도(2010. 1. 1. ~ 2010. 12. 31.)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또는 HS 코드	품목분류명	제품명	출하액	연초 재고액	연말 재고액
15219	기타 신발제조업	가죽갑피신발	15,028,774,308	2,141,680,918	1,770,231,019
15219	기타 신발제조업	가죽운동화	9,267,744,157	1,320,703,233	654,985,477
15219	기타 신발제조업	농구화	751,438,715	107,084,046	19,649,564
합계			25,047,957,180	3,569,468,197	2,444,866,060

생산량 감축을 진행한 사업장 생산제품의
연간 출하액, 연초 재고액, 연말 재고액을
기재합니다.
※ 축소직전 연도부터 완료연도까지 차례
로 기재합니다.
※ 단위는 재무제표에 표시된 사업장 소재
국가의 통화로 기재합니다.

(12쪽 중 제6쪽)

제 2 기 사업연도(2011. 1. 1. ~ 2011. 12. 31.)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또는 HS 코드	품목분류명	제품명	출하액	연초 재고액	연말 재고액
15219	기타 신발제조업	캐주얼화	12,540,579,772	1,290,231,019	1,277,328,709
15219	기타 신발제조업	스케이트보드화	7,733,357,526	795,642,462	787,686,037
15219	기타 신발제조업	스노우보드부츠	627,028,989	64,511,551	63,866,435
합계			20,900,966,287	2,150,385,032	2,128,881,181

제 3 기 사업연도(2012. 1. 1. ~ 2012. 12. 31.)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또는 HS 코드	품목분류명	제품명	출하액	연초 재고액	연말 재고액
15219	기타 신발제조업	가죽갑피신발	10,082,918,070	1,277,328,709	1,207,075,630
15219	기타 신발제조업	가죽운동화	6,217,799,477	787,686,037	744,363,305
15219	기타 신발제조업	농구화	504,145,904	63,866,435	60,353,782
합계			16,804,863,451	2,128,881,181	2,011,792,717

(12쪽 중 제7쪽)

제 4 기 사업연도(2013. 1. 1. ~ 2013. 12. 31.)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또는 HS 코드	품목분류명	제품명	출하액	연초 재고액	연말 재고액
15219	기타 신발제조업	가족갑피신발	8,032,775,124	1,207,075,630	1,170,863,361
15219	기타 신발제조업	가족운동화	4,953,544,660	744,363,305	722,032,406
15219	기타 신발제조업	농구화	401,638,756	60,353,782	58,543,168
합계			13,387,958,540	2,011,792,717	1,951,438,935

제 5 기 사업연도(2014. 1. 1. ~ 2014. 12. 31.)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또는 HS 코드	품목분류명	제품명	출하액	연초 재고액	연말 재고액
15219	기타 신발제조업	가족갑피신발	6,273,665,752	1,170,863,361	1,135,737,460
15219	기타 신발제조업	가족운동화	3,868,760,547	722,032,406	700,371,434
15219	기타 신발제조업	농구화	313,683,288	58,543,168	56,786,873
합계			10,456,109,587	1,951,438,935	1,892,895,767

7. 재고액

제 1 기 사업연도(2010. 1. 1. ~ 2010. 12. 31.)

구분	연초재고액	연말재고액
제품	3,569,468,196	2,150,385,032
반제품	356,946,820	258,046,203,84
재공품	356,946,819	2,620,385,032
원재료 및 보조재료	2,236,259,268	1,863,549,389,72
저장품	178,473,410	150,526,952
소계	6,698,094,512	7,042,892,610
상품	142,778,728	129,023,102
합계	6,840,873,240	7,171,915,712

생산량 감축을 진행한 사업장의 재고자산별 연초재고액, 연말재고액의 장부금액을 기재합니다.

※ 축소직전 연도부터 완료연도까지 차례로 기재합니다.

※ 단위는 재무제표에 표시된 사업장 소재 국가의 통화로 기재합니다.

제 2 기 사업연도(2011. 1. 1. ~ 2011. 12. 31.)

구분	연초재고액	연말재고액
제품	2,150,385,032	2,128,881,182
반제품	215,038,503	255,465,741,80
재공품	2,620,385,032	2,358,346,529
원재료 및 보조재료	1,789,007,414	1,490,839,512
저장품	107,519,252	149,021,683
소계	6,882,335,233	6,382,554,647
상품	86,015,401	127,732,871
합계	6,968,350,634	6,510,287,518

제 3 기 사업연도(2012. 1. 1. ~ 2012. 12. 31.)

구분	연초재고액	연말재고액
제품	2,128,881,182	2,011,792,717
반제품	212,888,118	241,415,126,00
재공품	2,358,346,529	2,122,511,876
원재료 및 보조재료	1,431,205,931	1,192,671,609,42
저장품	106,444,059	140,825,490
소계	6,237,765,819	5,709,216,818
상품	85,155,247	120,707,563
합계	6,322,921,066	5,829,924,381

(12쪽 중 제9쪽)

제 4 기 사업연도(2013. 1. 1. ~ 2013. 12. 31.)

구분	연초재고액	연말재고액
제품	2,011,792,717	1,951,438,935
반제품	201,179,272	234,172,672,22
재공품	2,122,511,876	1,910,260,688
원재료 및 보조재료	1,144,964,745	954,137,288
저장품	100,589,636	136,600,725
소계	5,581,038,245	5,186,610,309
상품	80,471,709	117,086,336
합계	5,661,509,954	5,303,696,645

제 5 기 사업연도(2014. 1. 1. ~ 2014. 12. 31.)

구분	연초재고액	연말재고액
제품	1,951,438,935	1,892,895,767
반제품	195,143,894	227,147,492,06
재공품	1,910,260,688	1,834,269,522
원재료 및 보조재료	894,503,707	745,419,756
저장품	97,571,947	132,502,704
소계	5,048,919,171	4,832,235,241
상품	78,057,557	113,573,746
합계	5,126,976,728	4,945,808,987

8. 연간 제조원가 명세서

생산량 감축을 진행한 사업장의 제품
제조원가 명세서 상의 금액을 기재합니다.
※ 축소직전 연도부터 완료연도까지
차레로 기재합니다.
※ 단위는 재무제표에 표시된 사업장 소재
국가의 통화로 기재합니다.

구분		제 1 기 (2010.1. ~ 2010.12.)	제 2 기 (2011.1. ~ 2011.12.)	제 3 기 (2012.1. ~ 2012.12.)		
원(부·보조) 재료비		18,635,493,897	14,908,395,118	11,926,716,094	9,541,372,875	7,454,197,559
노무비		3,153,698,967	2,522,959,174	2,018,367,339	1,614,693,871	1,261,479,587
경비	합계	1,476,518,563	1,181,214,852	944,971,882	755,977,509	590,607,424
	복리후생비	180,620,941	144,496,753	115,597,402	92,477,922	72,248,376
	여비·교통비	166,285,946	133,028,756	106,423,005	85,138,404	66,514,378
	접대비	8,600,997	6,880,798	5,504,638	4,403,711	3,440,399
	통신비	14,048	11,239	8,991	7,193	5,619
	수도광열비	252,295,917	201,836,734	161,469,387	129,175,510	100,918,367
	전력비	169,152,945	135,322,356	108,257,885	86,606,308	67,661,178
	세금·공과금	378,443,876	302,755,101	242,204,081	193,763,265	151,377,550
	감가상각비	246,561,919	197,249,535	157,799,628	126,239,703	98,624,768
	지급임차료	20,068,993	16,055,195	12,844,156	10,275,325	8,027,597
	보험료	11,467,996	9,174,397	7,339,518	5,871,614	4,587,198
	차량유지비	2,866,999	2,293,599	1,834,879	1,467,904	1,146,800
	운반비	8,600,997	6,880,798	5,504,638	4,403,711	3,440,399
	교육훈련비	11,467,996	9,174,397	7,339,518	5,871,614	4,587,198
	소모품비	5,733,998	4,587,198	3,669,759	2,935,807	2,293,599
	지급수수료	5,733,998	4,587,198	3,669,759	2,935,807	2,293,599
	기타비용	8,600,997	6,880,798	5,504,638	4,403,711	3,440,399
외주가공비		3,162,299,964	2,529,839,972	2,023,871,977	1,619,097,582	1,264,919,986
당기총제조비용		26,428,011,391	21,142,409,116	16,913,927,292	13,531,141,837	10,571,204,556
기초재공품재고액		356,946,819	2,620,385,032	2,358,346,528	2,122,511,876	1,910,260,688
합계		26,784,958,210	23,762,794,148	19,272,273,820	15,653,653,713	12,481,465,244
기말재공품재고액		2,620,385,032	2,358,346,528	2,122,511,876	1,910,260,688	1,834,269,522
타계정대체액		535,699,164	524,985,180.97	461,986,959	415,788,263.32	249,629,305
당기제품제조원가		23,628,874,014	20,879,462,439. 03	16,687,774,985	13,327,604,761	10,397,566,417
전기대비제조원가증감액		—	-2,749,411,574. 97	-4,191,687,454. 03	-3,360,170,224	-2,930,038,344
증감비율		—	-11.64%	-20.08%	-20.14%	-21.98%

생산량 감축을 진행한 사업장의 제품 및 상품의 판매 및 일반관리비 금액을 기재합니다.

※ 축소직전 연도부터 완료연도까지 차례로 기재합니다.

※ 단위는 재무제표에 표시된 사업장 소재 국가의 통화로 기재합니다.

9. 연간 판매 및 일반관리비 명세서					
구분	제 1 기 (2010.1.~ 2010.12.)	제 2 기 (2011.1. ~ 2011.12.)	제 3 기 (2012.1. ~ 2012.12.)		
급여	269,497,912	215,598,329	172,478,664	137,982,931	107,799,165
퇴직급여	7,167,498	5,733,998	4,587,198	3,669,759	2,866,999
복리후생비	573,399,812	458,719,850	366,975,880	293,580,704	229,359,925
여비·교통비	5,733,998	4,587,198	3,669,759	2,935,807	2,293,599
접대비	8,600,997	6,880,798	5,504,638	4,403,711	3,440,399
통신비	20,068,993	16,055,195	12,844,156	10,275,325	8,027,597
수도광열비	11,467,996	9,174,397	7,339,518	5,871,614	4,587,198
전력비	5,733,998	4,587,198	3,669,759	2,935,807	2,293,599
세금·공과금	7,167,498	5,733,998	4,587,198	3,669,759	2,866,999
감가상각비	5,733,998	4,587,198	3,669,759	2,935,807	2,293,599
지급임차료	7,167,498	5,733,998	4,587,198	3,669,759	2,866,999
보험료	5,733,998	4,587,198	3,669,759	2,935,807	2,293,599
차량유지비	5,733,998	4,587,198	3,669,759	2,935,807	2,293,599
경상연구개발비	11,467,996	9,174,397	7,339,518	5,871,614	4,587,198
운반비	20,068,993	16,055,195	12,844,156	10,275,325	8,027,597
교육훈련비	5,733,998	4,587,198	3,669,759	2,935,807	2,293,599
소모품비	2,866,999	2,293,599	1,834,879	1,467,904	1,146,800
지급수수료	5,733,998	4,587,198	3,669,759	2,935,807	2,293,599
광고선전비	5,733,998	4,587,198	3,669,759	2,935,807	2,293,599
대손상각비	11,467,996	9,174,397	7,339,518	5,871,614	4,587,198
판매보증비	5,733,998	4,587,198	3,669,759	2,935,807	2,293,599
무형자산상각비	2,866,999	2,293,599	1,834,879	1,467,904	1,146,800
기타비용	5,733,998	4,587,198	3,669,759	2,935,807	2,293,599
소계	1,010,617,167	808,493,730	646,794,990	517,435,993	404,246,864
전기대비 증감액	-	-202,123,437	-161,698,740	-129,358,997	-113,189,129
증감비율	-	-20.00%	-20.00%	-20.00%	-21.88%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해외사업장 축소를 완료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모든 서류(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완료한 날짜를 기입합니다.
추 후 KOTRA에서 안내 예정이므로 공란으로 두기바람.

2015년 XX월 XX일

신청기업의 법인명(또는 개인사업자명) 기입 및
법인인감(또는 개인사업자 인감) 날인합니다.

주식회사 대한신발(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신청인(신고인) 제출서류	해외사업장 축소개시 직전연도부터 완료연도까지의 재무제표와 부속명세서	수수료 없음
------------------	---------------------------------------	-----------

작성방법

1. []칸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합니다.
2. '1. 생산량 축소'와 관련하여 축소개시 직전 사업연도부터 축소완료 사업연도까지 순차적으로 사업연도의 생산량을 적습니다.
3. '1. 생산량 축소'와 관련하여 축소개시 직전 사업연도 생산량은 축소개시일전 1년 동안 생산한 생산량을 적습니다.
4. '1. 생산량 축소'와 관련하여 생산량은 '8. 연간제조원가명세서'의 당기제품 제조원가 금액을 기입합니다.
5. '2. 연간 매출액'과 관련하여 다수의 해외사업장이 있는 경우 전사업장과 축소의 대상이 된 해외사업장 관련 사항을 각각 적습니다.
6. '3. 연평균 종사자수'부터 '9. 연간 판매 및 일반관리비 명세서'까지 내용의 작성과 관련하여 다수의 해외사업장이 있는 경우 전사업장과 축소의 대상이 된 해외사업장 관련 사항을 각각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정	→	선정확인서 발급
신청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법을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국내복귀기업 신청 시 국내사업장의
준공 완료한 기업만 본 서식을 작성 합니다.

국내사업장 신설·증설 완료신고서

※ 제3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3쪽 중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	-----	------	-----

개 요	국내 신설·증설 사업장명	• 사업장명(상호): (주)대한신발 부산 제 2공장 • 사업장 대표자: 홍길동 • 사업자등록번호: 123-XX-XXXXX			준공 완료 사업장 정보를 기입합니다.
	사업장 소재지	주소: 부산시 강서구 XX로 xxx-xx	전화	051-XXX-XXXX	
		홈페이지	xxxxxxx.com	팩스	
	사업장 규모	• 사업장 부지면적(㎡): 5,000㎡ • 공장 건축면적(㎡): 3,000㎡ • 고용인원(명): 60 명 • 신고 전년부터 2년간 평균 매출액(원): 올해 준공하여 매출집계 불가, 현 조업 5개월 경과 기준 120억 추정			

주요 생산제품	구분	업종/업태	주요 생산제품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또는 HS 코드
	해외사업장	제조업/신발 및 신발 부품	기능성	해외사업장 및 국내사업장 업태/업종, 주요 생산품 및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5자리를 기입합니다.
	국내사업장	제조업/신발 및 신발 부품	기능성	

공장건축물 신설·증설 현황	[✓] 공장건축물 신축	• 건축물 주소: 부산시 강서구 XX로 xxx-xx • 건축면적: 5,000㎡ • 건축연면적: 6,000㎡ • 시공사명: XX건설 • 신축기간: 2014. 03. ~ 2015. 03. • 신축허가청(신고청)명: 부산시청	신축, 증축, 매입, 임차, 용도변경 중 귀사가 준공 완료한 사업장에 해당하는 부분의 정보를 기입합니다. 예 : 신축인 경우→신축 부분 기재 임차한 건물의 경우→임차 부분 기재
	[✓] 공장건축물 증축	• 건축물 주소: 부산시 강서구 XX로 xxx-xx • 건축면적 변경: (변경전) 3,000㎡ → (변경후) 5,000㎡ • 건축연면적 변경: (변경전) 3,000㎡ → (변경후) 5,000㎡ • 시공사명: XX건설 • 증축기간: 2014. 03. ~ 2015. 03. • 증축허가청(신고청)명: 부산시청	
	[✓] 공장건축물 매입	• 매입 건축물 주소: 부산시 강서구 XX로 xxx-xx • 매입 건축물 건축면적: 3,000㎡ • 매입 건축물 연면적: 4,000㎡ • 매입 대상자: 김영수 • 매입 가격: 부산시청	
	[✓] 공장건축물 임차	• 임차 건축물 주소: 부산시 강서구 XX로 xxx-xx • 임차 건축물 건축면적: 3,000㎡ • 임차 건축물 연면적: 3,000㎡ • 임차 대상자: 김영수 • 임차 가격: XXX만원 • 임차 기간: 2015. 04. ~ 2016. 03.	
	[✓] 기존건축물 용도변경	• 건축물 주소: 부산시 강서구 XX로 xxx-xx • 용도변경 내용: (기존용도) 창고 → (변경용도) 공장 • 용도변경 면적: 3,000㎡ • 허가청(신고청): 부산시청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3쪽 중 제2쪽)

생산시설의 매입 또는 임차 현황	생산시설 매입의 경우	시설명	용도	매입처 및 연락처	매입가액	설치일 (신규매입의 경우)
		XXX기계	재봉	XX기계	10억	2015. XX. XX
		XXX기계	재단	XX기계	15억	2015. XX. XX
	생산시설 임차의 경우	시설명	용도	임차처 및 연락처	임차가액	임차기간
		XXX기계	건조기	XXX기계	1억	2015.XX.XX.~ 2016.XX.XX.
XXX기계		교환기	XXX기계			

* 생산시설을 매입하여 설치한 경우
→ 매입 부분에 주요 생산시설 기재
* 임차한 경우
→ 임차 부분에 주요 임차 생산시설 기재
※ 기존 사업장에서 이전한 설비 기재불요

선정 신청일	선정 신청일 및 신설·증설 완료일										
신축·증축 공장건축물의 사용승인일	• 승인일: 2015. XX. XX. • 허가청: 부산시청 • 허가청 담당자 및 연락처: 김철수 053-XXX-XXXX										
공장건축물의 용도변경 허가서 (신고확인증) 발급일	• 허가서(신고확인증) 발급일: 2015. XX. XX. • 발급청: 부산시청 • 발급청 담당자 및 연락처: 김철수 053-XXX-XXXX										
제조시설 설치완료 신고일	• 신고일: 2015. XX. XX. • 신고청: 부산시청 • 신고청 담당자 및 연락처 : 김철수 063-XXX-XXXX										
제조시설 또는 시험생산시설 설치일 (공장건축 면적이 500㎡ 미만인 경우)	<table border="1"> <thead> <tr> <th>시설명</th> <th>설치일</th> </tr> </thead> <tbody> <tr> <td>XX기계</td> <td>2015.XX.XX.</td> </tr> <tr> <td>XXX기계</td> <td>2015.XX.XX.</td> </tr> <tr> <td></td> <td></td> </tr> <tr> <td></td> <td></td> </tr> </tbody> </table>	시설명	설치일	XX기계	2015.XX.XX.	XXX기계	2015.XX.XX.				
시설명	설치일										
XX기계	2015.XX.XX.										
XXX기계	2015.XX.XX.										

공장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사용승인일, 허가청, 담당자 및 연락처 기입합니다.

공장건축물에 대해 용도변경을 하였을 경우 허가서 발급일, 발급청, 담당자 및 연락처 기입합니다.

공장등록증 상의 제조시설 설치 완료일 기입합니다.

공장건축면적이 500㎡ 미만인 사업장에서 제조시설 또는 시험생산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만 기입합니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국내사업장 신설·증설을 완료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모든 서류(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완료한 날짜를 기입합니다.
추 후 KOTRA에서 안내 예정이므로 공란으로 두기바람.

2015년 XX월 XX일

대한신발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신청기업의 법인명(또는 개인사업자명) 기입 및
법인인감(또는 개인사업자 인감) 날인합니다.

첨부서류		
신청인(신고인) 제출서류	1. 국내 신설·증설 사업장의 주요 생산제품 명세 2. 건축물 신축, 공장건축면적 확대 및 용도변경 허가신청(신고)에 대하여 담당청이 발급한 허가서(신고확인증) 3. 신축·증축한 건물에 대하여 담당청이 발급한 사용승인서 4. 추가 설치한 생산시설 관련 서류(제조시설명세서 등) 5. 건축물의 신설·증설과 관련한 공장건축물 매입계약서 또는 임차계약서 6. 시설 설치와 관련한 생산시설 매입계약서 또는 임차계약서	수수료 없음
작성방법		

1. []칸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합니다.
2. 생산시설의 매입 또는 임차 현황과 관련, 생산시설 매입의 경우 설치일은 생산시설을 신규 매입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기존 시설을 매입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정	→	선정확인서 발급
신청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법을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해외사업장의 철수 진행 중 기업이 작성하는 서식으로서 복귀 계획서란에 체크하고, 국내복귀이행 결과신고서에는 추후 해외사업장의 철수를 완료 하였을 때 체크합니다.
오른쪽 회색칸은 공란으로 두시고, 해외사업장 철수 완료시 국내복귀 이행결과신고서에 체크하시고, 회색 공란부분 기입 후 제출 하십시오.
※ 해외사업장 유지 기업(기존국내사업장 미보유 기업)은 본 서식 작성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해외사업장의 청산·양도 또는 축소 관련 [] 국내복귀계획 이행결과신고서

(4쪽중 제4쪽)

해외사업장 청산·양도의 경우		
구 분	국내복귀계획	계획 이행결과 신고내용
청산·양도 완료일	[✓] 청산의 경우 청산일 : 2018. 12월 현지 세무국에 사업자등록종 폐업 신고중이며 2018년 12월 경 청산 종결 예정	해외사업장 청산 예정인 경우 체크하고 예상 청산일 기입 합니다. ※ 최대한 현재 진행 중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 양도/지분 매각의 경우 양도일/지분매각일 : 2016. 5월 2015년 3월 매수자로부터 최초 선금 수령 후 등기 변경 절차를 진행 중이며 2016년 5월 잔금 수령 후 양도 절차 완료예정 (또는 매수자와 양도가 등 제반사항에 대해 협의 중이며 2016년 5월 양도 완료 예정)	해외사업장 양도 및 법인 지분양도 예정인 경우 체크하고 예상 양도/매각일 기입합니다. ※ 최대한 현재 진행 중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선정 신청일 (접수기관이 기재)	해외지분 매각·차분 대가 잔금수령일
	국내 사업장 신설·중설 완료일 (접수기관이 기재)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청산완료일 (청산내용)

297mm×210mm(백상지 80g/㎡(재활용품))

(4쪽중 제2쪽)

구분		국내복귀계획	계획 이행결과 신고내용
[✓] 청산의 경우	청산대상 사업장명	청도신발용품유한공사	해외법인 청산 예정인 경우 대상 사업장, 신고 기관명 및 신고기관 연락처 기입합니다.
	현지 청산 신고기관 기관명	신동성 공상관리행정국	
	현지 청산 신고기관 연락처 (전화, 팩스)	86-123-XXXX-XXXX(전화) 86-564-XXXX-XXXX(팩스)	
[✓] 사업 양수·양도의 경우	양도대상 사업장명	청도신발용품유한공사	사업장 양도(매각) 예정인 경우 대상 사업장, 양도가액, 양수자 및 연락처 기입합니다.
	양도가액	USD 150만	
	양수자	왕진위(중국인)	
	양수자 연락처 (전화, 팩스)	86-130-XXX-XXX(전화) 86-130-XXX-XXX(팩스)	
[✓] 지분 매도의 경우	지분 매도대상 기업 (사업장명)	청도신발용품유한공사	해외법인 지분양도 예정인 경우 대상 법인, 양도가액, 양수자 및 연락처 기입합니다.
	매도 지분	100%	
	매도 후 보유지분	0%	
	매도가액	USD 450만	
	매수자	왕진위(중국인)	
	매수자 연락처 (전화, 팩스)	86-130-XXX-XXX(전화) 86-130-XXX-XXX(팩스)	

(4쪽 중 제3쪽)

해외사업장 축소의 경우			
국내복귀계획		계획 이행결과 신고내용	
축소 대상 해외사업장	사업장명 소재지	청도신발용품유한공사 중국 산둥성 청도시 XXX XXX XXXX	해외사업장 축소의 경우, 계획하고 있는 축소 개시(시작)년도 생산량과 축소완료년도 생산량 단위(개)를 기입합니다. ※ 생산량 감축요건은 축소 시작년도 전 연도의 생산량과 축소를 완료한 연도의 생산량을 비교하였을 때, 50% 이상 감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축소개시 사업연도	(제15기)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축소개시 전 사업연도의 생산량	(기) 20년 월 일부터 20년 월 일까지 축소개시 전 사업연도의 생산량
축소완료 사업연도	(제16기)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축소완료 사업연도의 생산량	(기) 20년 월 일부터 20년 월 일까지 축소완료 사업연도의 생산량
신청 신청일	(접수기관이 기재)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4호에 따른 해외사업장의 청산·양도 또는 축소 관련 [] 국내복귀계획서, 법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호의 [] 국내복귀계획 이행결과신고서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모든 서류(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완료한 날짜를 기입합니다. ※ 추 후 KOTRA에서 안내 예정이므로 공란으로 두기바람. 2015년 XX월 XX일 신청인(신고인) 신청기업의 법인명(또는 개인사업자명) 기입 및 법인인감(또는 개인사업자 인감) 날인합니다. 대한신발(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4쪽중 제4쪽)

첨부서류	
신청인(신고인) 제출서류	국내복귀계획 이행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내사업장이 없는 기업의 경우 서류제출 생략이 가능합니다 해외사업장 청산·양도의 경우 1. 해외사업장 소재국 정부가 발급한 청산 관련 서류(청산종결등기 신고서·접수증, 청산인 신고서·접수증, 폐업 신고서·접수증 등) 2. 사업 양수·양도 계약서 등 증명서류 3. 사업 양수·양도 계약서에 따른 매대대가 수령완료 관련 증명서류 4. 해외법인 지분매매계약서 등 증명서류 5. 해외법인 지분매매계약서에 따른 매각대가 수령완료 관련 증명서류 해외사업장 축소의 경우 1. 해외사업장 축소개시연도부터 완료연도까지의 재무제표와 부속명세서 2. 별지 제3호서식의 해외사업장 축소완료신고서

수수료
없음

작성방법

1. [] 칸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합니다.
2. '국내복귀계획서'는 서식의 음영처리되지 않은 난을 '국내복귀계획 이행결과신고서'는 서식의 음영 부분을 작성합니다. 다만, 국내복귀계획 관련 '신청 신청일'과 '국내 사업장 신설·증설 완료일'은 접수기관 기재사항으로 신청인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3. 해외사업장 청산·양도의 경우 청산·양도 완료일은 기존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정	→	신청확인서 발급
신청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국내사업장의 신설·증설 관련

국내 신설 또는 증설 사업장의 투자를 진행 중 기업이 작성하는 서식으로서 신·증설 계획서 란에 체크하고, 국내복귀이행 결과 신고서 란에는 추후 국내사업장의 투자를(준공 후 공장등록) 완료 하였을 때 체크합니다.
* 오른쪽 회색 칸은 공란 으로 두시고, 국내사업장 투자 완료시 국내복귀 이행결과신고서 란에 체크하시고 회색 공란 부분 기입 후 제출 하여야 합니다.

[] 국내복귀계획 이행결과신고서

구 분		국내복귀계획		계획 이행결과 신고내용			
사업장	사업지등록번호 (업체/업종)	주요 생산품 (생산품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또는 HS 코드	사업지등록번호 (업체/업종)	주요 생산품 (생산품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또는 HS 코드	
주요 생산제품	해외사업장	370XXXXXXX (제조업/제광용품)	기능성 운동화	15219			
	국내사업장	123-XX-XXXX (제조업/제광용품)	기능성 운동화	15219			
공장건축물 신설·증설 계획	구 분		국내복귀계획		계획 이행결과 신고내용		
	[✓] 공장건축물 신축	건축물 주소	부산시 강서구 XX로 xxx-xx				
		건축면적	X,XXX.XX㎡				
		건축연면적	X,XXX.XX㎡				
		시공사명	(주)XXXX건설				
		신축기간	201X년 X월~201X년 X월				
	[✓] 공장건축물 증축	신축하기전(신고청)	부산시청 XXXX과				
		건축물 주소	부산시 강서구 XX로 xxx-xx				
		변경 전 건축면적	X,XXX.XX㎡				
		변경 후 건축면적	X,XXX.XX㎡				
		변경 전 건축연면적	X,XXX.XX㎡				
	[✓] 기존 건축물 용도변경	변경 후 건축연면적	X,XXX.XX㎡				
		시공사명	(주)XXXX건설				
		신축기간	201X년 X월~201X년 X월				
		신축하기전(신고청)	201X년 X월~201X년 X월				
건축물 주소		부산시 강서구 XX로 xxx-xx					
변경 전 용도변경 내용		공동주택					
변경 후 용도변경 내용		공장					
변경 전 용도변경 면적		X,XXX.XX㎡					
변경 후 용도변경 면적		X,XXX.XX㎡					
허가청(신고청)		부산시청 XXXX과					

계획하고 있는 국내 투자
사업장의 투자유형 중 해당
되는 유형에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장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이 부분에 기입합니다.

공장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
이 부분에 기입합니다.

기존 건축물을 용도변경 하는
경우 이 부분에 기입합니다.

(5쪽중 제2쪽)

구분		국내복귀계획		계획 이행결과 신고내용			
[✓] 공장건축물 매입	매입건축물 주소	부산시 강서구 XX로 xxx-xx		공장 건축물을 매입한 경우 이 부분에 기입합니다.			
	매입건축물 건축면적	X,XXX.XX㎡					
	매입건축물 건축연면적	X,XXX.XX㎡					
	매입가격	20억					
	매도자 (주소 및 연락처)	김철수 (부산시 XX면 981-2/010-1234-5678)					
[✓] 공장건축물 임차	임차건축물 주소	부산시 강서구 XX로 xxx-xx		공장 건축물을 임차한 경우 이 부분에 기입합니다.			
	임차건축물 건축면적	X,XXX.XX㎡					
	임차건축물 건축연면적	X,XXX.XX㎡					
	임차가격	500만원					
	임차기간	201X. 08 ~ 201X. 07					
향후 설치할 계획이 있는 제조시설 또는 시험 생산시설을 기입합니다. ※ 이 칸은 추후 해외로부터 수입하는 설비 에 대해 관세감면 혜택을 신청할 때 기입 해야 하는 칸 이므로 설비를 수입할 계획 이 있다면 이 칸에 기재 합니다.		임대자 (주소 및 연락처)	김영수 (부산시 XX면 981-2/010-1234-5678)				
		국내복귀계획		계획 이행결과 신고내용			
[✓] 제조시설	시설명	용도	시설명	용도	구입처(임차처) 및 연락처	구입(임차) 금액	설치일(임차일)
	컨베이어	물품운반	향후 설치할 계획이 있는 제조시설 기입합니다. ※ 4개 이상의 제조시설을 설치 및 수입할 예정인 경우 밑으로 칸을 추가하여 기입 가능합니다.				
	재단기	원단 재단					
	재봉기	재봉					
	물당기	고열 성형					
[✓] 시험생산 시설	시설명	용도	시설명	용도	구입처(임차처) 및 연락처	구입(임차) 금액	설치일(임차일)
	검사기	제품 테스트	R&D 투자 등 제품 테스트에서 시제품 생산목적으로 설비를 설치한 경우 기재합니다.				

(5쪽중 제3쪽)

구분	국내복귀계획	계획 이행결과 신고내용																
기존 국내 국내사업장 폐지 관련	• 사업장명: (주)대한신발(본점) • 사업장 업종: 신발 및 신발부품 제조 • 사업장 책임자: 홍길동 • 사업장 주소: 부산시 강서구 XX로 xxx-xx	기존사업장을 폐지 또는 폐지할 예정인 경우(확장이전) 기재합니다. 폐지란, 사업장의 양도, 매각, 휴업 등을 포함합니다. • 사업장 주소:																
	• 사업장을 폐지(할 예정인) 경우 폐지일(폐지예정일): 2014.12.10 • 폐지의 형태: [✓] 매각, [] 양도, [] 시설물 폐기, [] 1년 이상 영업중지, 매각후 본점의 확장이전 • 매각액: 50억 • 고용인원: 60명	• 사업장을 폐지한 경우 폐지일: • 폐지의 형태: [] 매각, [] 양도, [] 시설물 폐기, [] 1년 이상 영업중지 • 매각액: • 고용인원:																
신설·중설 국내사업장	• 사업장명: (주)대한신발 (본점 확장이전) • 주소: 부산시 강서구 XX로 xxx-xx • 투자액: 120억(토지 50억, 설비 70억) • 고용규모: 70명(신규)	신·중설할 국내 사업장의 정보를 기입합니다. 투자액 및 고용규모가 확실하지 않을 경우 회사 내부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수치를 기재합니다. ※ 추후 금액, 인원 변경 등이 있을 때 언제든지 변경수리 가능합니다. • 사업장명: • 고용규모:																
신설·중설 완료일	구 분	계획 이행결과 신고내용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th>국내복귀계획</th><th>계획 이행결과 신고내용</th></tr> </thead> <tbody> <tr> <td rowspan="3">[✓] 신축·중축 건축물의 사용승인일</td><td>승인일</td><td>2016년 X월</td></tr> <tr> <td>허가청명</td><td>부산시청</td></tr> <tr> <td>허가청 담당자 및 연락처</td><td>부산시청 XXX과 김영수 XXX-XXX-XXXX</td></tr> <tr> <td rowspan="3">[✓] 건축물의 용도변경 허가서(신고확인서) 발급일</td><td>허가서(신고확인서) 발급일</td><td>2016년 X월</td></tr> <tr> <td>발급청명</td><td>부산시청</td></tr> <tr> <td>발급청 담당자 및 연락처</td><td>부산시청 XXX과 김영수 XXX-XXX-XXXX</td></tr> </tbody> </table>	구 분	국내복귀계획	계획 이행결과 신고내용	[✓] 신축·중축 건축물의 사용승인일	승인일	2016년 X월	허가청명	부산시청	허가청 담당자 및 연락처	부산시청 XXX과 김영수 XXX-XXX-XXXX	[✓] 건축물의 용도변경 허가서(신고확인서) 발급일	허가서(신고확인서) 발급일	2016년 X월	발급청명	부산시청	발급청 담당자 및 연락처	부산시청 XXX과 김영수 XXX-XXX-XXXX
구 분	국내복귀계획	계획 이행결과 신고내용																
[✓] 신축·중축 건축물의 사용승인일	승인일	2016년 X월																
	허가청명	부산시청																
	허가청 담당자 및 연락처	부산시청 XXX과 김영수 XXX-XXX-XXXX																
[✓] 건축물의 용도변경 허가서(신고확인서) 발급일	허가서(신고확인서) 발급일	2016년 X월																
	발급청명	부산시청																
	발급청 담당자 및 연락처	부산시청 XXX과 김영수 XXX-XXX-XXXX																

(5쪽중 제4쪽)

[✓] 제조시설설치 완료 신고일 (공장건축면적 500㎡ 이상인 경우)	신고일	2016년 X월	제조시설설치완료 예상일, 신고청명 및 담당자 연락처 기입합니다.	
	신고청명	부산시청		
[✓] 시험생산시설 설치일 (공장건축면적 500㎡ 이상인 경우)	신고청 담당자 및 연락처	부산시청 XXX과 김영수 XXX-XXX-XXXX		
		시설명	설치일	시설일
		재봉기	2016년 X월	시험생산시설 설치예정인 경우, 설치할 시설명과 설치예정일 기입합니다.
		검사기	2016년 X월	
선정 신청일		2015년 XX월 XX일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5호에 따른 국내사업장의 신설·증설 관련 []국 내복귀계획서, 법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호에 따른 []국내복귀계획 이행결과신고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모든 서류(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완료한 날짜를 기입합니다.
추 후 KOTRA에서 안내 예정이므로 공란으로 두기바람.

2015년 XX월 XX일

신청인(신고인)

귀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대한신발 (서명 또는 인)

신청기업의 법인명(또는 개인사업자명) 기입 및
법인인감(또는 개인사업자 인감) 날인합니다.



첨부서류	
신청인(신고인) 제출서류	국내사업장의 신설·증설 관련 국내복구계획 이행결과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 국내 신설·증설 사업장의 주요 생산제품내역 2. 간축물 신축, 공장간축면적 확대 및 용도변경 허가신청(신고)에 대하여 담당청이 발급한 허가서(신고확인증) 3. 신축·증축한 건물에 대하여 담당청이 발급한 사용승인서 4. 제조시설 명세서 등 생산시설내역 5. 기존 국내사업장을 폐지한 경우 매각계약서 등 기존 국내사업장 폐지 관련 서류
	수수로 없음

작성방법

1.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합니다.
2. '국내복구계획서' 는 서식의 음영처리되지 않은 부분을 작성하고 '국내복구계획 이행결과신고서' 는 서식의 음영 부분을 작성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신청인	→	접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검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결정 산업통상자원부	
				→	선정확인서 발급 산업통상자원부

KOTRA 서류 심사 후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최종적으로 발급받는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입니다.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

대표자 성명 : 홍길동

위 기업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다음의 내용과 같이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유형 3(해외사업장 축소, 기존 국내사업장 보유)

국내사업장 신설·증설 ☒ 예정, ☐ 완료(년 월 일)

2015년 XX월 XX일

직인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4.9.29)

본 별지서식은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후, 해외에서 수입한 자본재에 대해 관세를 감면 받고자 할 때, 제출하는 서식입니다.

자본재 등 도입물품명세 검토·확인신청서(확인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	-----	------	-----

신청인	회사명(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주)대한기계(112XXX-XXXXXX) (전화번호: XXX-XXX-XXXX)		국내복귀기업의 정보를 기입합니다.				
	대표자 성명 홍길동		생년월일 196X. XX. XX.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상 5단위) 30985		생산품명 중장비 부품				

한국표준산업분류 상의 숫자 5자리 코드를 기입합니다.

자본재 등 도입물품명세	수량	규격	제작자	금액(USD)	용도
8490XX-XXXX XXXX machine	5	1500X3000	XX기계	50,000	절단
8490XX-XXXX XXXX machine	3	1000X1500	XX기계	42,000	용접

「조세감면법」 제11조제2항(사실관계의 확인)에 따라 자본재 등 도입물품명세 검토·확인을
수입할 자본재 기입합니다. HSK분류 번호, 품명, 수량, 규격, 제작자 및 금액을 정확하게 기입합니다. 표의 자리가 부족한 경우 칸을 추가하여 기입합니다.

2015년 XX월 XX일

신청인

(주)대한기계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신청서 제출일 및 법인명 기입 후
법인 인감 날인합니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고시」 제11조제2항(사실관계의 확인)에 따라 자본재 등 도입물품명세 검토·확인을
신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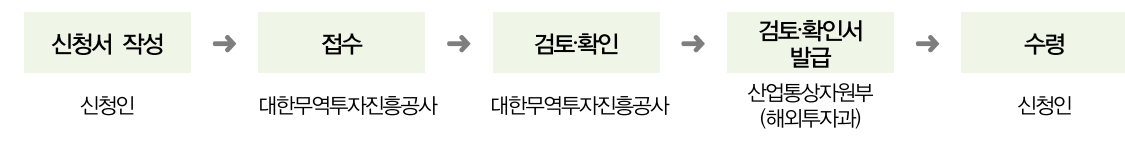
년 월 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직인

첨부서류	1.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 사본 2. 도입 자본재 확인 증빙서류(송장, 국내사업장의 신설증설 관련 국내복귀계획서 사본 등)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고시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4.9.29)

국내거주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위한 5억 이상
(토지 제외) 신규투자확인신청서입니다.

신규 투자확인신청서(확인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국내복귀기업의 정보를 기입합니다.	10일

신청인	회사명(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주)대한기계(112XXX-XXXXXX) (전화번호: XXX-XXX-XXXX)	
	대표자 성명 홍길동	생년월일 196X. XX. XX.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상 5단위) 30985	생산품명 중장비 부품

국내복귀사업장에 대해 토지구매비용을 제외한 신규투자금액(5억 이상)을 기입합니다.

계	800백만원
건축비	400백만원
기계시설비	200백만원
부대시설비	100백만원
기타(비품, 차량 등)	100백만원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외국인근로자 도입계획의 공표 등) 및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고시」 제11조제2항(사실관계의 확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규투자금액 확인을 신청합니다.

신청서 제출일 및 법인명
기입 후 법인 인감 날인
합니다.

2015년 XX월 XX일

(주)대한기계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고시」 제11조제2항(사실관계의 확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규 투자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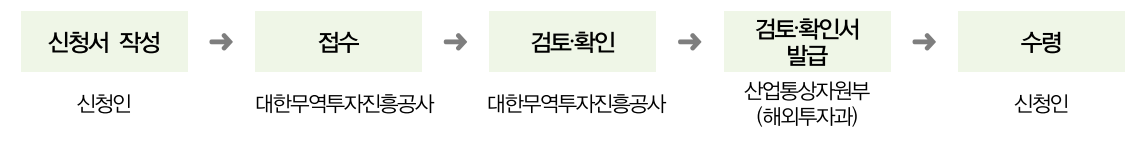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직인

첨부서류

신청인(신고인) 제출서류	1.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 사본 2. 투자내역리스트, 투자실적증빙자료 사본(계약서, 세금계산서, 입금확인증 등)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

부록4.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19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한다.

2016년 2월 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자금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이란 기업의 지방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교부하는 자금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받은 자금에 지방자치단체의 자금을 더하여 투자기업에 지급하는 급부금을 말한다.
2. “지방투자촉진보조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유치 사무 또는 기업의 투자 사업으로서 보조금 신청서와 사업계획서에 의해 정해진 사업을 말한다.
3. “지방투자촉진보조사업자”(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 또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수령자”(이하 “보조금수령자”라 한다)란 보조금을 교부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투자기업을 말한다.

제3조(지역의 구분)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지역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수도권”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지역을 말한다.
2. “지방”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
3. “수도권 인접지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의2제5항의 지역 중 수도권 과 접한 시·도에 속한 지역을 말한다. 단,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성장촉진지역 또는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특수상황지역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4. “지원우대지역”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 가. 지방의 성장촉진지역
 - 나. 지방의 특수상황지역
 - 다.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세종특별자치시
 - 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제주특별자치도
 - 마. 「기업도시 개발 특별법」에 의해 지정된 기업도시개발구역
 - 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지정된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 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또는 기업도시개발구역이 있는 기초지방자치단체에 개발하는 일반산업단지
5. “일반지역”은 수도권, 수도권 인접지역 및 지원우대지역을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

제4조(업종의 구분)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업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경제협력권산업”은 법 제2조제5호의 산업을 말한다.
2. “주력산업”은 법 제2조제4호에 근거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수립한 지역산업발전계획에 따라 선정된 산업을 말한다.
3. “지역집중유치업종”은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선정한 업종으로 별표1의 업종을 말한다.
4. “지식서비스산업”은 「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2의 산업을 말한다.
5. “창조경제 지역전략산업”은 제18차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의결·확정된 업종을 말한다.

제5조(기업의 구분)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기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중견기업”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3. “대기업”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제외한 기업을 말한다.

제6조(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방법) 독립된 사업장에서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의 1년 평균인원(이하 “상시고용인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보험료(같은법 제6조에 따른 지역가입자는 제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고용보험료 등의 최근 1년간 납부자료를 통해 증명 가능한 인원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11조에 따른 국내복귀기업이 운영하던 해외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은 주주총회의 청산결의, 양도·양수계약 등 해외사업장의 청산·양도 또는 축소(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해외진출기업은 해외사업장을 유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시작 전(유지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신청시점. 이하 같다) 1년간 해외사업장이 소재한 국가의 사회보험납부실적, 소득세원천징수납부실적, 회계감사보고서 등을 통해 증명 가능한 인원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12조에 따른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의 상시고용인원은 개성공업지구 사업장에서 고용한 인원의 근로자명부 등을 통해 증명 가능한 인원

제7조(적용범위)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과 관련하여 법 및 같은법 시행령과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에 따른다.

제2장 보조금 지원대상

제8조(지원대상) ① 보조금수령자는 제9조 내지 제12조의 요건을 충족하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 제2조제18호에 따른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산업발전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식서비스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한다.

② 투자사업장에서 영위하려는 업종이 부동산관련업(매매, 중개, 임대 등), 소비성서비스업 및 건설업인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투자사업장에서 영위하려는 건설업이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지원 가능하다.

1.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 면허가 별표10에서 정한 업종에 해당할 것
2. 공장등록증 등 제조업 영위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할 것
3. 투자사업장에서 영위하려는 주된 사업이 제조업에 해당한다는 점이 제29조에 따른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서 승인 받을 것

④ 투자사업장을 인수 또는 합병하여 단순히 소유관계가 변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⑤ 폐쇄된 건물(이하 “폐건물”이라 한다)을 매입하여 공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매입하는 폐건물이 1년 이상 폐쇄되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한한다.

제9조(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 ① 지방으로 이전하려는 수도권기업은 제17조에 따른 보조금 신청시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여야 한다.

1. 기업의 본사가 수도권에 소재할 것
2. 지방으로 이전할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별표2에서 정한 수도권내 대상지역에서 연속으로 3년 이상 영위할 것
3. 기존사업장(지방으로 이전할 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이 30인 이상일 것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은 다음의 각 호를 모두 수행해야 하며, 수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으로 아니 본다.

1. 수도권내 대상지역에 소재한 본사, 공장, 연구소 등 독립된 사업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것
2. 수도권에서 영위한 업종과 동일한 업종을 투자사업장에서 영위할 것
3. 투자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이 30인 이상일 것
4. 기존사업장은 투자완료 전에 폐쇄 또는 매각할 것

제10조(지방 신·증설 투자) ① 국내기업 중 지방에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사업장의 용도로 변경 또는 폐건물을 투자사업장 용도로 매입하여 사업 시설을 설치(이하 “신설”이라 한다)하거나 기존사업장의 부지 또는 건축면적을 증가하여 사업 시설을 설치(이하 “증설”이라 한다)하는 기업은 제17조에 따른 보조금 신청시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여야 한다.

1. 국내에서 연속으로 3년 이상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영위할 것. 단, 증설의 경우 기존사업장은 동일 또는 인접 부지에서 최소 3년 이상 경과한 사업장에 한함
 2. 기존사업장(국내에 소재한 전체 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10인 이상일 것
-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은 다음의 각 호를 모두 수행해야 하며, 수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 신·증설 투자로 아니 본다.
1. 투자사업장에서 영위하려는 업종이 경제협력권산업, 주력산업, 지역집중유치업종, 창조경제 지역전략산업에 해당할 것
 2. 투자사업장의 신규 상시고용인원이 기존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의 10% 이상일 것. 다만,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50명 이상이어도 가능하고 대기업인 경우 100명 이상이어도 가능함
 3. 투자금액이 10억원 이상일 것. 다만,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지식서비스산업을 영위하기 위해 투자하는 경우에는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이어도 가능하고, 대기업은 300억원 이상이어야 가능
 4. 기존사업장을 유지할 것(폐쇄, 매각, 임대, 축소 금지). 다만, 별표2에서 정한 수도권 내 지역에 있는 기존사업장은 유지하지 않아도 됨.
- ③ 제2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기존사업장의 시설 일부를 신·증설 사업장으로 재배치하거나 축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보조금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하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

제11조(국내복귀기업의 지방투자) ① 지방에 투자하는 국내복귀기업은 제17조에 따른 보조금 신청시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여야 한다.

1.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일 것
 2.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일 것
 3. 해외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이 30인 이상일 것
-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은 다음의 각 호를 모두 수행해야 하며, 수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내복귀기업의 지방투자로 아니 본다.
1. 투자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이 30인 이상일 것
 2. 해외사업장에서 영위한 업종과 동일한 업종을 투자사업장에서 영위할 것
 3. 국내에 기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해외사업장을 국내복귀기업 선정일로부터 4년 이내에 청산 또는 양도할 것

제12조(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의 지방투자) ① 지방에 투자하는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은 제17조에 따른 보조금 신청시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여야 한다.

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의 수리를 받아 개성공업지구에 설립한

기업일 것

2. 개성공업지구에서 연속으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할 것
-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은 다음의 각 호를 모두 수행해야 하며, 수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의 지방투자자로 아니 본다.
 1. 투자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이 30인 이상일 것
 2. 지방에 투자사업장을 신설할 것
 3. 개성공업지구 사업장에서 영위한 업종과 동일한 업종을 투자사업장에서 영위할 것

제3장 보조금 지원내용

제13조(지원내용)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9조, 제11조 및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3에 따른 토지 매입가액의 일부(이하 “입지보조금”이라 한다)와 별표4에 따른 설비투자금액의 일부(이하 “설비보조금”이라 한다)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0조에 해당하는 경우 설비보조금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9조 내지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2조제6의2호(보육시설은 제외), 제7호 및 제9호에 따른 시설(근로환경개선시설)에 투자한 금액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함께 대규모 투자기업군을 유치하고 투자협약을 체결한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동기반시설 설치비 등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지원범위)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공동으로 별표5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투자기업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3조제1항의 입지보조금은 설비보조금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3조제3항의 근로환경개선 시설에 투자한 금액은 설비투자금액의 10% 범위 내에서 설비투자금액으로 인정한다.

④ 국가의 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지원할 수 있고, 하나의 기업에 지원하는 국가의 지원 총합은 6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내복귀기업과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의 토지 매입가액에 대한 국가의 지원은 5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의 지방투자에 대해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되는 보험금 규모 등을 감안하여 지원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

⑦ 제2항의 지원범위를 초과하여 지원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⑧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보조금 집행실적, 지역의 낙후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 별로 지원한도를 정할 수 있다.

- 제15조(지원특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존사업장 대비 투자사업장의 신규 고용인원수에 따라 설비투자금액의 지원비율을 별표6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가산하여 지원할 수 있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투자기업이 투자사업장에서 경제협력권산업, 주력산업, 지역집중유치업종, 신성장동력산업(창조경제 지역전략산업을 지칭)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설비투자금액의 지원비율을 2%p 가산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단, 신·중설 기업은 제외한다.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투자기업의 투자사업장이 구조고도화단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비율을 2%p 가산하여 지원할 수 있다.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투자유치 우수지자체에 대하여 국가의 보조비율을 5%p 가산하여 지원할 수 있다.
-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9조, 제11조 및 제1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이 10인 이상인 기업에 지원할 수 있다.
1. 투자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경제협력권산업, 주력산업, 지식서비스산업, 지역집중유치업종 또는 신성장동력산업(창조경제 지역전략산업을 지칭)인 경우
 2. 성장촉진지역 또는 특수상황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원의 적정성, 지원기업의 지역경제 기여도 및 사후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원한도를 가감할 수 있다.

제4장 보조금 지원절차

- 제16조(기업 유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업의 실질적인 투자행위일 이전에 투자기업과 투자양해각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협약(이하 “투자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보조금 신청시 제출하여 투자유치 활동을 증명해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실질적인 투자행위의 기준이 되는 일자는 다음과 같다.
1. 입지보조금을 포함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최초 입지계약 체결일
 2. 설비보조금을 신청할 경우에는 최초 착공신고일
 3. 폐건물을 매입하여 투자하는 경우에는 최초 폐건물 매매계약 체결일(경매의 경우 낙찰일)
 4. 보조금을 최초 입지계약일, 착공신고일, 폐건물매입일 이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신청일
- ③ 투자협약은 보조금 신청 이전 3년이 경과하면 안 된다.

- 제17조(보조금의 신청)**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유치한 기업으로부터 보조금 신청을 접수하면 보조금 지원요건 적합성 및 신청서류의 적정성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검토해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요건과 신청서류가 적합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별표7의 평가기준에 따라 타당성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 점수가 60점 이상인 경우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공문으로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보조금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타당성 평가서
 4. 제1호 및 제2호 서식의 증빙에 필요한 서류
 5.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요청한 서류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 신청시 관련서류를 보조금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에 등록하여야한다.
- ⑤ 제3항의 공문이 산업통상자원부에 접수된 날을 보조금신청일로 한다.
-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3조에 따라 보조금을 산정하여 신청하여야하며, 입지보조금만 별도로 신청할 수 없다.
- ⑦ 보조금의 신청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비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는 투자협약체결일부터 착공신고 후 3개월 이내
 2. 입지보조금을 포함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입지계약체결일부터 1년 이내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착공신고 후 3개월이 먼저 도래하는 경우에는 입지계약체결일부터 착공신고일 3개월 이내
 4. 폐건물 매입의 경우 투자협약체결일부터 매매계약체결(경매의 경우 낙찰일) 후 6개월 이내. 단, 폐건물 매입의 경우 제18조제1항제2호의 현장조사 이전까지 매매계약 당시의 상태를 유지해야하고, 기업이 현장조사 이전에 투자진행을 원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 신청서 접수 즉시 산업통상자원부에 현장조사를 요청하여 현장조사 후에 투자가 진행되도록 해야함.
-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투자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을 신청할 수 없다.
1.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받아 선행투자를 진행 중인 기업으로 그 선행투자가 제21조에 따른 정산을 완료하기 이전인 경우
 2. 보조금을 지원받고도 선행투자를 정상적으로 완료하지 못해 환수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은 사업장(해당부지 전체)에 대해 추가로 투자하는 경우
- ⑨ 제3항제1호의 신청서에서 투자완료일은 착공신고일로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9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위원회에서 산업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장기간 투자가 요구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3년을 초과하여 사업기간을 정할 수 있다.

제18조(보조금 교부결정)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보조금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의뢰할 수 있다.

1. 보조금 신청서류 검토
 2. 사업장 현장조사
 3. 전문가 자문
 4.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②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은 제1항의 의뢰사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검토보고서를 제출해야한다.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제1항의 사무를 의뢰함에 있어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보조금 지원여부 및 조정이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보조금을 신청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투자기업에게 심의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과

설명을 요구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 및 투자기업은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요구에 응해야한다.

- ⑥ 심의위원회는 사업 목적의 적합성, 투자사업 내용의 적정성, 신청기업의 자금부담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보조금 신청에 관한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 ⑦ 심의위원회는 범법행위 등으로 공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기업, 불성실한 보조사업 전력이 있는 기업, 거짓으로 보조금을 신청한 사례가 있는 기업 등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을 거부할 수 있다.
- ⑧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심의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심의위원회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한다.
- 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심의위원회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투자기업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한다.
- ⑩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보조금 지원을 결정하였더라도,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지원이 결정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 지원결정에 관한 내용을 재조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 ⑪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받은 심의위원회 결정사항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 결정사항의 중대한 하자를 적시하여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⑫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차기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재심의할 수 있다.
- ⑬ 심의위원회 재심의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재차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제19조(보조금의 교부 및 지급) ① 보조금 통보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심의위원회의 결정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해야한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할 때는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의 집행잔액 또는 제33조에 따른 환수금액과 상계할 수 있다.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기준에 따른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일시 정지할 수 있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투자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보조금 교부시 부가한 지급조건을 해소해야한다.
-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을 지급하기 전에 투자기업으로부터 보조금 환수에 충분한 담보를 확보할 조치를 취해야한다.
- ⑥ 제5항의 담보는 저당권, 가등기,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하고, 보증보험증권의 경우에는 보험가액을 기업의 사후관리 기간에 따라 연차별로 차감할 수 있다.
-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투자기업에 보조금 수행기업의 의무 및 주의사항 등을 성실히 설명하고, 기업으로부터 공증받은 투자이행확약서를 징구한 후 보조금을 지급해야한다.
- ⑧ 투자기업은 제7항의 투자이행확약서에 대한 공증을 받을 때는 투자완료일, 투자규모, 고용규모 및 불이행에 따른 보조금 반환에 대한 서약 내용을 포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한다.
- 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투자기업의 착공신고를 확인한 후에 입지보조금 전액과 설비보조금의 70%를 지급하고,

설비보조금의 30%는 정산 이후에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투자의 수행) ① 투자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 지원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착공신고를 하여야하며, 제18조의 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

② 투자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투자기간 및 일정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투자금액 및 주요 설비투자 내역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고용목표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투자사업장의 이전 등 장소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투자업종의 추가, 변경 등에 관한 사항
6. 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할 경우
7. 주요 주주의 변동 등 기업소유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중요재산의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9. 해당부지에 투자사업장 외의 건물 신축 또는 임대하는 경우
10. 기타 투자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투자기업으로부터 제2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사업계획서상의 투자완료예정일 3개월 이전에 의견을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한다.

④ 투자완료일은 투자기업이 보조금 신청서에 투자금액과 고용목표 등 투자계획을 모두 달성할 수 있다고 지정한 날짜를 말하며, 투자기업은 투자완료일까지 약속한 투자를 모두 완료해야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요청을 승인한 경우 투자기업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투자기간에서 해당 기간을 제외할 수 있다.

제21조(보조금의 정산) ① 투자기업은 투자완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조금의 정산을 신청해야 한다. 투자기업이 투자완료일 이전에 조기정산을 원하는 경우에는 투자완료일 이전에도 정산신청이 가능하다.

② 투자기업은 제1항의 정산을 신청할 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정산 신청서
2. 제1호의 증빙에 필요한 서류
3. 제9조제2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2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투자기업으로부터 정산신청을 접수하면 별표8의 산정기준에 따라 정산하여야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산완료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별지제4호 서식에 따라 정산결과를 보고해야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정산결과에 대한 별도의 의견이 없는 경우 투자기업에 정산완료를 통보해야 한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투자기업에 정산완료를 통보한 후 정산 잔액을 국가에 반납하여야한다.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1조의 보조금 정산과 관련한 일부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한국산

업단지공단에 의뢰할 수 있다.

1. 보조금 정산서류의 검토
 2. 사업장 현장조사
 3.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 자문
 4.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⑧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은 제7항의 의뢰받은 사무에 대해 검토보고서를 제출해야한다.
- 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제7항의 사무를 의뢰함에 있어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사후관리) ① 투자기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정산완료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년간(이하 “사후관리 기간”이라 한다) 제18조 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해당사업장에서 투자한 사업을 영위하여야 한다.

② 투자기업은 사후관리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설비의 반출, 변동 등 사업장의 구성 변경에 관한 사항
 2. 고용 수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투자사업장의 이전 등 장소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업종의 추가, 변경 등에 관한 사항
 5. 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할 경우
 6. 주요 주주의 변동 등 기업소유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중요재산의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8. 해당부지에 투자사업장 외의 건물 신축 또는 임대하는 경우
 9. 기타 투자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사항 등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투자기업으로부터 제2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의견을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승인을 받아야한다.
- ④ 투자기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사업진행 현황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해야하며 현장조사에 필요한 조치도 협조해야한다.
-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투자기업에 대한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투자기업의 사업이행 상황을 현장방문을 통해 점검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매년 3월말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일괄 제출해야한다.
-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투자기업의 사업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사무를 산업단지공단에 의뢰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업단지공단의 이행실태 점검에 적극 협조해야한다.

제23조(보조사업의 종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사업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완료보고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보조사업완료보고서를 제출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보조금 지원 경위
2. 보조금 예산에 관한 사항
3. 보조금 지원 효과에 관한 사항

제5장 지방기업의 공장 스마트화 지원특례

제24조(지방기업의 공장 스마트화 지원특례 적용범위) 국내기업 중 지방에 소재한 사업장의 공정 개선(이하 “지방기업의 공장 스마트화”라 한다)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과 관련하여 이 기준에서 제5장의 기준을 우선한다.

제25조(지방기업의 공장 스마트화 지원대상) 지방기업의 공장 스마트화를 목적으로 투자하려는 기업의 보조금 신청시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여야 한다.

1. 스마트공장 추진단에 의해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일 것
2.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일 것
3. 공정개선 투자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이 10인 이상일 것
4. 국내에서 연속으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할 것

제26조(지방기업의 공장 스마트화 지원내용)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방기업의 공장 스마트화를 위한 기업의 투자에 대해서 공장 스마트화를 위한 현장자동화 및 공장운영, 제품개발, 공급사슬관리, 기업자원관리,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 등 스마트공장 추진단에서 인정하는 투자금액(장비구입금액은 시스템 연동 장비로 제한)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원할 수 있다

- ② 기업의 투자금액은 1억원 한도 내에서 인정하며, 정부의 지원비율은 50% 이내로 한다.
- ③ 지방기업의 공장 스마트화를 지원하기 위한 국고 보조율은 75%로 한다.

제27조(지방기업의 공장 스마트화 지원절차)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기업의 공장 스마트화를 위해 보조금을 신청할 경우에 제16조에 따른 기업 유치 절차는 생략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기업의 공장 스마트화를 위해 보조금을 신청할 경우에 제17조제2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를 스마트공장 추진단의 평가로 대체한다.
- ③ 보조금을 교부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스마트공장 추진단의 점검 및 평가를 거쳐 지원대상임을 최종 확인한 후에 보조금을 정산하여 전부 지급하여야 한다.
- ④ 지방기업의 공장스마트화 지원사업은 사후관리 의무를 적용받지 아니한다.

제28조(지침의 제정)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방기업의 공장 스마트화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지침으로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6장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심의위원회

제29조(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보조금 집행과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결정하기 위해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1.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준 해석에 관한 사항
 4. 투자유치 우수 사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조금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심의사항에 대해 필요한 경우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가에게 의견을 구할 수 있다.

제30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정책관이며 당연직위원은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국내복귀기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경우는 산업통상자원부 해외투자과장,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 남북경협팀장을 당연직위원으로 한다.

③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10명 이내로 위촉한다.

1. 지역투자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대학교수
2. 정부출연기관에 소속된 지역투자분야 전문가
3.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및 금융업무 전문가
4. 그 밖에 보조금 사업 운용실태의 조사 및 평가 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한 자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횟수에 제한은 없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촉위원이 임기 중 사망한 경우
2. 위촉위원이 개인사정 등을 이유로 사임한 경우
3. 위촉위원이 6개월 이상 장기 출타 또는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당한 경우

제31조(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2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를 위한 위원 위촉대상에서 제외한다.

1.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기관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 또는 자문에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7장 보조금의 환수

제33조(시정명령)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처분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조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투자기업이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처분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조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34조(보조금의 환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투자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환수를 명할 수 있다.

1. 제9조 내지 제12조의 요건을 위반한 경우
 2. 제20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한 경우
 3. 보조금을 투자계획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4.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5. 국내복귀기업의 경우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법률」 제8조에 따른 선정이 취소된 경우
 6.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별표9에 따라 환수금액을 산정하고, 이지는 지방자치단체가 금융기관과 약정한 보통예금 금리를 적용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투자기업이 정해진 기간까지 반환해야할 보조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조금을 환수할 때에는 환수 계획과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해야한다.

제35조(보칙)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기준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별도지침으로 제정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 지원에 관한 세부 지원기준을 제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36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조금 지원에 관한 적용례) 이 기준 시행 이전에 보조금을 수령한 기업에 대한 적용기준은 보조금 신청 당시에 고시한 기준으로 한다.

제3조(폐건물 및 증설투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 전에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체결한 투자협약에 대해서는 제8조제5항 또는 제10조제1항제1호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 6월 30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별표 1]

지역집중유치업종 (제4조제3호 관련)

지역	집중유치업종
부산광역시	1321 직물 직조업
	1521 신발 제조업
	1522 신발 부분품 제조업
	2121 완전 의약품 제조업
	2612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유사 반도체 소자 제조업
	2711 방사선장치 및 전기식 진단기기 제조업
	2918 사무용 기계 및 장비 제조업
	3132 항공기용 엔진 및 제조업
	7599 그외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
대구광역시	인쇄업
	1811 1차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221 기계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224 철강관 제조업
	2413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기타 정밀기기 제조업
	2721 펄프 및 압축기 제조업; 탭, 밸브 및 유사장치 제조 포함
	2917 냉각, 공기조화, 여과, 증류 및 가스발생기 제조업
	3031 자동차엔진용부품제조업
	7599 그외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
광주광역시	2421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2511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
	2642 방송 및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2721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기타 정밀기기 제조업
	2830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2924 건설 및 광산용 기계장비 제조업
	3202 목재가구 제조업
	5911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7599 그외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
대전광역시	2043 세제, 화장품 및 광택제 제조업
	2049 그외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2123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
	2520 무기 및 총포탄 제조업
	2632 기억장치 및 주변기기 제조업
	2811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2913 펄프 및 압축기 제조업; 탭, 밸브 및 유사장치 제조 포함
	2917 냉각, 공기조화, 여과, 증류 및 가스발생기 제조업
	7599 그외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

지역	집중유치업종
울산광역시	2012 기초 무기화학물질 제조업
	2030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2594 금속파스너, 스프링 및 금속선 가공제품 제조업
	2629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2719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2820 일차전지 및 축전지 제조업
	2914 베어링, 기어 및 동력전달장치 제조업
	3012 자동차 제조업
	7599 그외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
세종특별자치시	2110 기초 의약품 및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2121 완제 의약품 제조업
	2229 기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2511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
	2721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기타 정밀기기 제조업
	2811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2812 전기공급 및 전기제어 장치 제조업
	2842 조명장치 제조업
	3039 기타 자동차 부품 제조업
강원도	1021 수산동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030 과일, 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079 기타 식료품 제조업
	2043 세제, 화장품 및 광택제 제조업
	2421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3039 기타 자동차 부품 제조업
춘천시	1071 떡, 빵 및 과자류 제조업
	1419 기타 봉제의복 제조업
	2221 1차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원주시	2123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
	2721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기타 정밀기기 제조업
	3032 자동차 차체용 부품 제조업
강릉시	2429 기타 1차 비철금속 제조업
	2591 금속 단조, 압형 및 분말야금 제품 제조업
	2890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지역	집중유치업종		
동해시	2611 2811 2890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태백시	1012 2842 2929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조명장치 제조업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	
속초시	1061 2511 3020	곡물 가공품 제조업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 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 제조업	
삼척시	1629 2811 2890	기타 나무제품 제조업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홍천군	1071 2042 2223	떡, 빵 및 과자류 제조업 잉크, 페인트, 코팅제 및 유사제품 제조업 포장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횡성군	2222 3012 3032	건축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자동차 제조업 자동차 차체용 부품 제조업	
영월군	2512 2721 3131	금속탱크, 저장조 및 유사 용기 제조업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기타 정밀기기 제조업 항공기,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평창군	1061 1074 1120	곡물 가공품 제조업 조미료 및 식품 첨가물 제조업 비알콜음료 및 얼음 제조업	
정선군	1012 1061 2399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곡물 가공품 제조업 그외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철원군	2917 2927 3209	냉각, 공기조화, 여과, 증류 및 가스발생기 제조업 반도체 및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제조업 기타 가구 제조업	
화천군	2629 2928 3112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산업용로봇제조업 오락 및 스포츠용 보트 건조업	
양구군	1071 1322 1629	떡, 빵 및 과자류 제조업 직물제품 제조업 기타 나무제품 제조업	

지역	집중유치업종		
인제군	1022 3020 3031	수산식품 가공 및 저장 처리업 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 제조업 자동차 엔진용 부품 제조업	
고성군	1120 1071 1074	비알콜음료 및 얼음 제조업. 떡, 빵 및 과자류 제조업 조미료 및 식품 첨가물 제조업	
양양군	1071 1621 2511	떡, 빵 및 과자류 제조업 박판, 합판 및 강화목제품 제조업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	
충청북도	1030 3131 2043 2721 2321 1012	과실 채소 가공 및 저장처리업 항공기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세제 화장품 및 광택제 제조업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기타정밀기계 제조업 일반 도자기 제조업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제천시	1079 2642 2914	기타 식료품 제조업 방송 및 무선 통신장치 제조업 베어링, 기어 및 동력전달장치 제조업	
청주시	1074 1079 3132	조미료 및 식품 첨가물 제조업 기타 식료품 제조업 항공기용 엔진 및 부품 제조업	
충주시	2229 2593 2927	기타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날붙이, 수공구 및 일반철물 제조업 반도체 및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제조업	
괴산군	1073 1074 1079	면류, 마카로니 및 유사식품 제조업 조미료 및 식품 첨가물 제조업 기타식료품제조업	
단양군	2331 2332 2399	시멘트, 석회 및 플라스터 제조업 콘크리트, 시멘트 및 플라스터 제품 제조업 그 외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보은군	2030 2222 2399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건축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그 외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영동군	1079 1419 2399	기타 식료품 제조업 기타 봉제의복 제조업 그 외 기타 비금속광물 제품 제조업	

지역	집중유치업종		
옥천군	2429	기타 1차 비철금속 제조업	
	2599	그 외 기타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2919	기타 일반목적용 기계 제조업	
음성군	1061	곡물 가공품 제조업	
	1074	조미료 및 식품 첨가물 제조업	
	3031	자동차 엔진용 부품 제조업	
증평군	2412	철강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890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3120	철도장비 제조업	
진천군	1073	면류, 마카로니 및 유사식품 제조업	
	1074	조미료 및 식품 첨가물 제조업	
	1079	기타 식료품 제조업	
충청남도	2042	잉크, 페인트, 코팅제 및 유사제품 제조업	
	2412	철강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419	기타 1차 철강제조업	
	2511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	
	2922	가공공작기계 제조업	
	3012	자동차 제조업	
공주시	1079	기타 식료품 제조업	
	2851	가정용 전기기기 제조업	
	2890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계룡시	2642	방송 및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2911	내연기관 및 터빈 제조업; 항공기용 및 차량용 제외	
	2912	유압기기 제조업	
논산시	1012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071	떡, 빵 및 과자류 제조업	
	1074	조미료 및 식품 첨가물제조업	
보령시	1022	수산식품 가공 및 저장 처리업	
	3020	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 제조업	
	3039	기타 자동차 부품 제조업	
서산시	2421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제조업	
	3011	자동차용엔진 제조업	
	3020	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 제조업	
아산시	2612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유사 반도체소자 제조업	
	2842	조명장치 제조업	
	2916	산업용 트럭, 승강기 및 물품취급장비 제조업	

지역	집중유치업종		
천안시	2719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2721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기타 정밀기기 제조업	
	2928	산업용 로봇 제조업	
금산군	1079	기타 식료품 제조업	
	1120	비알콜음료 및 얼음 제조업	
	2122	한약약품 제조업	
당진시	2916	산업용 트럭, 승강기 및 물품취급장비 제조업	
	2919	기타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2929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	
부여군	2222	건축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842	조명장치 제조업	
	2890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서천군	2222	건축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811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1079	기타 식료품 제조업	
예산군	1079	기타 식료품 제조업	
	2719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2928	산업용 로봇 제조업	
청양군	1030	과실, 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062	전분제품 및 당류제조업	
	1610	제재 및 목재 가공업	
태안군	1021	수산동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3111	선박 건조업	
	3131	항공기,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홍성군	2811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2820	일차전지 및 축전지 제조업	
	2332	콘크리트, 시멘트 및 플라스터 제품 제조업	
전라북도	1021	수산동물 가공 및 저장처리업	
	2042	잉크, 페인트, 코팅제 및 유사제품 제조업	
	2642	방송 및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2890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2919	기타 일반목적용 기계제조업	
	5822	시스템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군산시	2042	잉크, 페인트, 코팅제 및 유사제품 제조업	
	2599	그외 기타 금속가공 제품 제조업	
	2916	산업용 트럭, 승강기 및 물품취급장비 제조업	

지역	집중유치업종		
김제시	1722	종이포대, 판자상자 및 종이용기 제조업	
	2719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2929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	
남원시	2222	건축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629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2719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익산시	2719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3311	귀금속 및 관련제품 제조업	
	3312	모조 귀금속 및 모조 장신용품 제조업	
전주시	2721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기타 정밀기기 제조업	
	3039	기타 자동차 부품 제조업	
	3131	항공기,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정읍시	1120	비알루미늄 및 얼음 제조업	
	2719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3120	철도장비 제조업	
고창군	1622	건축용 나무제품 제조업	
	2321	일반도자기 제조업	
	2431	철강주조업	
무주군	1120	비알루미늄 및 얼음 제조업	
	1610	제재 및 목재가공업	
	2312	산업용 유리 및 판유리 가공품 제조업	
부안군	1071	떡, 빵 및 과자류 제조업	
	2312	산업용 유리 및 판유리 가공품 제조업	
	2842	조명장치 제조업	
순창군	1074	조미료 및 식품 첨가물 제조업	
	1079	기타 식료품 제조업	
	1120	비알루미늄 및 얼음 제조업	
완주군	2929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	
	3020	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 제조업	
	3039	기타 자동차 부품 제조업	
임실군	1050	낙농제품 및 식용빙과류 제조업	
	1079	기타 식료품 제조업	
	2412	철강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장수군	1061	곡물가공업 제조업	
	1321	직물 직조업	
	2921	농업 및 임업용 기계 제조업	

지역	집중유치업종		
진안군	1120	비알루미늄 및 얼음 제조업	
	1610	제재 및 목재 가공업	
	1629	기타 나무제품 제조업	
전라남도	2719	의약 및 의료용 기기제조업	
	3039	기타 자동차 부품 제조업	
	3132	항공기용 엔진 및 부품제조업	
	2421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2721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기타 정밀기기 제조업	
	6201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광양시	2411	제철, 제강 및 합금철 제조업	
	2419	기타 1차 철강 제조업	
	2429	기타 1차 비철금속 제조업	
나주시	2599	그 외 기타 금속가공업 제조업	
	2842	조명장치 제조업	
	2929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	
목포시	1022	수산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2842	조명장치 제조업	
	3012	자동차 제조업	
순천시	2422	비철 금속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511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	
	2592	금속 열처리, 도금 및 기타 금속가공업	
여수시	1079	기타 식료품 제조업	
	2599	그 외 기타 금속가공업 제조업	
	3111	선박 건조업	
강진군	1079	기타 식료품 제조업	
	2511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	
	2890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고흥군	1079	기타 식료품제조업	
	1622	건축용 나무제품 제조업	
	3111	선박 건조업	
곡성군	1030	과실, 채소가공 및 저장처리업	
	1061	곡물가공업 제조업	
	2511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	
구례군	1050	낙농제품 및 식용빙과류 제조업	
	1061	곡물가공업 제조업	
	1071	떡, 빵 및 과자류 제조업	

지역	집중유치업종		
담양군	1079	기타 식료품제조업	
	2511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	
	3202	목재가구 제조업	
무안군	2719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2721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기타 정밀기기 제조업	
	3132	항공기용 엔진 및 부품제조업	
보성군	1079	기타 식료품 제조업	
	1120	비알콜 및 얼음제조업	
	2599	그외 기타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신안군	1021	수산동물가공 및 저장처리업	
	1030	과실, 채소가공및저장처리업	
	2599	그외 기타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영광군	2511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	
	2740	시계 및 시계부품 제조업	
	2914	베어링, 기어 및 동력전달장치 제조업	
영암군	1021	수산동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030	과실, 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2811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완도군	1022	수산식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030	과실, 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079	기타 식료품제조업	
장성군	2224	기계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511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	
	2929	기타특수목적용기계제조업	
장흥군	1079	기타 식료품제조업	
	1120	비알콜음료 및 얼음제조업	
	2599	그외 기타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진도군	1022	수산식물가공 및 저장처리업	
	1079	기타 식료품제조업	
	2914	베어링, 기어 및 동력전달장치제조업	
함평군	1012	육류가공및저장처리업	
	2919	기타일반 목적용 기계제조업	
	3020	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 제조업	
해남군	1030	과실, 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061	곡물 가공품 제조업	
	1079	기타 식료품 제조업	

지역	집중유치업종		
화순군	1120	비알콜음료 및 얼음 제조업	
	1321	직물 직조업	
	2820	일차전지및축전지제조업	
경상북도	2412	철강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제조업	
	2511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	
	1321	직물 직조업	
	2431	철강 주조업	
	1721	골판지 및 골판지 상자 제조업	
	3131	항공기,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경산시	2914	베어링, 기어 및 동력전달장치 제조업	
	2924	건설 및 광산용 기계장비 제조업	
	3032	자동차 차체용 부품 제조업	
경주시	2413	철강관 제조업	
	2599	그 외 기타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3032	자동차 차체용 부품 제조업	
구미시	2321	일반 도자기 제조업	
	2422	비철금속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719	기타 의료용기기 제조업	
김천시	2011	기초유기화학물질 제조업	
	2399	그 외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3120	철도장비 제조업	
문경시	1079	기타 식료품 제조업	
	1111	발효주 제조업	
	3031	자동차 엔진용 부품제조업	
상주시	1079	기타 식료품 제조업	
	2399	그 외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3032	자동차 차체용 부품 제조업	
안동시	1079	기타 식료품 제조업	
	2110	기초 의약품 및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2130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품관련제품 제조업	
영주시	2012	기초무기화학물질 제조업	
	2592	금속 열처리, 도금 및 기타 금속가공업	
	2914	베어링, 기어 및 동력전달장치 제조업	
영천시	2130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품관련제품 제조업	
	2719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3132	항공기용 엔진 및 부품 제조업	

지역	집중유치업종		
포항시	2411	제철, 철강 및 합금철 제조업	
	2721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기타 정밀기기 제조업	
	3020	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 제조업	
고령군	2399	그 외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제조업	
	2913	펌프 및 압축기 제조업	
	3020	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 제조업	
군위군	1012	육류가공 및 저장 처리업	
	1079	기타 식료품 제조업	
	2222	건축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봉화군	1012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021	수산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2030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성주군	2594	금속파스너, 스프링 및 금속선 가공제품 제조업	
	3031	자동차 엔진용 부품 제조업	
	3032	자동차 차체용 부품 제조업	
영덕군	1021	수산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022	수산식품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079	기타 식료품 제조업	
영양군	1074	조미료 및 식품첨가물 제조업	
	1079	기타 식료품 제조업	
	1112	증류주 및 합성주 제조업	
예천군	1079	기타 식료품 제조업	
	1120	비알콜음료 및 얼음 제조업	
	2130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품관련제품 제조업	
울릉군	1074	조미료 및 식품첨가물 제조업	
	1120	비알콜음료 및 얼음 제조업	
	3399	그 외 기타 분류안된 제품 제조업	
울진군	1079	기타 식료품 제조업	
	1120	기타 비알콜음료 제조업	
	2043	세제, 화장품 및 광택제 제조업	
의성군	1079	기타 식료품 제조업	
	2043	세제, 화장품 및 광택제 제조업	
	2110	기초 의약품 및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청도군	1079	기타 식료품 제조업	
	1111	발효주 제조업	
	2222	건축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지역	집중유치업종		
청송군	1079	기타 식료품 제조업	
	1629	기타 나무제품 제조업	
	2321	일반도자기 제조업	
칠곡군	2842	조명장치 제조업	
	3031	자동차 엔진용 부품 제조업	
	3032	자동차 차체용 부품 제조업	
경상남도	1079	기타 식료품 제조업	
	2224	기계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511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	
	2591	금속단조 압형 및 분말야금제품 제조업	
	2621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업	
	2890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거제시	3111	선박건조업	
	3112	오락 및 스포츠용 보트 건조업	
	2599	그 외 기타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김해시	2130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품관련제품 제조업	
	2721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기타 정밀기기 제조업	
	3039	기타 자동차 부품 제조업	
밀양시	2622	인쇄회로기판 및 전자부품 실장기판 제조업	
	2721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기타 정밀기기 제조업	
	3032	자동차 차체용 부품 제조업	
사천시	3112	오락 및 스포츠용 보트 건조업	
	3131	항공기,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3132	항공기용엔진 및 부품 제조업	
양산시	2130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품관련 제품 제조업	
	2711	방사선 장치 및 전기식 진단기기 제조업	
	2719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진주시	2321	일반도자기 제조업	
	2322	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2323	구조용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창원시	2611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2592	금속 열처리, 도금 및 기타 금속가공업	
	2811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통영시	1021	수산물가공 및 저장 처리업	
	1079	기타 식료품 제조업	
	3111	선박건조업	

지역	집중유치업종		
거창군	2043	세제, 화장품 및 광택제 제조업	
	2811	전동기 및 발전기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1030	과실, 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고성군	3032	자동차 차체용 부품 제조업	
	3111	선박건조업	
	3132	항공기용 엔진 및 부품 제조업	
남해군	2599	그외 기타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2911	내연기관 및 터빈 제조업	
	3111	선박 건조업	
산청군	2121	완제 의약품 제조업	
	2122	한의약품 제조업	
	1030	과실, 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의령군	2812	전기공급 및 전기제어 장치 제조업	
	3039	기타 자동차 부품 제조업	
	3132	항공기용 엔진 및 부품 제조업	
창녕군	2412	철강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3031	자동차 엔진용 부품 제조업	
	3039	기타 자동차 부품 제조업	
하동군	1711	펄프 제조업	
	2399	그 외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3111	선박건조업	
함안군	2419	기타1차 철강제조업	
	2421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2431	철강 주조업	
함양군	1074	조미료 및 식품 첨가물 제조업	
	2122	한의약품 제조업	
	3012	자동차 제조업	
함천군	2811	전동기 및 발전기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2929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제조업	
	3039	기타 자동차부품 제조업	

지역	집중유치업종		
제주특별자치도	2012	기초 무기화학물질 제조업	
	1079	기타 식료품 제조업	
	2110	기초 의약품 및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2121	완제 의약품 제조업	
	2629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6122	무선통신업	
	6311	자료처리,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	
	7011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7291	기술 시험, 검사 및 분석업	

[별표 2]

수도권내 대상지역 (제9조 관련)

-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 (강화군, 옹진군,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제외)
- 경기도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평내동·금곡동·일패동·이패동·삼패동·가운동·수석동·지금동 및 도농동에 한한다), 하남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 안산시, 화성시

[별표 3]

토지 매입가액 인정범위 (제13조제1항 관련)

구분	산정방식
수도권기업 지방이전	• (기존사업장 면적*) × 5 × (투자대상부지 매입단가**) 이내 * 독립된 부지와 건축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존사업장 건물연면적과 부지면적 중 큰 면적을 적용 * 독립된 부지와 건축물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실제 단독으로 사용하는 건물 바닥면적을 적용 ** 투자대상부지 매입단가는 전체 분양금액을 전체 계약면적으로 나눈 금액
국내복귀기업	• 설비투자를 위해 매입한 토지의 매입금액 * 국가의 지원은 5억원 이내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 설비투자를 위해 매입한 토지의 매입금액 * 국가의 지원은 5억원 이내

[별표 4]

설비투자금액 인정범위 (제13조제1항 관련)

구분	인정범위
건설투자비용	• 투자사업장의 건설투자비용 * 증설인 경우에는 증설부분 건축물만 인정 * 건물 매입의 경우에는 건물 매입비용, 폐건물에 속해 있던 기계장비 매입비용, 철거비용은 제외
기계장비 구입비용	•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투자사업장에 구축하는 고정형 기계장비 구입비용. 다만, 이동형 기계장비라도 산단공의 현장평가를 통해 생산에 필수적인 설비라 인정된 경우는 인정 * 지게차, 연구용 기자재, S/W 구입비(상품개발에 필수적인 S/W 및 이의 구동에 필요한 H/W)는 포함 * 인간비, 원자재, 금형, 공구 및 비품, 사무용 기기, 가구 및 집기, 조경 수목, 소모품, 미술품, 장식품, 운영비 등은 제외 * 기계장비의 리스 또는 렌탈 비용은 제외
근로환경 개선시설 투자비용	• 기숙사, 식당, 휴게실, 목욕실, 세탁장, 의료실, 옥외체육시설 및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및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한 시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6의2호, 제7호 및 제9호에 의해 지정된 시설 (다만, 보육시설은 제외) ※ 건설투자 및 기계장비구입 비용의 10%범위 내에서 설비투자금액으로 인정

※ 설비투자 인정기간은 MOU체결일로부터 투자완료일까지로 함

※ 설비투자비 인정은 전자세금계산서로 증빙해야 함(간이세금계산서는 인정 불가)

[별표 5]

보조금 지원범위 (제14조제1항 관련)

지역 구분	보조금 유형	지원비율			국가의 보조비율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일반 지역	입지	—	토지매입가액의 10%이내	토지매입가액의 30%이내	보조금의 최대 100분의 65
	설비 투자	설비투자금액의 8%이내	설비투자금액의 11%이내	설비투자금액의 14%이내	
수도권 인접 지역	입지	—	—	토지매입가액의 9%이내	보조금의 최대 100분의 45
	설비 투자	설비투자금액의 6%이내	설비투자금액의 8%이내	설비투자금액의 11%이내	
지원 우대 지역	입지	—	토지매입가액의 20%이내	토지매입가액의 40%이내	보조금의 최대 100분의 75
	설비 투자	설비투자금액의 11%이내	설비투자금액의 19%이내	설비투자금액의 24%이내	

[별표 6]

신규 고용인원에 따른 추가 지원범위 (제15조제1항 관련)

신규 고용인원수	추가 지원비율
10명 이상 20명 미만	1%p
20명 이상 30명 미만	2%p
30명 이상 40명 미만	3%p
40명 이상 50명 미만	4%p
50명 이상	5%p

* 수도권기업 지방이전 : 투자사업장 고용인원 -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

* 신설 투자 : 신설되는 투자사업장의 고용인원

* 증설 투자 : 증설 투자되는 사업장의 신규 고용인원

* 국내복귀기업 : 투자사업장의 고용인원

*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 투자사업장의 고용인원

[별표 7]

타당성 평가기준 (제17조제2항 관련)

1 최근연도 동종업종 평균 매출액** 대비 최근 3년간 사업실적의 가중평균***

매출액 가중평균*	점 수
30 % 이상	10
20 % 이상 ~ 30 % 미만	8
10 % 이상 ~ 20 % 미만	6
0 % 이상 ~ 10 % 미만	4
0 % 미만	2

* 매출액 가중평균 = $(B-A)/A \times 100$

** 동종업종 평균 매출액(A)은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자료 확인

*** 최근 3년간 사업실적의 가중평균(B) =

$$\frac{(\text{직전1년도 매출액} \times 3) + (\text{직전2년도 매출액} \times 2) + (\text{직전3년도 매출액} \times 1)}{6}$$

(단, 여러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 매출비중이 가장 높은 업종을 평가)

※ 법인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세무서에 제출한 표준재무제표(표준재무제표증명)로 확인

※ 국내복귀기업의 경우, 청산·양도 또는 축소 시작 전 3년간 사업실적의 가중평균으로 평가

2 최근 1년간 상시고용인원

상시고용인원	점수
50명 이상	10
40명 이상 50명 미만	8
30명 이상 40명 미만	6
20명 이상 30명 미만	4
10명 이상 20명 미만	2

* 수도권기업 지방이전 : 지방으로 이전할 대상 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

* 지방 신증설 : 보조금 신청일 기준 신청기업의 국내 전체 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

* 국내복귀기업 : 국내로 복귀할 대상 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

*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 신청기업의 개성공업지구 전체 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

※ 제6조와 관련된 발급기관의 직인이 첨부된 서류로 확인

3 기업신용등급

기업 등급	개인 등급	점수
A0 이상	1, 2 등급	20
BBB- 이상	3, 4 등급	16
BB- 이상	5 등급	12
B0 이상	6 등급	8
B0 미만	7등급 이하	4

- * 국내복귀기업의 신용등급은 해외법인의 최대주주 신용등급으로 평가
 * 기업 등급 증빙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기업 대표의 개인등급으로 평가
 ※ 보조금 신청시 유효기간 내 공공기관제출용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의 기업 등급

4 이자보상배율

이자보상배율	점 수
4 이상	10
3 이상 ~ 4 미만	8
2 이상 ~ 3 미만	6
1 이상 ~ 2 미만	4
1 미만	2

- * 이자보상 배율 = $\frac{\text{기업의 영업 이익액}}{\text{기업의 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 최근년도 재무제표(손익계산서)상 영업손익 및 영업외비용의 이자비용

5 신규투자금액

신규투자금액	점수(20점 만점)
설비투자금액	5억원당 1점
토지 매입가액 + 설비투자금액	7.5억원당 1점
지식서비스산업	2억원당 1점

6 최초 착공신고일로부터 투자완료시점

착공일로부터 완료시점	점 수
1년 이내	5
1.5년 이내	4
2년 이내	3
2.5년 이내	2
3년 이내	1

- * 폐건물 매입의 경우 최초 폐건물 매매계약체결일로부터 투자완료시점
 * 경매의 경우 낙찰일로부터 투자완료시점

7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

투자사업장 고용인원	점수(25점 만점)
투자사업장 고용인원	1명당 0.5점

*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의 50% 이상을 투자사업장에 고용하면 5점 가점, 100%이상 고용하면 10점 가점 부여
(최대 25점 범위 내)

8 성장촉진지역 및 특수상황지역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2점 가점**9 경제협력권산업, 주력산업, 지역집중유치업종, 신성장동력산업(창조경제 지역전략산업을 지칭)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2점 가점****[별표 8]****정산 산정기준 (제21조제3항 관련)**

구 분	산정 방식
정산금액	$\text{보조금액} \times \left(1 - \frac{\text{투자금액미달률} + \text{고용인원미달률}}{2}\right)$ * 정산금액은 보조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 투자금액 미달률 $\frac{\text{투자계획금액} - \text{실투자금액}}{\text{투자계획금액}}$ * 고용인원 미달률 $\frac{\text{투자사업장계획 상시고용인원} - \text{정산시점 1개월 고용인원}}{\text{투자사업장계획 상시고용인원}}$
집행잔액	보조금액 - 정산금액
인센티브 정산	신규 고용인원에 따라 추가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정산금액 산정시 보조금액에서 고용인센티브를 제외하고 산정하며, 고용인센티브는 고용달성률에 따라 별도 정산한다.
타당성평가시 60점미만인 경우	보조금액과 고용인센티브 전액 환수 * 보조금 심의위 후, 통지받은 타당성평가 점수 기준

[별표 9]

환수 기준 (제34조제2항 관련)

구 분	산정 방식
전액 환수	- 투자계획 이행상황 점검시 고용미달에 따라 실시한 타당성 평가에서 60점 미만인 경우 -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 보조금 수령기업이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하였을 경우 - 보조금을 수령한 국내복귀기업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선정이 취소되는 경우 -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처분을 위반하는 경우
부분 환수	- 사후관리기간 중 투자사업장이 정산시 상시고용인원보다 상시고용인원이 감소하는 경우 $* \text{보조금액} \times \frac{\text{정산시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 - \text{상시고용인원}}{\text{정산시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 - 전액 환수 산정방식 외의 경우에는 사후관리 미이행기간에 비례하여 적용

[별표 10]

지원대상 건설업 (제8조제3항제1호 관련)

산업·환경설비공사업, 기계설비공사업, 철도·궤도공사업, 석도설치공사업, 승강기설치공사업, 전기공사업, 전기통신공사업, 소방설비공사업

* 건축, 토목, 조정, 강구조물공사업 등 제조업 특성이 약한 업종은 제외

부록5.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신청서류 및 별지서식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신청서류

[별지 제1호서식]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사업 타당성 평가서

[별지 제3호서식]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정산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정산 결과서

【보조금 신청 시 제출서류】

별지 제①호서식에 의한 보조금 신청서

별지 제②호서식에 의한 타당성 평가서

【투자완료 시 제출서류】

별지 제③호서식에 의한 정산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앞면]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신청서		☐ 수도권기업 지방이전 ☐ 신설 ☐ 증설 기업		☐ 국내복귀기업 ☐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지원대상 (투자사업자)	기업명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법인본사 소재지			전화번호	
지원내용	보조금 유형		기업의 구분		
	☐ 입지보조금 ☐ 설비투자보조금		☐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지역의 구분				
	☐ 일반지역 ☐ 수도권인접지역 ☐ 지원우대지역()				
투자사업장 유형	입지 유형		입주 유형		
	☐ 산업단지 ☐ 개별입지		☐ 매입 ☐ 임대		
수도권기업 지방이전 기존사업장 현황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 연구소 ☐ 기타()				
유치 및 투자일정	법인성립일	(최초)공장등록일	MOU 체결일	보조금 접수일 (기업 → 지자체)	
	'00.00.00	'00.00.00	'00.00.00	'00.00.00	
	토지매입계약 체결일	착공(예정)일	투자완료(예정)일	총투자기간 (착공~투자완료)	
	'00.00.00	'00.00.00	'00.00.00	00년 00개월	
사업장의 내용	소재지		부지면적		건축연면적
기존사업장			㎡		㎡
			㎡		㎡
			㎡		㎡
			㎡		㎡
투자사업장			㎡		㎡
건설업 면허 보유여부	☐ 보유 ☐ 없음	건설업명	○○설비공사업		
업종	업종명		분류번호 (KSIC 5단위)	생산물	
기존사업장					
투자사업장					
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		
	명	명	명		

[뒷면]

투자금액	총 투자금액 (A=B+C)	토지 매입가액 (B)	설비투자금액(C=D+E)	
			건설투자비용+ 기계장비구입비용(D)	근로환경개선시설 투자비용(E)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보조금액	보조금 총액 (A=B+C)	국비 신청액 (B)	지자체 분담금(C)	
			광역지자체 분담금	기초지자체 분담금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입지 천원	입지 천원	입지 천원	입지 천원
	설비 천원	설비 천원	설비 천원	설비 천원
	보조금 산출식			
	입지보조금			
기업의 투자계획 이행확보방안	☐ 보증보험증권 ☐ 저당권 설정 ☐ 가등기 ☐ 기타()			
지원비율 특례사항	☐ 경제협력권산업 ☐ 주력산업 ☐ 지역집중유치업종 ☐ 창조경제지역전략산업 ☐ 지식서비스산업 ☐ 투자유치 우수 지자체 ☐ 구조고도화 ☐ 고용인센티브(%p) ☐ 기타()			
기지원사항	유사보조금, 관련보험금 등 지원사항			보조금 수령금액
	☐ 없음 ☐ 지방투자촉진보조금(년도) ☐ 남북협력기금보험금 ☐ 기타 보조금()			총액 천원
				국비 천원
〈이하 국내복귀기업 및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만 작성 필요〉				
해외사업장 현황	기업명		전화번호	등록번호
	투자자명	투자지분율	사업개시일	청산·양도 또는 축소 시작(예정)일
해외사업장 처리방안	☐ 청산 ☐ 양도 ☐ 축소 ☐ 유지(국내에 기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 한함)			
국내사업장 현황	국내사업장 유무		기업명	연락처
	☐ 있음 ☐ 없음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

(관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사업 타당성 평가서

□ 기업명 :

주요내용	세부항목	점수표					점수
대상기업 적격평가 (50)	1. 사업실적	2	4	6	8	10	
	2. 상시고용인원	2	4	6	8	10	
	3. 기업신용등급	4	8	12	16	20	
	4. 이자보상배율	2	4	6	8	10	
투자사업 계획평가 (50)	5. 신규투자금액	별표7 기준 * 20점 만점					
	6. 투자완료시점	1	2	3	4	5	
	7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	1명당 0.5점 * 25점 만점					
가점요소 (4)	8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 여부	충족시 2점					
	9. 지역산업육성 특례 (제15조제2항 관련 경제협력권산업, 주력산업, 지역집중유치업종)	충족시 2점					
총 계		60점미만시 탈락					

20 . . . 평가자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 성명 인

20 . . . 평가자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 성명 인

[별지 제3호 서식]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정산 신청서

기업명		대표자	
투자유형	☐ 수도권기업 지방이전 ☐ 국내복귀기업 ☐ 신설 ☐ 증설 기업 ☐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보조금 신청일		착공신고일	
		투자완료일	
보조금 수령일자		보조금 유형	☐ 입지 ☐ 설비투자
기존사업장	☐ 폐쇄(청산) ☐ 매각(양도) ☐ 유지 ☐ 계획에 따른 축소		
보조금 결정금액	천원	입지보조금	천원
		설비투자보조금	천원
보조금 수령금액	천원	입지보조금	천원
		설비투자보조금	천원

구분	보조금 지원 결정시	투자 완료시
토지매입금액	천원	천원
설비투자금액	천원	천원
투자사업장 고용인원	명	명
신규 고용인원	명	명

사업이행여부 자체평가	☐ 적정 ☐ 일부 부적정 ☐ 부적정	
	사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정산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직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정산 결과서

[앞면]

기업명		대표자	
투자유형	☐ 수도권기업 지방이전 ☐ 국내복귀기업 ☐ 신설 ☐ 증설 기업 ☐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보조금 신청일		착공신고일	
		투자완료일	
보조금 지급일자		보조금 유형	☐ 입지 ☐ 설비투자
기존사업장	☐ 폐쇄(청산) ☐ 매각(양도) ☐ 유지 ☐ 계획에 따른 축소		

구분	보조금 지원 결정시	투자 완료시
토지매입금액	천원	천원
설비투자금액	천원	천원
투자사업장 고용인원	명	명
신규고용인센티브	명, %	명, %
타당성평가 점수	점	점

사업이행여부 평가	☐ 완료 ☐ 일부 완료 ☐ 일부 환수 ☐ 전액 환수	
	사유	

[뒷면]

보조금 교부 결정금액 (A)	천원	입지 보조금	국비	천원
			지방비	천원
		설비투자 보조금	국비	천원
			지방비	천원
1차 지급금액 (B)	천원	입지 보조금	국비	천원
			지방비	천원
		설비투자 보조금	국비	천원
			지방비	천원
미지급금액 (C=A-B)	천원	입지 보조금	국비	천원
			지방비	천원
		설비투자 보조금	국비	천원
			지방비	천원
정산금액 (D)	천원	입지 보조금	국비	천원
			지방비	천원
		설비투자 보조금	국비	천원
			지방비	천원
산정 기준	입지			
	설비투자			
2차 지급금액 (E=D-B)	천원	입지 보조금	국비	천원
			지방비	천원
		설비투자 보조금	국비	천원
			지방비	천원
집행잔액 (A-(B+E))	천원	입지 보조금	국비	천원
			지방비	천원
		설비투자 보조금	국비	천원
			지방비	천원
집행잔액 운용계획	☐ 국고 반납 ☐ 상계처리 ☐ 기타 ()			

**국 내 복 귀
기 업 지 원
증 합 가 이 드**

KOTRA자료 16-038

발행인 김재홍
발행처 KOTRA
서울시 서초구 현릉로 13 (우.06792)
편 집 KOTRA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
집 필 김상철, 정선미
감 수 김신아 국내복귀기업지원 PM
발행일 2016년 9월
인쇄처 화신문화(주) (02)2277-0624

Copyright © 2016 by KOTRA.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저작권은 KOTRA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하여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본 책을 복사·출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KOTRA 해외투자
지원단(02-3460-7364)과 사전에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ISBN : 979-11-87617-09-9 [93320]